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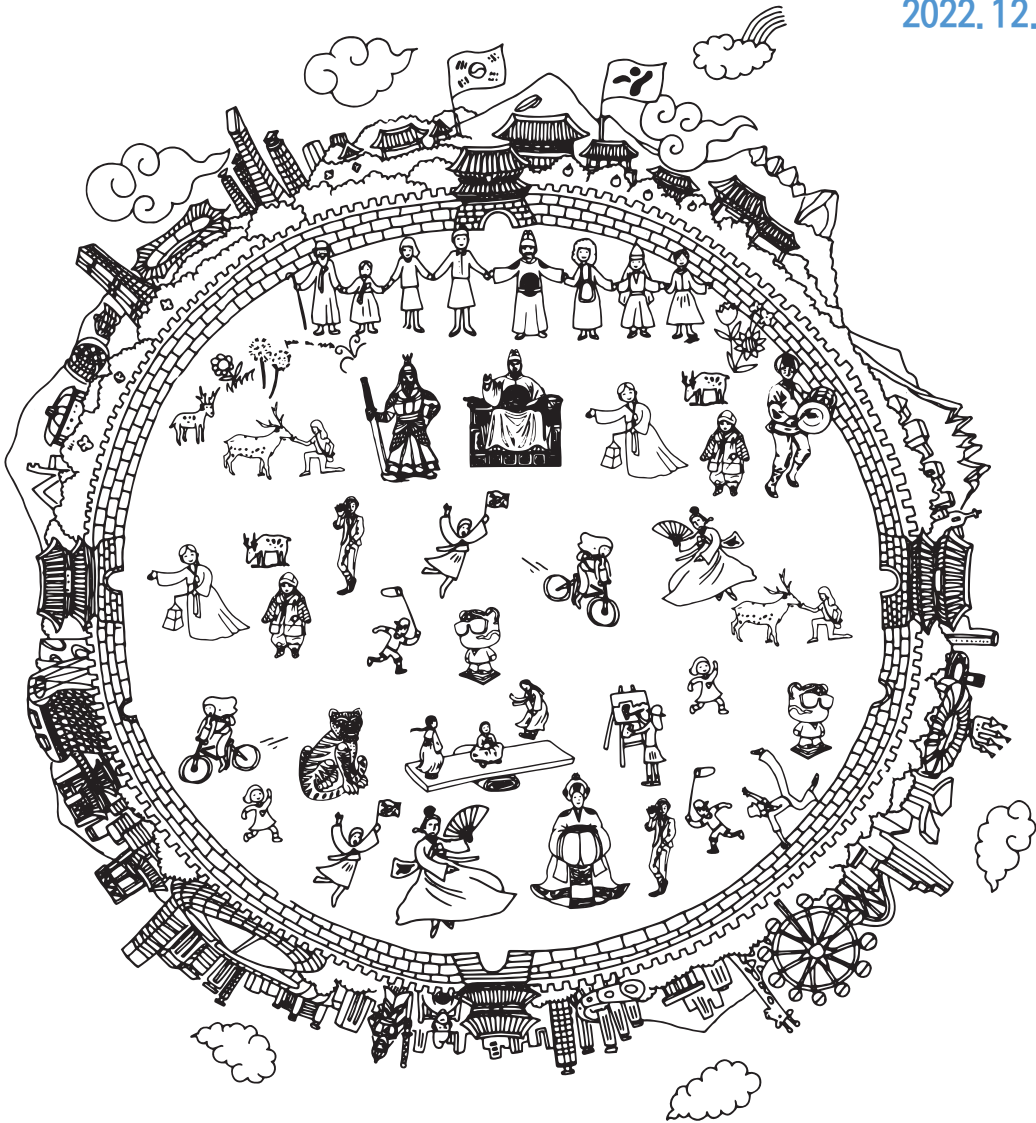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41호
2022. 12. 30.(금)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51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8519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852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8521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852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852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8524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8525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8526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852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제8528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8529호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18
제8530호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
제8531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2
제853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8533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853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8535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85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46
제853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49
제8538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53
제8539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8540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59
제854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8542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8543호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544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8545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제854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547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제8548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549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6
제8550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제8551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55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553호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85
제8554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85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0
제8556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8557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제8558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3
제8559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8560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8561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9
제8562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8563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8564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8565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제8566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8567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856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8569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13
제857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571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8572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	119
제857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	120
제8574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1
제8575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22
제857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23
제857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8578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126
제8579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858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8581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8583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85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8585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제8586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858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8588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47
제8589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0

[규 칙]

제4524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4
--------	---	-----

◆ 고 시

제2022 - 54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62
--------------	-----------------------------------	-----

◆ 공 고

제2022 - 354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178
---------------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8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정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제3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9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료 보조사업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립지원금 지원
4. 단계적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사업
5.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자녀 양육 및 가사지원사업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위원 성별 기준, 위원장 직무,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자립·자활 지원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7조제3항)
- 나. 위원 연임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위촉 해제사유를 명확히 명시함(제8조 및 제9조)
-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서비스 사항을 규정함(제14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제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1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남부기술교육원”을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18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6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 70가 81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기술교육원 간 유연한 조직 및 학과 운영을 위해 중부기술교육원과 남부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기술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함.

2. 주요내용

조례 별표 명칭란 중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중부캠퍼스”로,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중부·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로 변경(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을 따른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노인, 장애인 등 특정 계층과 저소득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제1조 및 제8조)

나.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예외 조항 신설(제3조의2)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 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기금이므로 존속기한 미적용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3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함(제2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4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제16조).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제4조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5호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제5조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인원”을 “30인 이상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하여 시민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시상 시기를 변경함 (제4조)

나.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함 (제5조)

다. 수상자 결정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함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6호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제3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7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8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⑦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제보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⑧ 공익제보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제11조의2제1항제4호 전단 중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를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을 통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21. 10. 21. 시행)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2. 7. 5. 시행)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수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 신설(제8조)

- 이첩·송부사건의 조사·수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5항 추가)

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규정 신설(제10조)

-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공익제보자 책임감면 조항 추가 신설(7항 추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신설(8항 추가)

다. 공익제보자 지원 확대(제10조)

- 구조금 지급사유를 ‘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한 소송비용 ’ 으로 확대(1항3호)

라. 보상금 지급사유 추가 신설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제11조)

- 보상금 지급 사유에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추가 (1항3호라목)
-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5항)

마. 포상금 지급사유 확대(제11조의2)

- 포상금 지급사유를 ‘ 과태료·과징금 부과 ’ 외에도 ‘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 ’ 까지 확대(1항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29호**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정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시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제4조(해촉) 시장은 시정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운영) 시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고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보안 유지 등)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7조(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시정고문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제2조)

-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에 관한 사항
-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나. 위촉 및 임기(제3조)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시장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

다. 해촉(제4조)

- 사임하거나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으로 부득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라. 운영(제5조)

- 시장은 고문에게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음

마.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제6조)

바. 수당과 여비 지급(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0호**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통합한다”를 각각 “총괄한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거짓증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를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출석을”을 “출석으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를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구거(도랑)부지”를 “도랑부지”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제5호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자산관리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하천관리과장”을 “치수안전과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제5항 중 “자산관리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나목 중 “그 밖에 허위서류의”를 “그 밖의 거짓서류”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보공개정책과”를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허위, 변조”를 “변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를 “시민이 하도급 부조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합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난지도 매립지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바목 중 “절사하여”를 “버리고”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허위진술 또는 허위증명서류”를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를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및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 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항 중 “허위라는”을 “거짓이라는”으로 한다.
- 제45조(「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46조(「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47조(「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 제48조(「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 제49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50조(「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중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 제51조(「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52조(「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 제53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1항제8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 제54조(「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55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5호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 제56조(「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 제57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25조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8조제6항 중 “강사로 지급기준”을 “강의로 지급기준”으로 한다.
- 제58조(「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4호 중 “용이한”을 “적합한”으로 한다.
- 제59조(「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60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하고, 제13조 중 “허위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61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62조(「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 제63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제2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7호 본문 중 “개폐기능”을 “열고 닫는 기능”으로 한다.
- 제64조(「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허위”를 각각 “거짓”으로 한다.
- 제65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 제66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3항제3호 중 “허위이거나”를 “거짓이거나”로 한다.
- 제67조(「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 제9조 전단 중 “허위나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 제68조(「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살예

- 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69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항 및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 제70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13조제1항 중 “허위기재하여”를 “거짓기재하여”로 한다.
- 제71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 제72조(「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2제3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 제73조(「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를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로 한다.
- 제74조(「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75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각각 “총괄한다”로 한다.
- 제76조(「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8조제3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 제77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항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 제78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을 각각 “보조표지를 잘 보이게”로 한다.
- 제25조제4항제1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잘 보이는”으로 한다.
- 제25조의2제3항제3호 중 “CCTV감시가 용이하고”를 “CCTV로 감시하기 쉽고”로 한다.
- 제79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쌍방은”을 “모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허위의 신청”을 “거짓 신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를 “하자 책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단서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허위공적”을 “거짓공적”으로 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합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조의4제5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통합하고”를 “총괄하고”로 한다.

제26조,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54조, 제56조 제3항, 제58조, 제65조, 제69조, 제72조, 제75조, 제78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제90조, 제93조, 제96조, 제99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 제114조, 제117조 및 제120조 중 “통합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4조제6호 및 제127조제7호 중 “개폐”를 각각 “개정·폐지”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홍보가 용이하다고”를 “홍보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허위나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 중 “정원의 개폐”를 “정원의 개정·폐지”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관를”을 “기관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을 “업무의”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공공개발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남북협력담당관”을 “남북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가목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대외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제교류담당관”을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를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04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수임기관란의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한다.

제105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106조(「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7조(「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제108조(「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09조(「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생활안정금”을 “생활지원금”으로 한다.

제110조(「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제111조(「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시민건강국장”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112조(「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각각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3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족담당관”을 “아동담당관”으로 한다.

제114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권익보호담당관”을 “업무담당 담당관”으로 한다.

제115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디지털정책관”으로 한다.

제116조(「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본문 중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여가센터”로,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각각 한다.

제117조(「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4조의2를”을 “제4조의3을”로 한다.

제118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신성장산업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19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을 각각 “소상공인담당관”으로 한다.

제120조(「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121조(「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

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 중 “환경에너지기획관”을 “환경기획관”으로 한다.

제122조(「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부외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3조(「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우리시 조례 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함.

나.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1호**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시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3. 그 밖에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2. 서울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4. 서울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및 공예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물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차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일까지로 한다.
- ⑥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소관부서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회 위원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소관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6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종류, 공급비용 및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등을 명시(제2조부터 제5조)

나. 기금의 조성 및 사용목적, 기부금사무의 대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명시(제6조부터 제8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9조부터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전략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각각 “기본전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이행계획의 수립)”을 “(추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행계획”을 각각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속가능발전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본계획 또는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을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행계획”을 “추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22.1.4. 제정, ' 22.7.5.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단위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과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시의회 보고 및 국가위원회 제출 의무(제4조제1항 개정 및 3~4항 신설, 제5조제3항 신설)

나.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 내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제1조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3호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를 “지원 등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정무역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이내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을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으로, “선출하는 1명이 된다”를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서울특별시 관계부서 실·국장 1인, 공정무역 관련 단체”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하며,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주체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현행화함(제9조).

나.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중 서울시 공무원을 삭제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정무역 관련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공정무역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제10조제4항).

라. 공정무역위원회의 기능 중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심의 기능을 삭제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4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22. 6. 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기존 제5조)

나.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5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 구성 기준 마련

다. 처우개선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2)

- 위원의 임기,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라.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제5조의3)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해임·해촉 사유 규정마. 처우개선위원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5조의4)
-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사유 등을 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5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를 “관리,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으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이란 사용료를 내고 시내버스정류소의 표지판, 승차대, 노선안내도 및 차내 안내방송 등에 해당 정류소의 주된 명칭 또는 부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 ① 시장은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시내버스정류소의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내버스 정류소명을 광고 수단으로 전환하여 주된 명칭과 병기 명칭의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에 유상 판매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창출된 수익은 시내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 등에 사용하여 시내 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 향상

2.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1조).
- 나.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의 의미를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 다. '시내버스정류소 명칭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상법」 제2조제7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로 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2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3호의 사업: 10%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4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다만, 마목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시민·시민단체·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 차. 빈곤층 에너지 지원
 4. 제5조제5호의 사업: 5% 이상의 공기조화기 냉매가스 직접 배출 감축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축설비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5조제6호의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아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 ② 제5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 ③ 제5조제9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 한다.
- ④ 제5조제12호에 따라 이차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자는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 존속기한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제3조의2)
- 나. 기금 명칭을 당초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제명, 제1조, 제3조, 제8조)
- 다. 기금 용도 정비(제5조)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6조)
-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7호**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아래 시설을 말한다.

1. 서울역사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2. 서울시립미술관 및 그 소관 시설
3. 한성백제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4. 서울공예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5. 그 밖에 서울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② “소장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와 미술관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박물관·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맡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박물관·미술관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역사,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기타 기금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가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시 박물관과장이 맡는다.
-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안정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박물관과장
3. 기금출납원: 박물관과 기금담당사무관
-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시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제2조)

-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함
- 소장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와 미술관 자료를 말함

다. 기금의 조성(제4조)

라. 기금의 용도(제5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
-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및 구성(제7조)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제9조~14조)

사. 기금의 존속기한(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8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시민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5.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2.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다른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임차
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활용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학습이력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
2. 이용자가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
3. 멘토링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멘토링 이력·평가 등의 정보
4. 개인별 맞춤형 생애학습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이력 및 내용 정보
5.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 ③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청소년
-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진로·진학·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와 온라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형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며, 이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방법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추진사업 구체화

-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
-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
-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서의 처리 정보 및 정보 처리 기준
-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

다. 교육 지원 사업의 대상자,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

1) 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년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밖청소년
-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위 해당 가구의 만6세(취학연령)이상 만24세(청소년 상한 연령)이하의 아동·청소년

2) 지원 내용

- 온라인 강의 수강권 및 교재
- 학습·진로·진학·취업 관련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 등
-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라. 타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의 학습자원 공동활용 및 협력사업 추진
- 우리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울특별시조례 제8539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원법」 제5조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사·조사·감시 활동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의 감사·조사·감시 활동 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항 제8호의 청원사항 조사 시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위원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조사·처리”를 “조사·처리, 청원의 조사·처리”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여성복지, 도시안전, 산업경제(생활환경), 도시교통(도시계획), 교육문화, 일반행정의 6개”를 “복지정책, 도시안전, 도시계획, 주택정책, 산업경제, 문화관광, 기후환경, 도시교통, 보건의료, 행정자치 등 10개”로, “35명”을 “10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은 참여 분야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중 “위원은”을 “위원회는”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가 구성하여 운영 중인 법률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와 시민참여 활성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제1조 및 제16조)
- 나. 위원의 직무에 「청원법」에 따른 청원사항에 대한 조사 신설(제7조)
- 다. 시민참여옴부즈만 분야 및 구성 인원 100명 이내로 확대(제25조)
- 라. 법률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감사 등 참여 활성화(제2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0호**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 등 시의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 다.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라.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마. 그 밖에 개인, 집단에 대한 비방, 모욕 등에 불과한 것
6.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 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시민이 24시

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의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공자산으로서 시민은 그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시정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불리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견이나 시민제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민참여 활성화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한

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

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시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시민제안 제도의 운영

제11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시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민제안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접수 및 검토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우편·팩스로 접수된 시민제안은 시장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등재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에 공개한다. 다만, 검토결과 공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검토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공개기준, 공개방법, 공개기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①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제안 및 우수제안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중 제안 및 수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14조(우수제안의 실시 및 보완) 시장은 우수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우수제안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제안의 확산) 시장은 우수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시민제안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민참여 관련 시정 여건의 진단·평가
2. 시민참여 정책의 기본구상
3.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시장은 제1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작성·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민참여 기본계획 및 분야별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연구·제정·수립·정비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시민참여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민참여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민참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 업무담당 부서장(4급 상당)으

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④ 위원회 회의는 재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적용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초 수립은 2024년부터 한다.

제5조(시민참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 참여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제5항”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등 유사·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과 조문에서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

나. ‘시민제안’ 및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대한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시민참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1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월정수당의 지급액란 “4,044,620원”을 “4,101,24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22년 ‘서울특별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 내역’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4,044,620원”에서 “4,101,240원”으로 변경함([별표 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2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가.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의원”으로, “직원”을 “직원 및 직무와 관련한 제3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신고 서식을 삭제 및 일부개정(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및 제10조의3, 제14조)
- 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준하여 각 호 규정 정비(제7조)
-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미규정 사항 반영(제9조)
- 라. 2021년 서울특별시 조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중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선권고 일부 반영(제18조)
-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3호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이 각 지출건별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모니터링 하여”를 “점검하여”로, “확인하고”를 “확인하고,”로,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규정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 시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함(제3조).

나.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용어를 수정함(제8조제2항).

라. 의장은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징계요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4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사목을 삭제한다.

하.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50플러스재단은 기존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소관이었으나 2022. 8. 19. 자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0플러스재단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제3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5호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원회 설치 근거가 미비하고, 과도한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정비방침도 있으므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예산절감 및 신속한 절차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에 관한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9조(수당과 여비) 규정을 삭제함.

나. 제20조(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6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 행정국 표 주관부서 중 인사과란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조례 별표 5 □ 행정국 인사과 사무 중 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7호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지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현장지휘관은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자 및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재난관련 분야 자치법규 개정권고에 따라 소방 현장지휘관의 책무와 지휘활동 사항에 사고·재난 현장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현장지휘관의 책무에 사고·재난 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내용을 추가함(제4조제3항 신설).
- 나. 현장지휘관의 지휘활동 사항에 피해자와 피해관계자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함(제5조제1항제7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8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제4조의5).

◆ 서울특별시조례 제8549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7. 자립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 지원 협의체) 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여전히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18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하고,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자립지원대상아동”으로 개념을 정의하여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립준비청년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계획사항을 정하며, 실태조사 규정을 명시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 함.

또한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두어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인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시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들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하여 자립준비청년등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립준비청년, 퇴소청소년 등의 용어를 정비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 기본계획 사항을 정함(제3조, 제4조).
- 다.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제5조, 제6조).
- 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정함(제9조).
- 마. 자립지원 협의체의 협의사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제11조).
- 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사항을 정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0호**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및 조사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조사 내용 등을 피해자나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최우선 가치를 피해자의 보호에 두어 피해자 보호를 제명에 명시하고, 신고·조사절차에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며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신고자 보호사항을 추가하여 조사에 공정성을 기함(제9조).

다. 신고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두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직장내 괴롭힘 예방 정책을 수행함(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1호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란 제3호에 따른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을”을 “수립 등 을”로, “가사노동자”를 “가사노동자 및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조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나. 실태조사의 대상에 “그 밖의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를 추가함(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희망경제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된다”를 “시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 및 판로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교육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인식 제고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임대 및 무상 임대”를 “임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설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로 전환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사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재정비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종료된 사업 등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화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제9조)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제12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유지 무상 임대 규정 삭제

라. 사회적경제 특구(한시사업) 등 종료사업 관련 조항 삭제 및 현행화(제3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3호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이하 “게임산업육성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5.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방안
7.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게임산업 분야 및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권익향상 지원 사업
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
3. 게임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4.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사업
5. 국제대회 등 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6. 그 밖에 게임산업육성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육성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게임산업육성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종합계획의 의회 보고 등을 명시함(제3조·제5조)
- 나. 사업 범위와 행·재정적 지원을 명시함(제6조·제7조)
- 다.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위탁에 대해 명시함(제8조)
- 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을 명시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4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공업기능”을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를 “제37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산업개발진흥계획”을 “산업·유통개발진흥계획”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진흥지구 지정”을 “진흥계획 수립”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운영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비공업기능”을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후단 중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을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일”을 “지정대상지 선정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을 “지정대상지의 선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에 집적도가 높은 산업과 전략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지구 지정 이후에도 진흥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사실상 지구가 미운영 되는 등 제도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 절차 등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규정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정의에 대해 정비함(제2조제4호).
- 나. “권장업종”의 정의를 정비함(제2조제7호).
- 다.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함(제11조제6항).
- 라. 진흥지구의 변경 시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제11조제7항 신설).
- 마. 진흥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신청 절차를 함께 하도록 규정함(제12조제1항).
- 바. 진흥계획 제출 기한에 대해 규정함(제12조제3항).
- 사.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제12조제1항제1호).
- 아. 진흥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대해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제12조제1항제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중 “사람”을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의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급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 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대상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로 함(제3조제1항제5호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6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10만원은 2017년 수당개시 이후 급여액이 5년째 동결되었고, 지원액이 일반 보훈대상자와 동일하여 소득개선 효과가 없음. 이에 생활보조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함(제7조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7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우회도로 ”란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1996년부터 시행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우회도로 혼잡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회도로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우회도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5호).

나.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8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평가”를 “평가, 정산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외부회계감사 소요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버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조의2 단서 조항 신설).

나. 시장은 재정지원 및 평가,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59호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공공기관”을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으로, “민간단체 중”을 “민간단체, 협회 등”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 ----- ----- ----- -----.
1.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1. ----- <u>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u> ----- ----- <u>민간단체, 협회 등</u>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 ③ (생략)	제16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 ----- ----- 매년 수립, 시행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시범운영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의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음.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에 대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 정책 등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는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련협회 전문가 등에 대한 위촉근거를 마련함 (제5조제2항제1호)

나.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 (제1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0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 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택시 차량 내 담배냄새 및 악취 등으로 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자에 대한 승차거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제5조제4항)
- 나. '차내 소란 등 안전운행 방해행위'를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행위에 추가(제5조제6항제4호)
- 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내문 등을 차내 부착하고,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신설(제5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1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인프라 및 정비업자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정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동차 정비산업”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규정함(제6조~제7조)
- 마.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 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2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7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3호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한”을 “위해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 공모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2. 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야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구청,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 내용을 세부화하고, 시범사업 실시와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함(제5조제1항제1호)
- 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음(제6조1항제1호,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4호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조성 등)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2. 속도저감시설
3.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4.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5. 장애인 안전시설
6. 조경시설
7. 편의시설
8. 조명시설
9.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2.1.11.공포, 2022.7.12.시행)되었음.
-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 점검·유지보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바, 이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4호 신설).
- 나.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5호**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30만원 이내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 를 도입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1항).

나.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제2항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6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에서 전광판, 조명 등 대중 표출시설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등 상황 전파와 시민행동 요령 안내, 미세먼지 저감 홍보 등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활동 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민간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7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조기폐차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2.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

제19조제1항제2호 중 “5등급”을 “4등급과 5등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8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각종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그 피해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69호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세계유산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제9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3.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및 시민의 인식개선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발굴·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 구간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멸실·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재검토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문화재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현재 서울특별시에는 종묘(1995), 창덕궁(1997), 조선왕릉(2009)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한양도성에 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20.2)’과 같은 법 시행령(2021.2)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각종 개발로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인류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계유산’, ‘세계유산지구’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제3조)
- 나. 세계유산 등재 노력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제4조)
- 다. 세계유산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함(제7조)
- 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정함(제9조)
- 마. 세계유산 등의 멸실·훼손구간 복원 노력에 관한 사항(제10조)
- 바.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의사항(제11조)
- 사.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제12조)
- 아. 중앙행정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제13조)
- 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대한 포상규정(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1인”을 “10명 이상 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1인 이내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개정함(제11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1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서점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와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가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2항 신설).

나. 시장이 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2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2호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 19.9.26.)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관리 및 지원하여 왔음
- ' 22.1.1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갖게 되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3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그러나 본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마중물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나,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4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동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전 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었음.
-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분석이 없어 마을관리소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한 점, 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의 경우 자치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자치구 사무기능에 대해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이를 운영함으로써 시주도의 확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 골목길재생사업 등)과도 추진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되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5호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남북·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차원의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정·시행된 것임.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6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영 제17조제2항제3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형공사, 특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21.9.14.)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대상이 현행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기술제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입찰에서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된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함(제3조제1항제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7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 의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시민”을 “시장”으로, “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개방 여부에 따라 대피 시간 또는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 등은 상시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또한, 재난분야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에 부여되었던 대피소 운영 협력 의무를 삭제함(제43조제2항)
- 나.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출입문 개방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4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8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
 - 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
 - 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지휘본부 설치·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 10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 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집밀도 산정 방식

- 1) 군집밀도 = 군집인수/군집의 점유면적으로 정의된다.
- 2) 군집밀도의 객관적 판단기준

군집밀도	1㎡(입석) 기준의 상태
5인	옆사람의 옷깃이 닿는 상태
6인	다리와 발을 오므리면 신체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
7인	어깨나 팔꿈치에 압력을 느낌
8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간신히 끼어드는 정도
9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끼어들 수 없는 상황
10인	주변의 체압(압력)에 의해 손을 올리고 내릴 수 없는 상태
11인이상	주변의 압력이 강해져서 몸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을 느낌(비명을 지르게 됨)

2. 공간 수용능력

- 1) 실내 공간에서의 1인당 최소 점용면적

의자석	좌석	입석
0.45㎡/1인	0.3㎡/1인	0.2㎡/1인

- 2) 실외 수용능력

시설(광장) 면적(㎡) X 군집밀도 6인 기준 = 실외 수용 가능 인원

혼잡경비 상황에서는 건물이나 가로수 등 식물 배치를 제외한 ‘순면적’으로 실외수용능력을 계산해야 함

3. 군집 유동시간

- 1) 일정시간내 통과 가능 인원, 통과 가능한 출입구의 폭 등을 고려하여 산출
- 2) 군집 유동시간 산출방식
 - A= 군집의 총인원(명) $A=B*C*D$
 - B= 출입구의 폭(m) $B=A/(C*D)$
 - C= 매초, 폭 1미터 가량의 출구를 통과할 수 있는 인원 $C=A/(B*D)$
 - D= 군집 A가 출구 B를 통과할 수 있는 시간(초) $D=A/(B*C)$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정의(제2조제1호)

다. 시민의 의무 신설(제4조제2항)

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다중운집행사 신설(제5조제1항제3호)

마.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구체화 및 통합 조정(제5조제2항제6호 및 제9호)

바. 안전관리계획 사전 심의 주체(제5조제3항)

사. 안전관리계획 관련 시장과 자치구청장간의 협조체계 규정(제5조제4항 및 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79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그 밖의 도로부속물”을 “그 밖의 도로부속물(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및 그 밖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을 삭제한다.

별표1의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란의 ‘지침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 업무총괄’의 관리자를 “도시교통실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도로부속물은 안전총괄실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은 도시교통실장이 별도 총괄 관리 중으로 동일한 공간에 설치된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의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도 안전총괄실장이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총괄관리자를 도시교통실장에서 안전총괄실장으로 변경함(제4조제1항, 별표1).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①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방법을 정하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및 방법을 정함(제52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1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다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를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
2.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는 사전에 방지해야 갈등의 소지가 적고,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들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으로써 시장이 이들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제3조 제5항)
- 나. 시장이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책무 이행 정도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을 말하며,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해제 요청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제1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70퍼센트 이내

제7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을 말한다.

제7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2조제4호에 따른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는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3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이 조례 개정 전,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조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을 이 조례 시행일로 본다.

■ [별지 제7호서식] 신설

[별지 제7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사업구분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 역 명				
	구역위치	(면적 m ²)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내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승인(설립인가)일				
해 제 동 의 사 항	①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명	동의를	% (동의자 수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수)
	② 토지등 소유자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 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 명)	명	동의를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자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제 동의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신설

[별지 제8호서식]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정비구역등의 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면적 m ²)	
1.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
2. 동의자 구분 :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 여부(☐ 동의자, ☐ 부동의자)			
3. 동의자 소유권 현황			
관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m ²)
		(계필지)	
		()	
		()	
	건축물	소재지	동수
		()	
		()	
	지상권 (건축물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 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동 호 번지 상가 동 아파트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m ²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m ²
4. 동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날인			
구청장 귀하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5호, 제6호에 따른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의 해제동의 비율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2분의 1 이상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은 3분의 2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조 비율을 70%로 규정하고자 함.
- 공공지원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는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후로 정하여,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및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방지하는 성과는 있으나, 조합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비사업 초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장점은 유지하고, 문제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공급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신설함(제72조제4호 신설).
- 나.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3항 신설).
- 다.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2분의 1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3분의 2를 말함(제14조제5항 신설)
- 라. 법 제2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5조제3항제3호 신설).
- 마.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서식을 별지에 추가함(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바.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부칙 제1조 단서)
- 사.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38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이 조례 개정 전,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에서 조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을 이 조례 시행일로 봄(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3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

제1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는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라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면 집회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움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관리단집회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예산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홍보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제7조 제1호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임대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전략산업을 육성·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본문 중 “시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를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4호에 한함)”로 한다.

제39조제4항제4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9조제7항 본문 중 “시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한한다)”를 “시도시재생위원회(이 항 제2호에 한함)”로 한다.

제39조제7항제2호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폐율·층수(높이) 규제를 완화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신설함(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층수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2항 및 제4항)
- 자연경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층수를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제7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 「 공인중개사법」 ”을 “ 「공인중개사법」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 시장 ”을 “ 서울특별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의 중개보수요율 변경시 시장으로 하여금 중개보수표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제5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6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5조를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로 한다.

조례 제6548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로 7017’ 운영방식이 市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위탁 근거 조항 삭제(제3조)

나. ‘서울로 7017 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제16조 ~ 제20조,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여 재난지역에 방치된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또한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에 재난 발생 시 대피 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제23조제2항제9호 신설)
- 나. 상위법 근거를 수정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함(제2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8호**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에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최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힌남노가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힌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유무는 피해의 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임.
- 침수 방지시설은 그러한 대응기조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써 그 동 그 설치와 지원은 기초지자체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뤄진 바 있으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명확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시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고하도록 함(제5조제3항).
-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6조).
- 라. 시가 자치구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마. 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바. 시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구 및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89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진을”을 “침해의 구제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 조사하여 회부한 사안의 인권침해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의 조사 여부에 대한 사항
3. 인권위원회에 인권 관련 서울시 정책의 개선 건의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구성)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구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있었던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감사·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구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④ 구제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

용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의3(운영) ① 구제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구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결정 및 시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구제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4(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시정권고 사항을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사대상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구제위원회 지원) ① 구제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제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앞에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을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직무)”를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침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제위원회는”을 “인권보호관은”으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

외)에 대하여 조사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임 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제위원회는 제1항”을 “인권보호관은 제3항”으로, “각하한다”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임 보호관이”를 “구제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제4호 중 “제1항에”를 “제3항에”로, “구제위원회의 직무범위에”를 “인권보호관의 조사범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조사수행) ①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인권보호관은 사건의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차회 구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보호관의 제척 등)”을 “(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인권보호관”을 “위원 및 인권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보호관”을 각각 “위원 및 인권보호관”으로 한다.

종전의 제22조, 제23조,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에게”를 “감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민인권보호관의 권한”을 “권한”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감사위원회”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을 행사하므로 결과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시민인권보호관과 구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의결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 인권침해 조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장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제18조, 제19조의1부터 제19조의5)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 조사를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신설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시정권고 및 후속 조치, 구제위원회 지원

나. 제5장 시민인권보호관(제20조부터 제21조)

- 설치 및 기능, 조사수행, 구제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제척 등
- 신청 없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권보호관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함.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24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상환조건
조례 제5조제1호, 제3호부터 제4호 및 제14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8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융자	사업금액의 100%이내	연리 3.0% 이내	5년이내거치 10년이내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융자	시설설치비용 80%이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매년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 지침」의 이자율을 적용함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융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을 적용함.		

※ 조례 제5조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고시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을 적용함.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대여·차용 증서

1. 대여금액 :

일금 원정(W)

2. 대여기간 :

3. 이자율 대여금리 : 연 %

대출금리 : 연 %

4. 대여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회 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회 수	상환기일	원금상환액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위 계획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월일

차용인 금융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현황 제출서(월분)

1. 총괄

(단위:천원)

구	과목	대여금관리현황				금월대출현황				금월회수현황				비고
		계	기대출액	잔액	액	대출액	미대출액	사유	액	회수액	미회수액	사유		
시설설치 자금	계 공공시설 충전시설													
기타														

2.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천원)

운 용 자 대상자명	금월내역				누계			
	신청	대출	회수	회수	대출액	회수액	연체액	연체액
	금액	일자	금액	상환 개시일	일자	금액	연체액	연체 사유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용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용자신청내역	사업명			
	용자신청액	천원	사업비 대비 용자신청액의 비율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도시가스사업) 용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체규모	공급시설		배관 정압기	km 개소	자산총액		천원
용자 신청 내역	시설 설치 내역	공급시설	배관	m	시설 설치비용		천원
			정압기	개소	시설 설치	공급시설	천원
		충전시설	배관	km		충전시설	천원
	용자신청액		천원		시설 설치비용 대비 용자신청액의 비율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가스공급충전시설 설치 내역서(별지4-1호 서식) 2. 가스공급충전시설 설치 위치도(1/3,000도면) 3. 공사계획 승인서 사본(대상시설에 한함)							

[별지 제6호서식]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보조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비	기금보조신청액	자체부담액	기타재원	
사업기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용어정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규칙 본문, 별지 서식 상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명칭 변경(제1조, 제2조, 별지 제1~4호, 제6호 서식)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022년 신통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2. 12. 29.)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1	종로구	창신9구역	창신동23 - 605일대	133,846	
2	종로구	창신10구역	창신동629일대	81,371	
3	용산구	서계동 통합재개발구역	서계동33일대	112,599	
4	성동구	사근동293	사근동 293일대	28,465	
5	광진구	자양4동 통합구역	자양4동 57 - 90 일대	139,130	
6	동대문구	용두제3구역	용두동 39 - 361 일대	24,957	
7	동대문구	간데메공원 일대	답십리동 471일대	102,736	
8	종량구	상봉13구역	망우동461일대	45,598	
9	성북구	종암동3 - 10	종암동 3 - 10 일대	25,351	
10	성북구	석관동 62 - 1	석관동62 - 1 일대	62,086	
11	강북구	번동441 - 3일대	번동441 - 3일대	32,877	
12	강북구	미아동791 - 2882일대	미아동791 - 2882일대	140,696	
13	도봉구	방학3구역	방학1동685일대	72,533	
14	은평구	산새마을	신사동237 일대	49,822	

연번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15	은평구	편백마을	신사동 200 일대	61,947	
16	서대문구	남가좌동337 - 8일대	남가좌동337 - 8일대	76,569	
17	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목2동232번지 일대	21,161	
18	구로구	고척동253번지일대	고척동253일대	62,239	
19	구로구	가리봉중심1구역	가리봉동115일대	90,875	
20	금천구	독산 시흥 재개발 구역	시흥동 871 일대	79,341	
21	영등포구	대림1구역	대림동 855 - 1일대	42,505	
22	동작구	사당4동	사당4동288번지 일대	26,178	
23	동작구	상도15구역	상도동279일대	126,219	
24	관악구	신림5구역	신림동412일대	160,393	
25	송파구	마천2구역	마천동183일대	79,069	

2. 권리기준산정일 : 2022. 1. 28.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 - 2133 - 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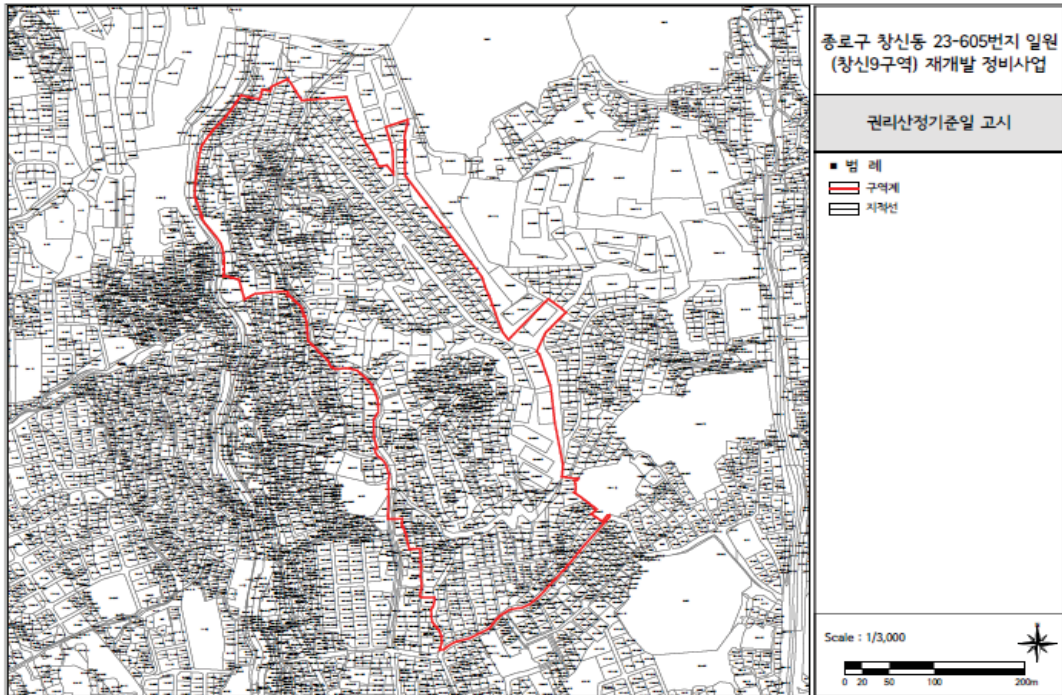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 - 2682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2199 - 7465	
성동구	주거정비과	2286 - 6565	
광진구	주택과	450 - 7697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 - 4666	
중랑구	주택개발과	2094 - 6883	
성북구	주거정비과	2241 - 2843	
강북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901 - 6838	
도봉구	주택과	2091 - 3525	
은평구	주거재생과	351 - 7744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330 - 1941	
양천구	도시계획과	2620 - 3511	
구로구	주택과	860 - 2962	
금천구	주거정비과	2627 - 1807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2670 - 3531	
동작구	도시개발과	820 - 9265	
관악구	주택과	879 - 6304	
송파구	주거사업과	2147 - 2897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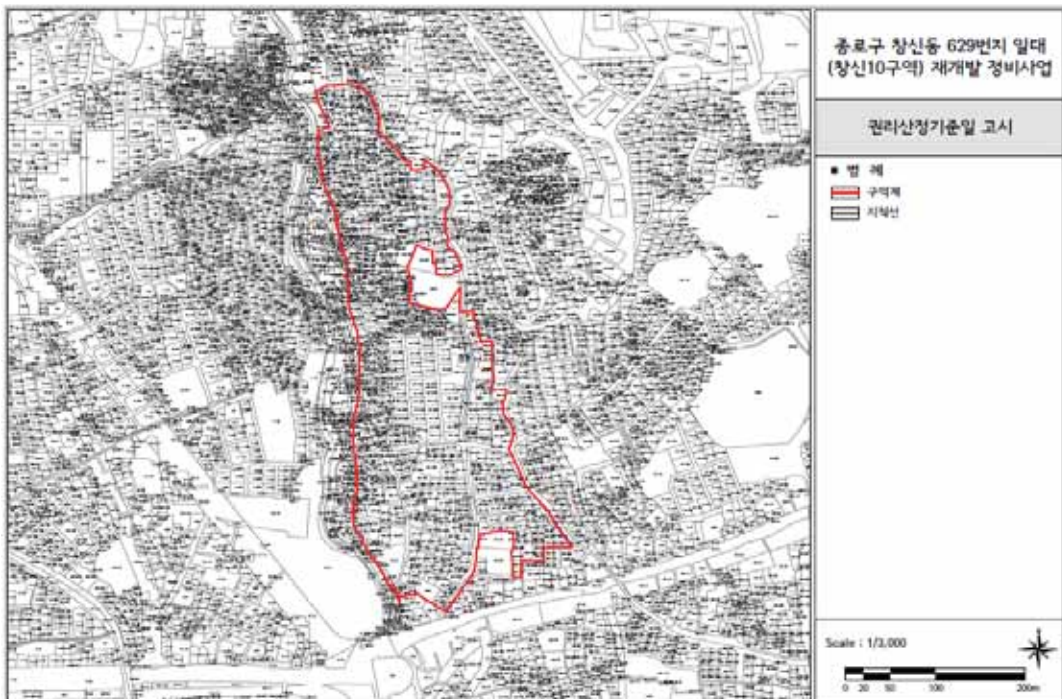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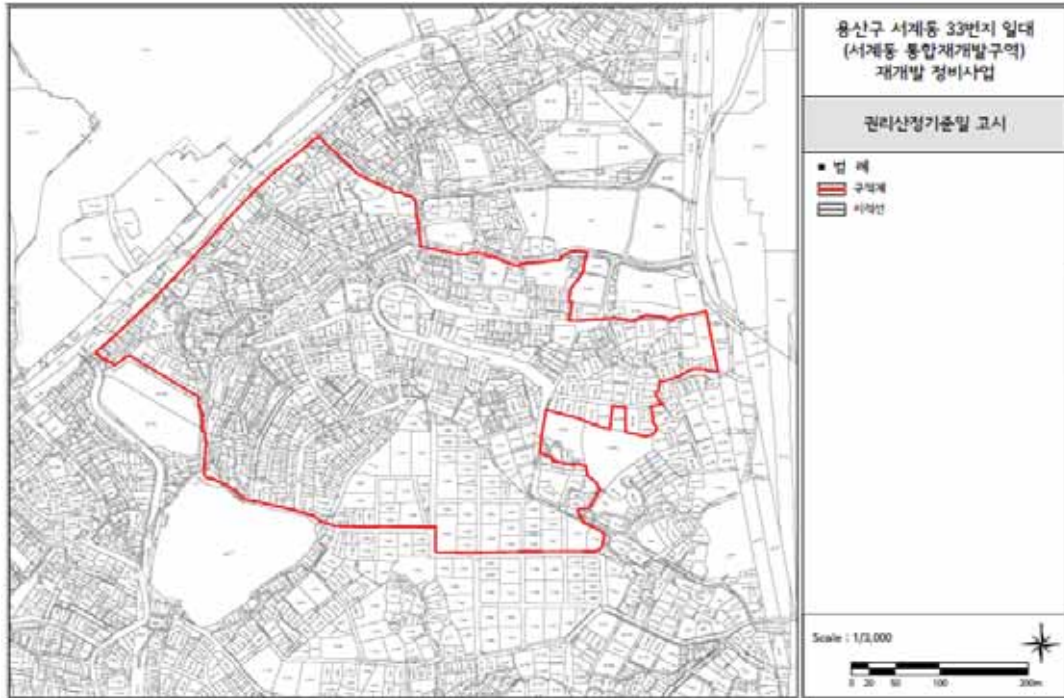
○ 창신9구역(종로구 창신동 23 - 605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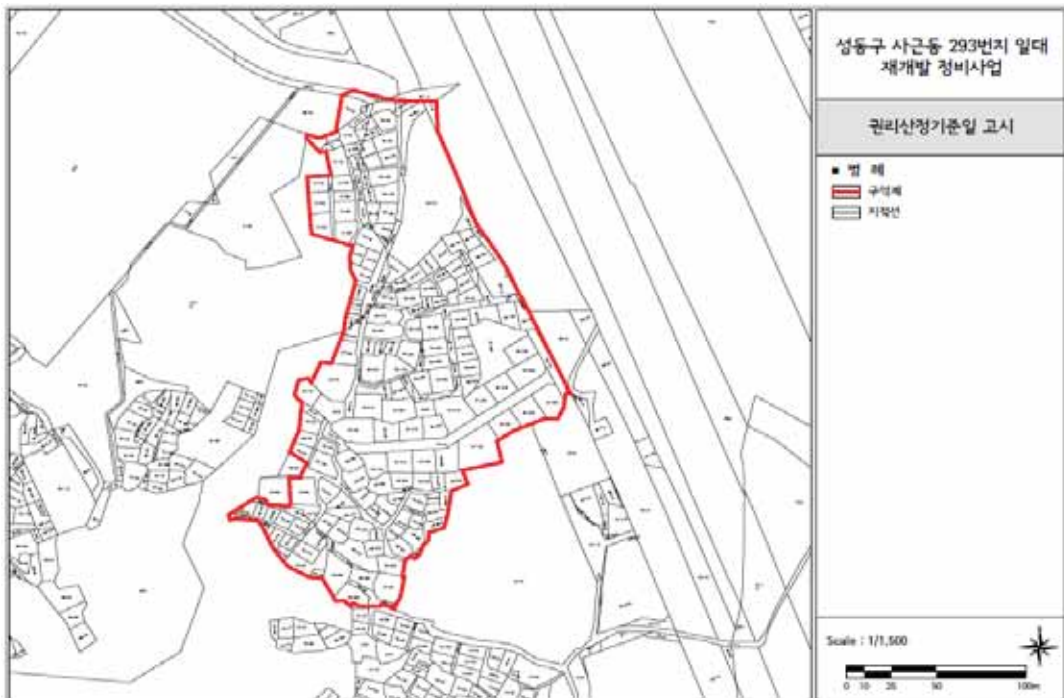
○ 창신10구역(종로구 창신동629일대)



○ 서계동 통합재개발구역(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 사근동293(성동구 사근동 293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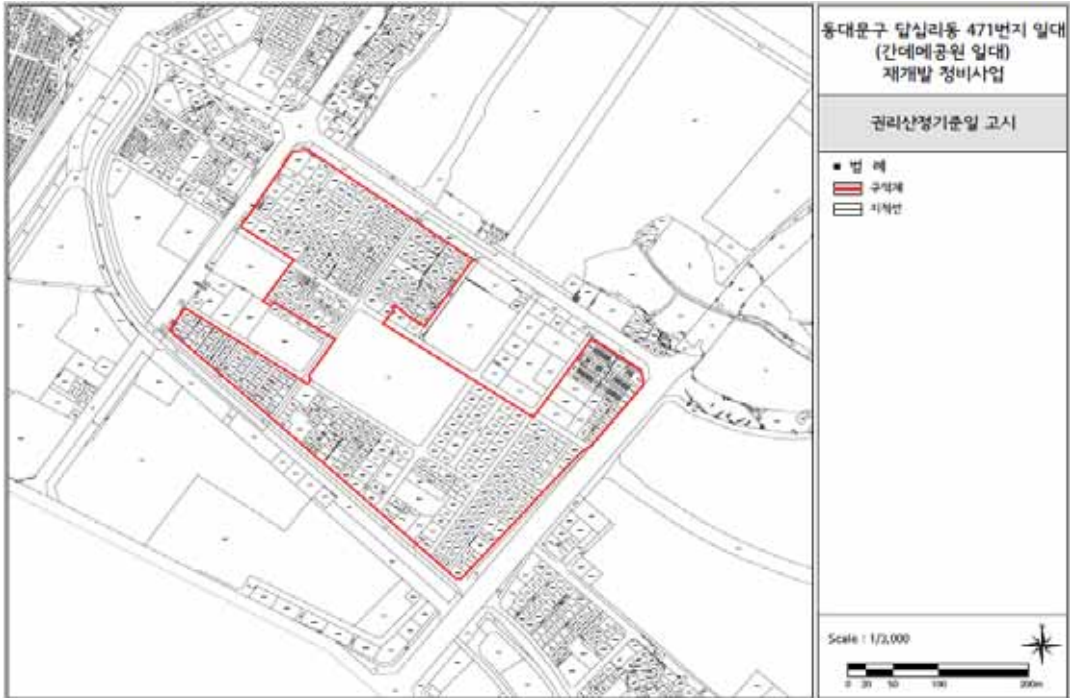
○ 자양4동 통합구역(광진구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 용두제3구역(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 간데메공원 일대(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 상봉13구역(중랑구 망우동 461일대)



○ 종암동3-10(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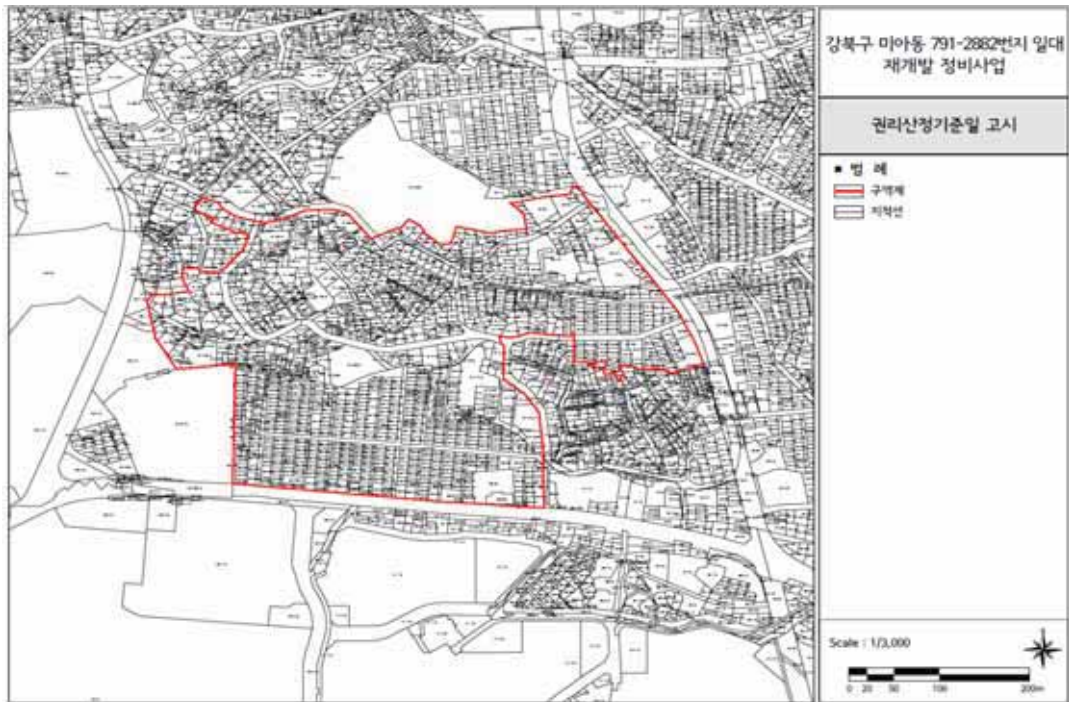
○ 석관동 62-1(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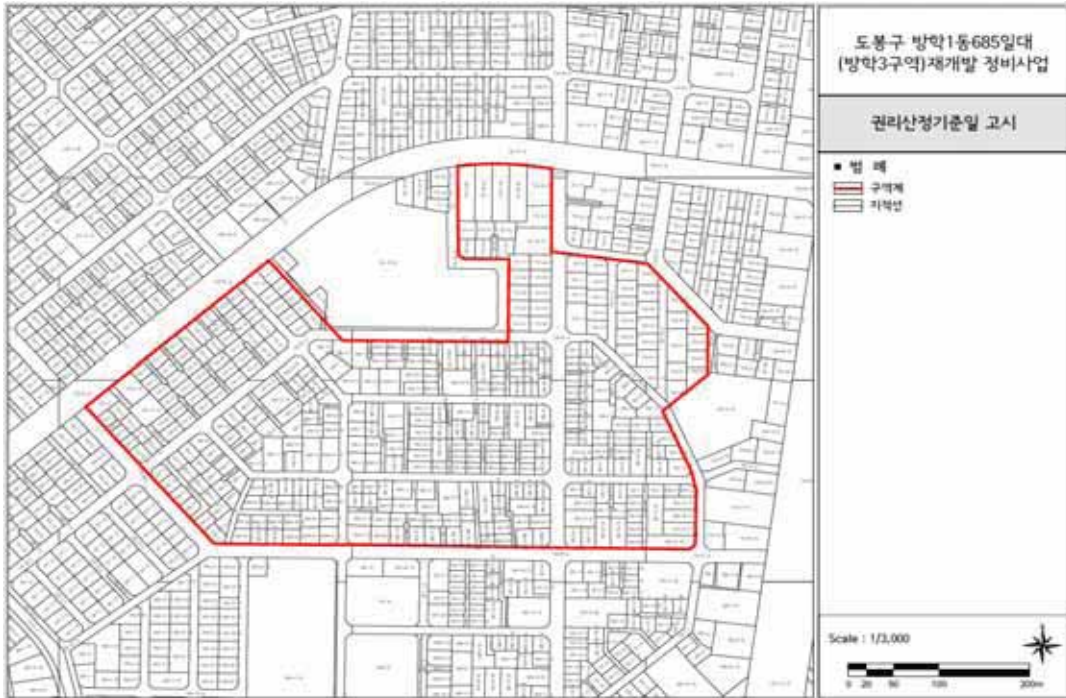
○ 번동441-3(강북구 번동441-3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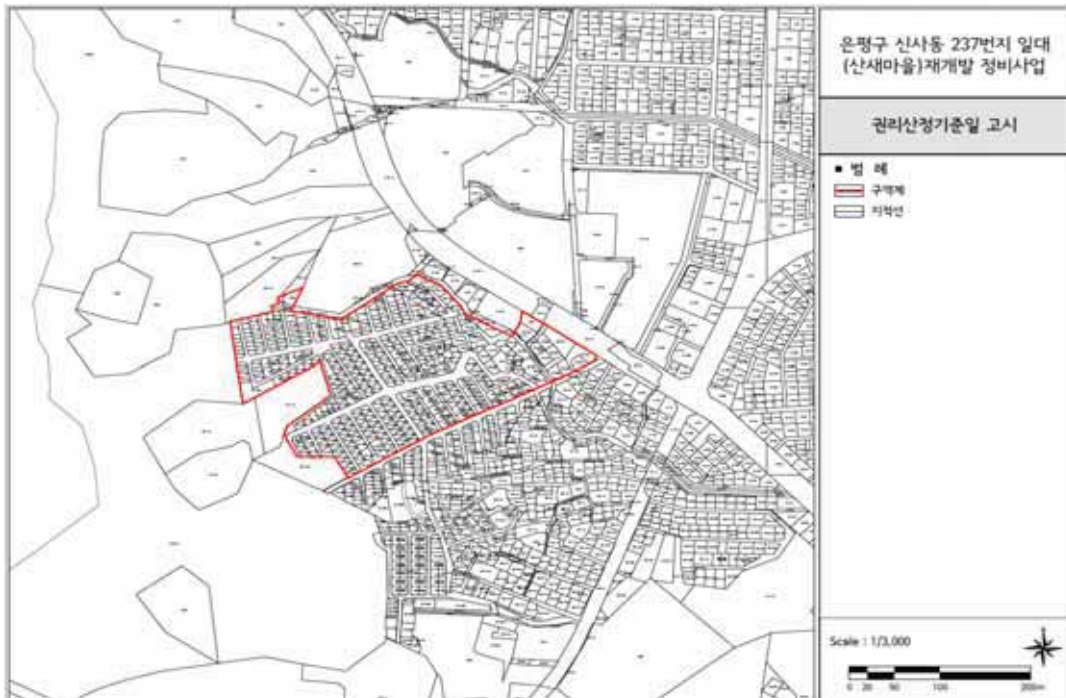
○ 미아동 791-2882일대(강북구 미아동 791-2882일대)



○ 방학3구역(도봉구 방학1동685일대)



○ 산새마을(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 편백마을(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 남가좌동337 - 8일대(서대문구 남가좌동 337 - 8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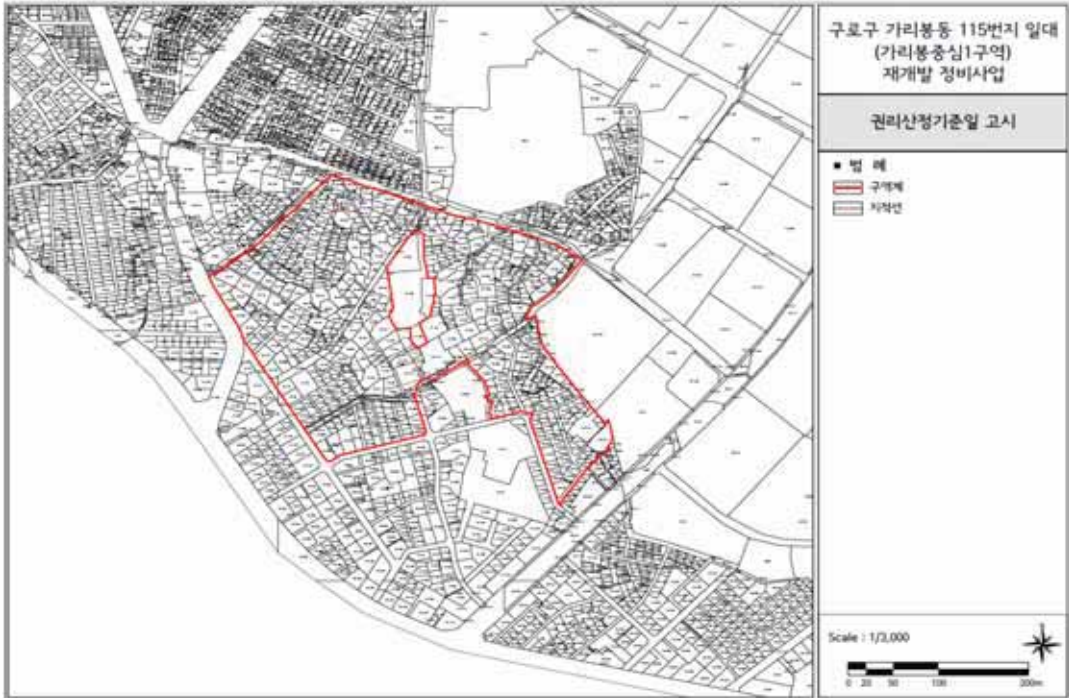
○ 목2동 232번지 일대(양천구 목2동 232번지 일대)



○ 고척동253번지 일대(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 가리봉중심1구역(구로구 가리봉동115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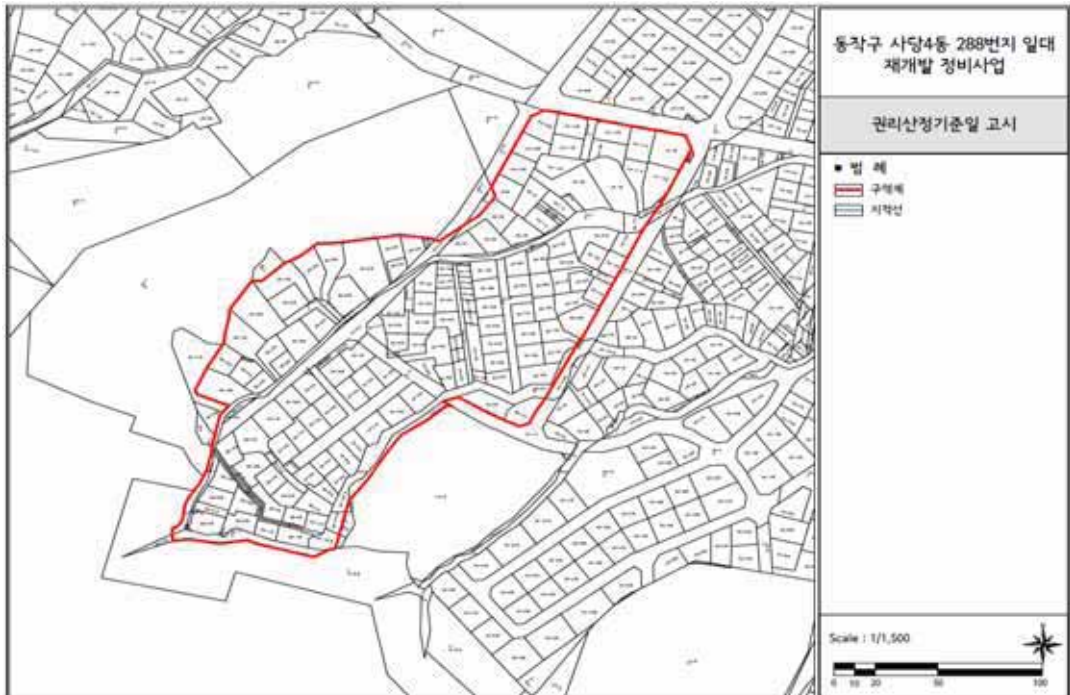
○ 독산시흥재개발 구역(금천구 시흥동871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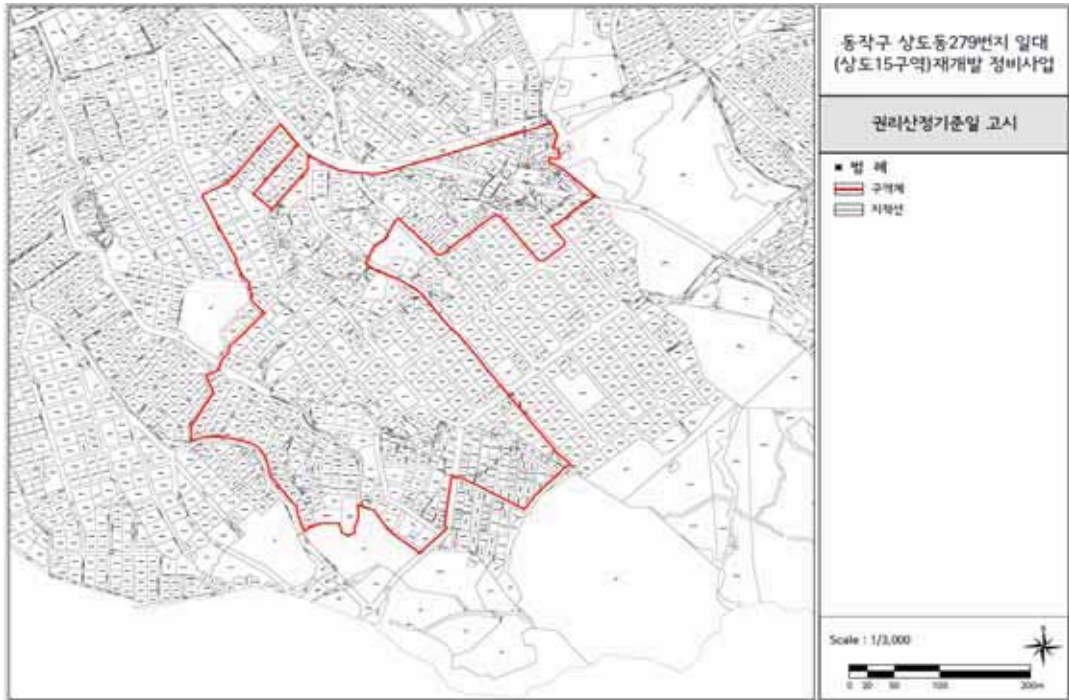
○ 대림1구역(영등포구 대림동 85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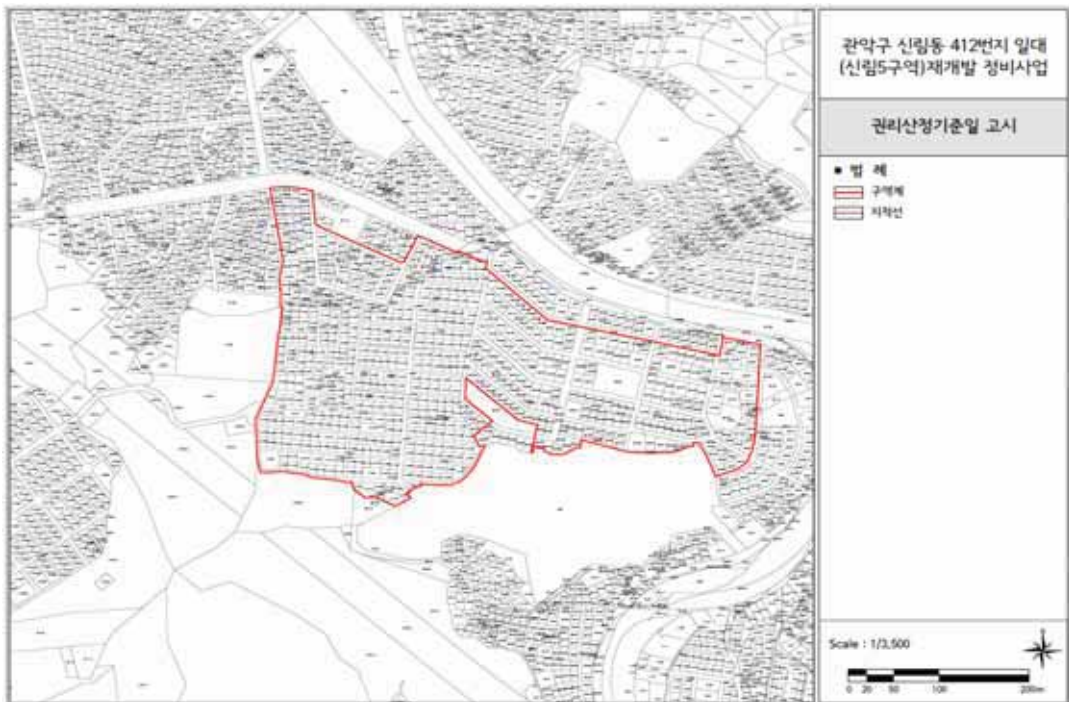
○ 사당4동(동작구 사당동28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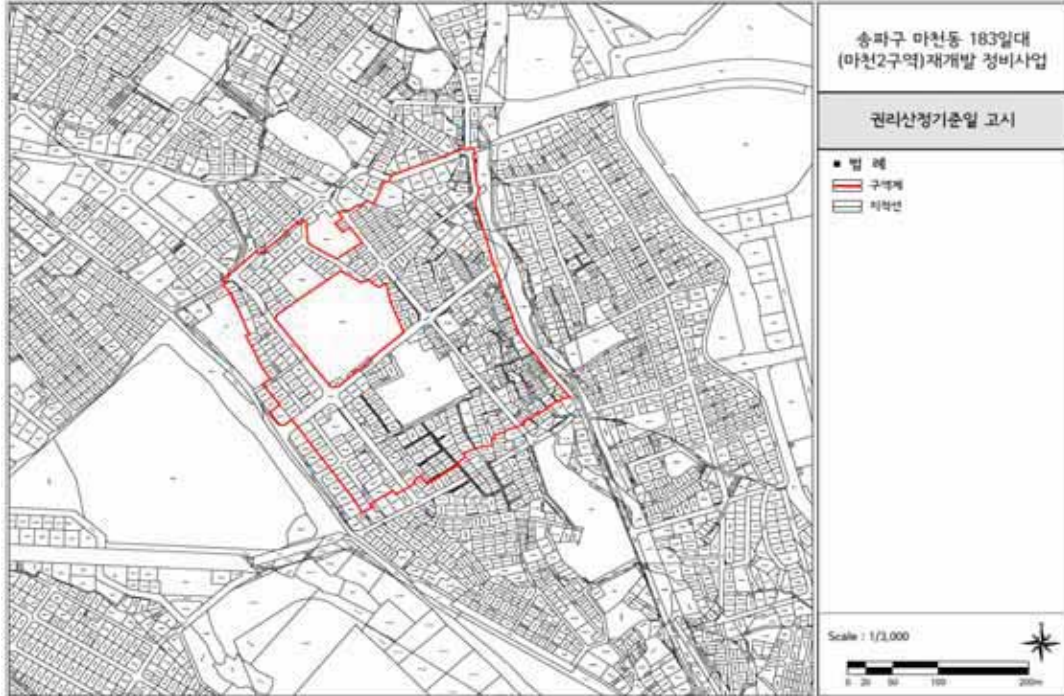
○ 상도15구역(상도동279번지 일대)



○ 신림5구역(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 마천2구역(송파구 마천동183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54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375,22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 - 605번지 일대	133,845.6	주택재개발
		창신동 142 - 17번지 일대	55,999.6	
		창신동 629번지 일대	81,370.9	
		행촌동 210 - 678번지 일대	72,615.8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112,599.1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46,723.8	
		이태원동 206번지 일대	58,724.1	
		원효로3가 200번지 일대	35,214.4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28,465.0	
		사근동 212 - 1번지 일대	21,484.0	
		행당동 297번지 일대	56,087.0	
	광진구	자양동 57 - 90번지 일대	139,130.5	
	동대문구	용두동 39 - 361번지 일대	24,957.2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102,735.8	
		휘경동 295번지 일대	65,900.0	
		전농동 152 - 65번지 일대	65,173.6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	45,597.7	
	성북구	정릉동 314번지 일대	23,172.7	
		종암동 3 - 10번지 일대	25,351.0	
		삼선동1가 280번지 일대	56,373.6	
		석관동 62 - 1번지 일대	62,086.2	

대상지역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 - 3번지 일대	32,877.0	주택재개발
		미아동 791 - 2882번지 일대	140,696.3	
		미아동 130번지 일대	48,281.6	
		수유동 486번지 일대	66,630.5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72,533.1	
		방학동 641번지 일대	75,995.1	
		쌍문동 81번지 일대	51,425.1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49,822.0	
		응암동 675번지 일대	38,708.1	
		신사동 200번지 일대	61,946.9	
		불광동 16 - 111번지 일대	35,784.6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 - 8번지 일대	76,569.3	
		홍제동 267 - 1번지 일대	28,502.4	
	마포구	망원동 416 - 67번지 일대	78,694.9	
	양천구	목동 232번지 일대	21,161.0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65,427.0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90,875.3	
		오류동 168 - 9번지 일대	12,100.0	
		개봉동 49번지 일대	22,700.0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79,341.1	
		독산동 378번지 일대	151,710.2	
	영등포구	대림동 855 - 1번지 일대	42,505.0	
		양평동6가 45번지 일대	16,074.0	
	동작구	사당동 288번지 일대	26,177.6	
		흑석동 204번지 일대	46,031.0	
		사당동 63 - 1번지 일대	37,527.5	
		상도동 279번지 일대	126,218.7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160,392.7	
		신림동 650번지 일대	103,000.8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	79,069.0	
	강남구	개포동 649번지(경남아파트)	55,053.1	주택재건축
		개포동 652번지(우성3차아파트)	32,106.9	
		개포동 653번지(현대1차아파트)	35,682.4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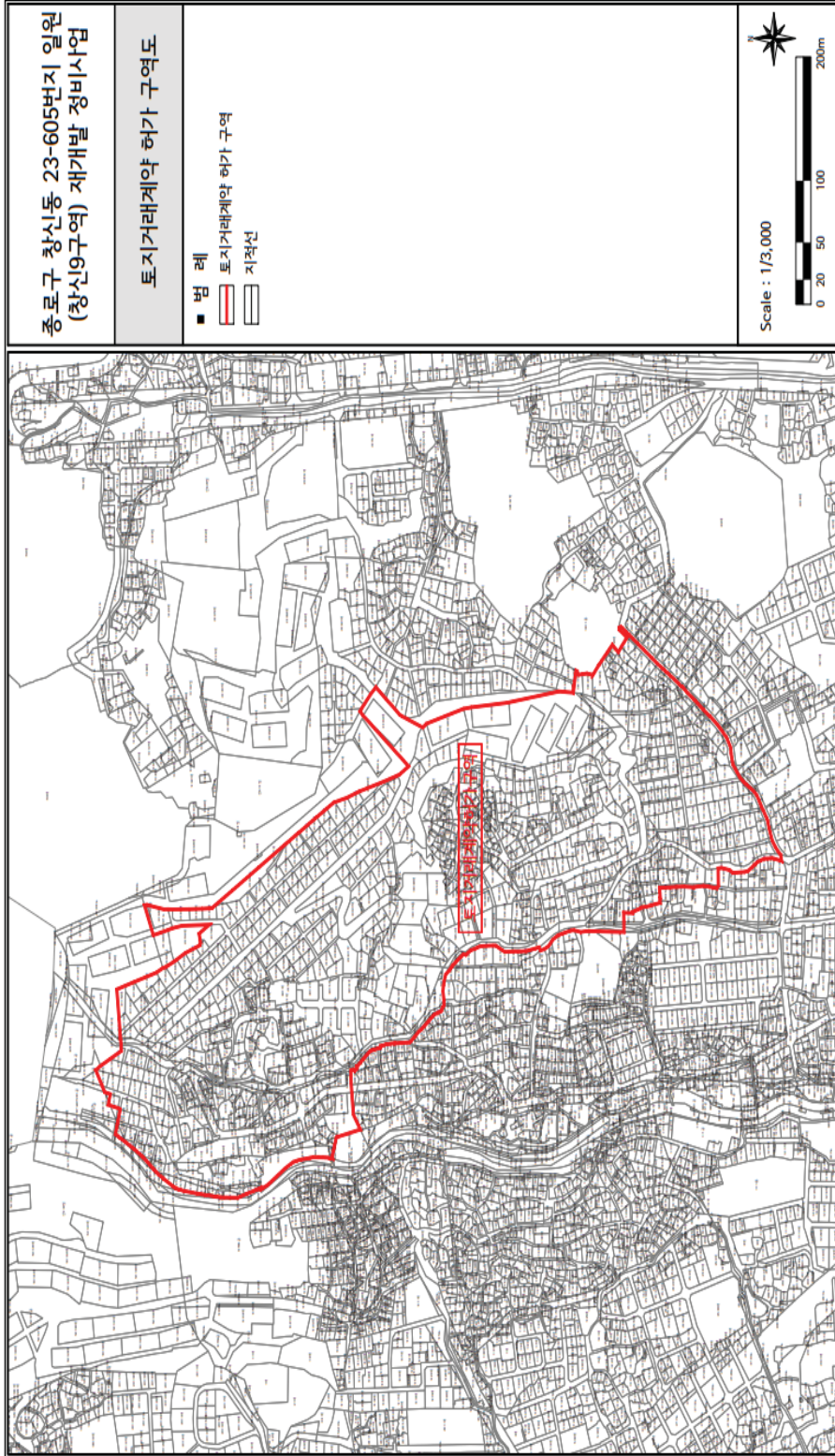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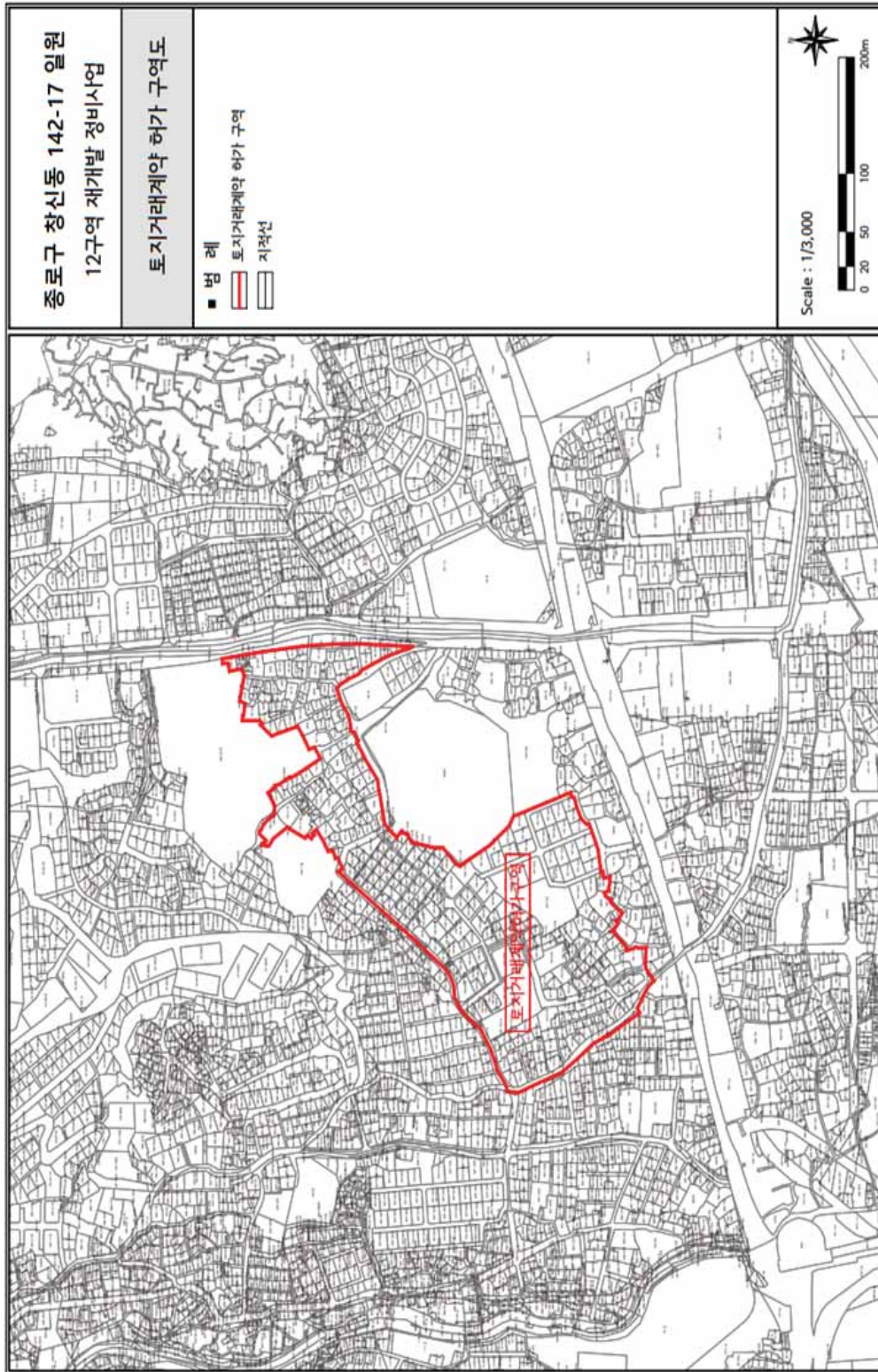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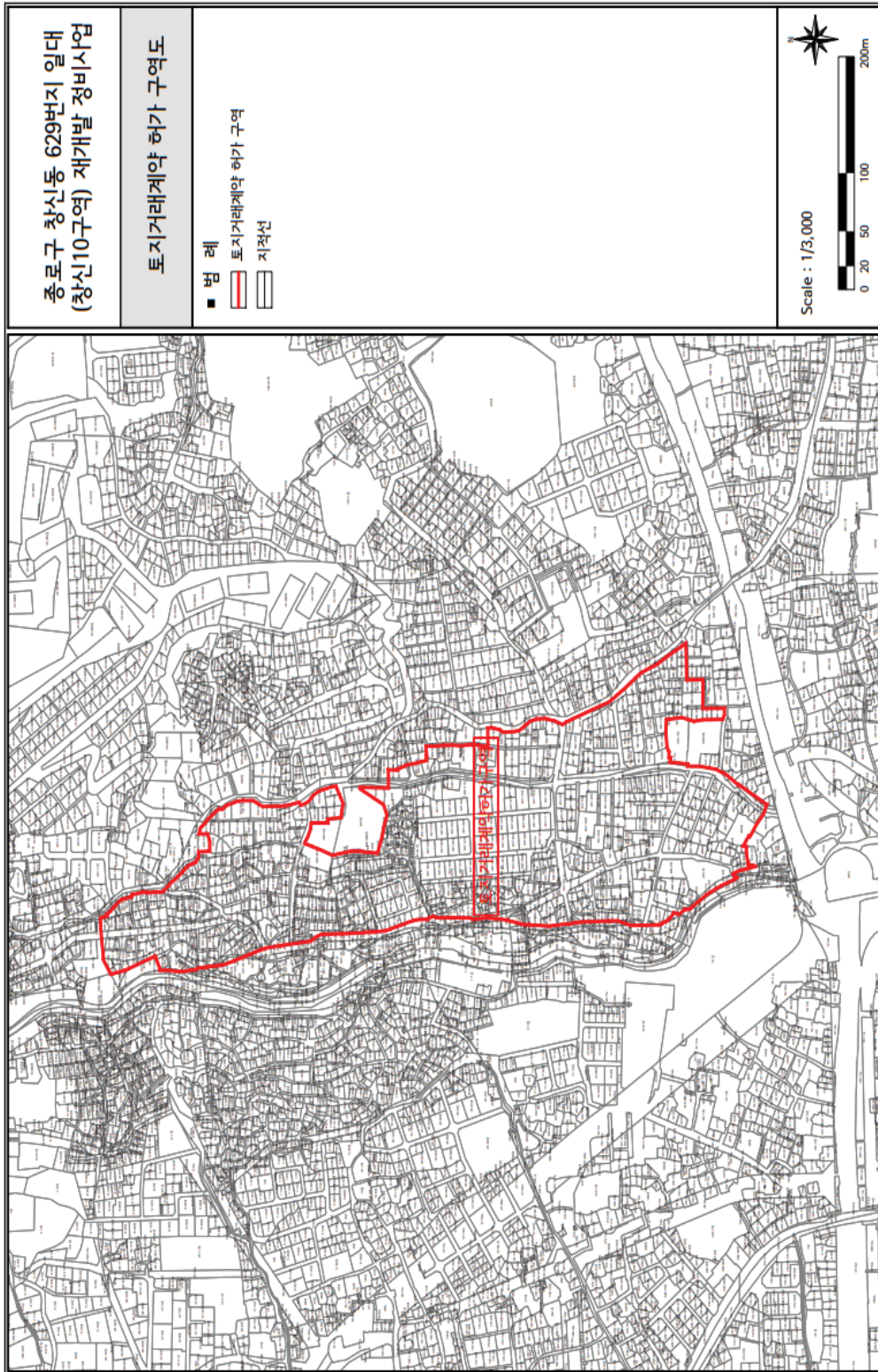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 - 605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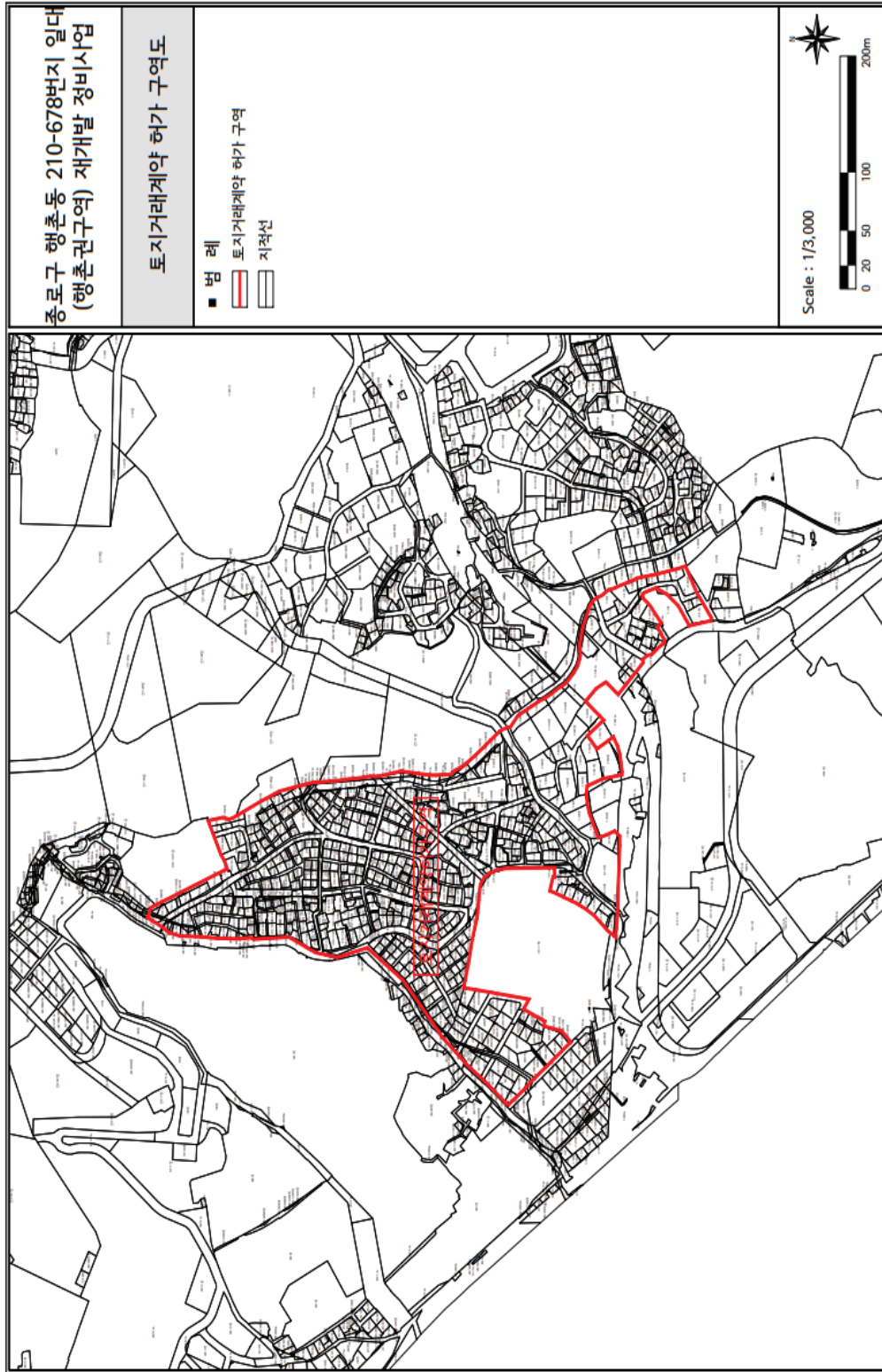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 - 17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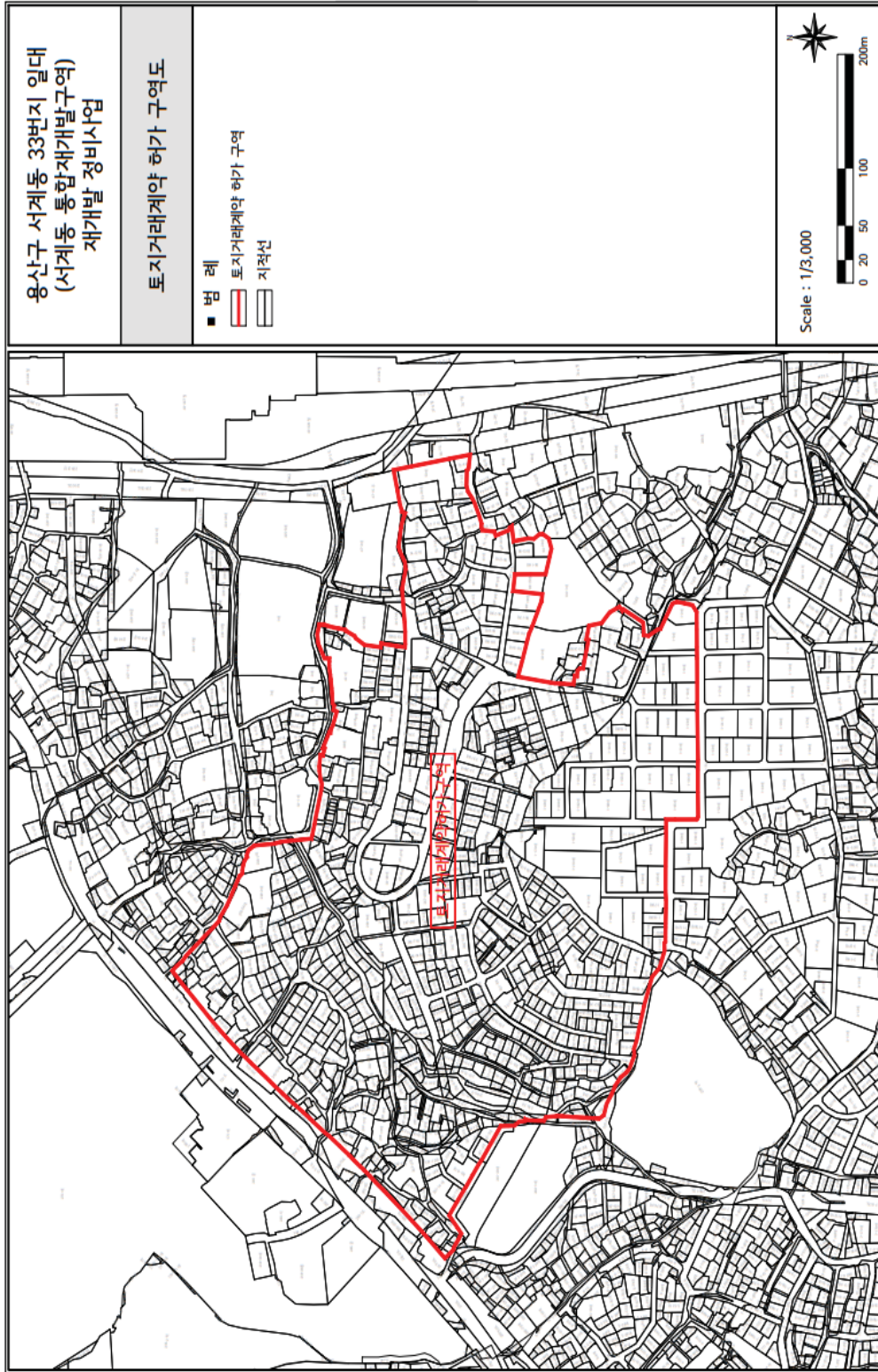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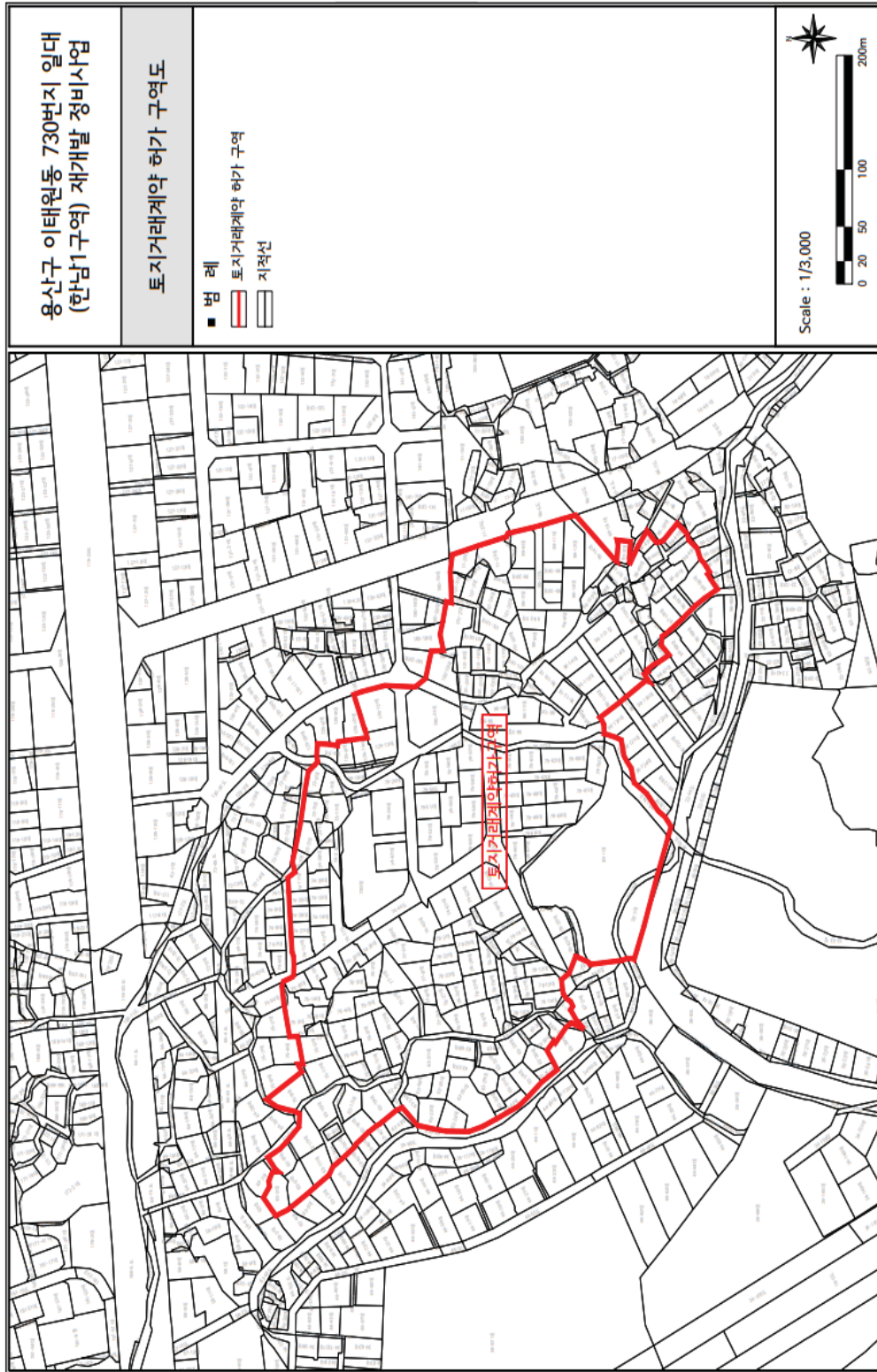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 - 678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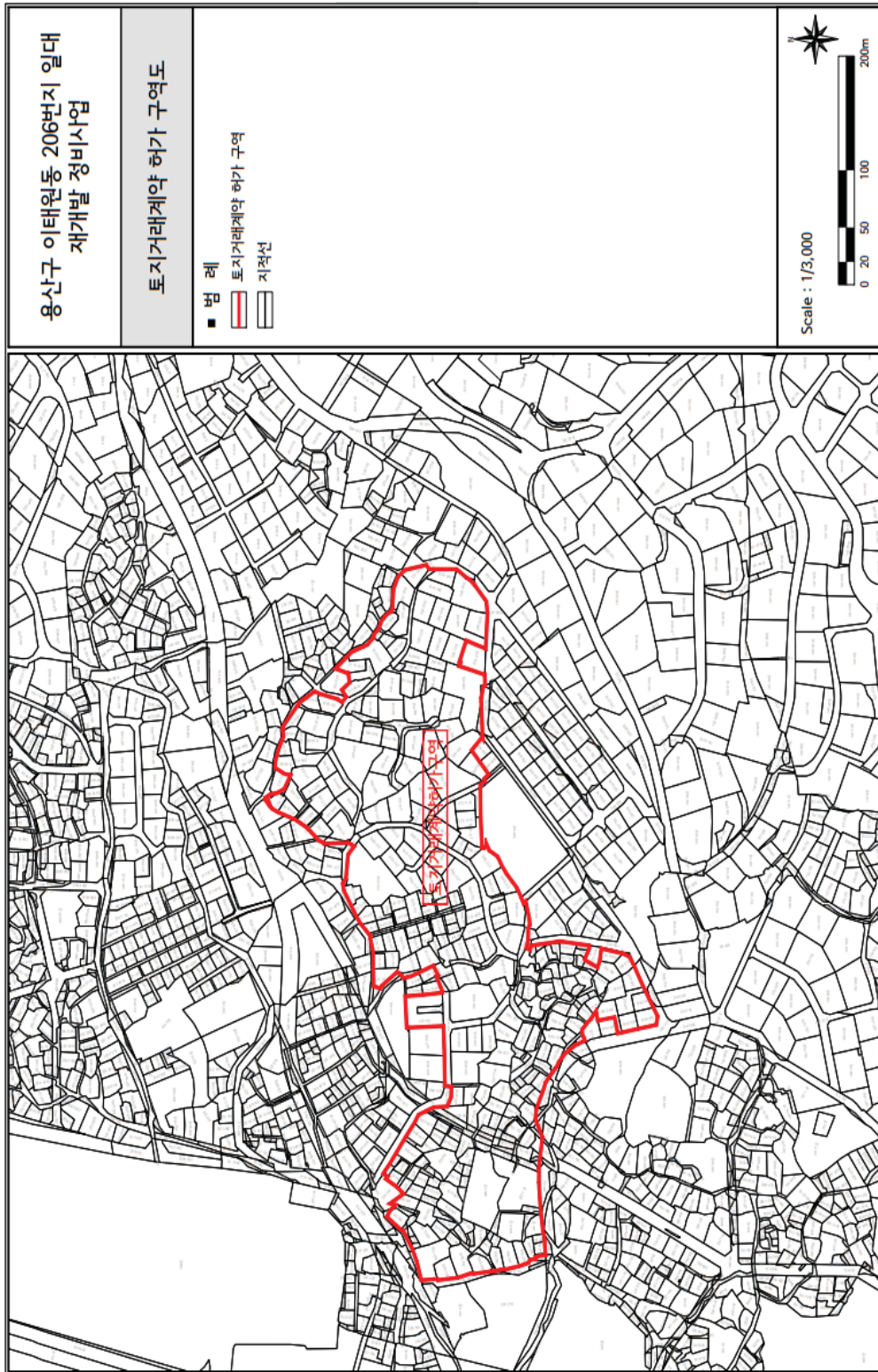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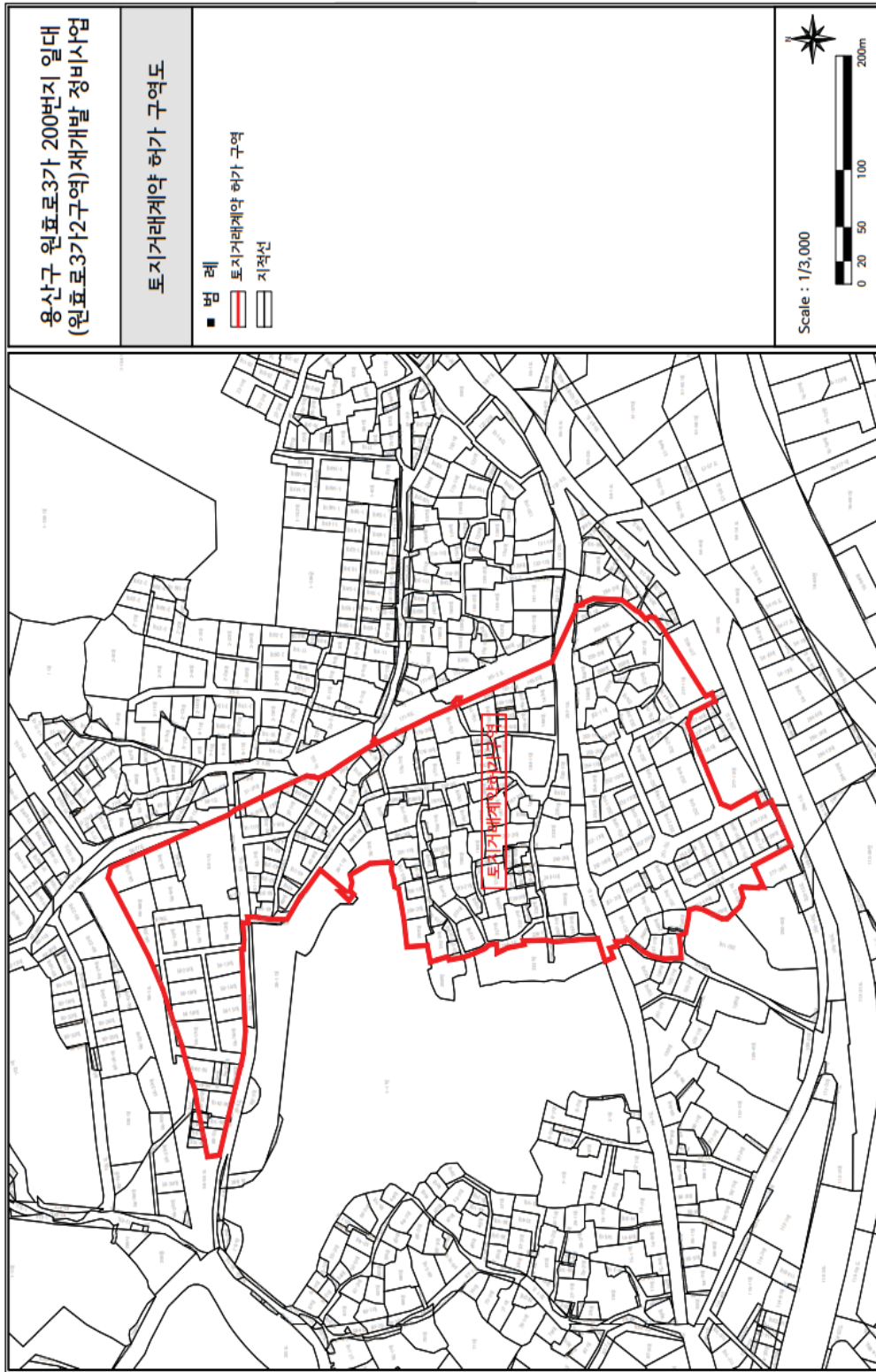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3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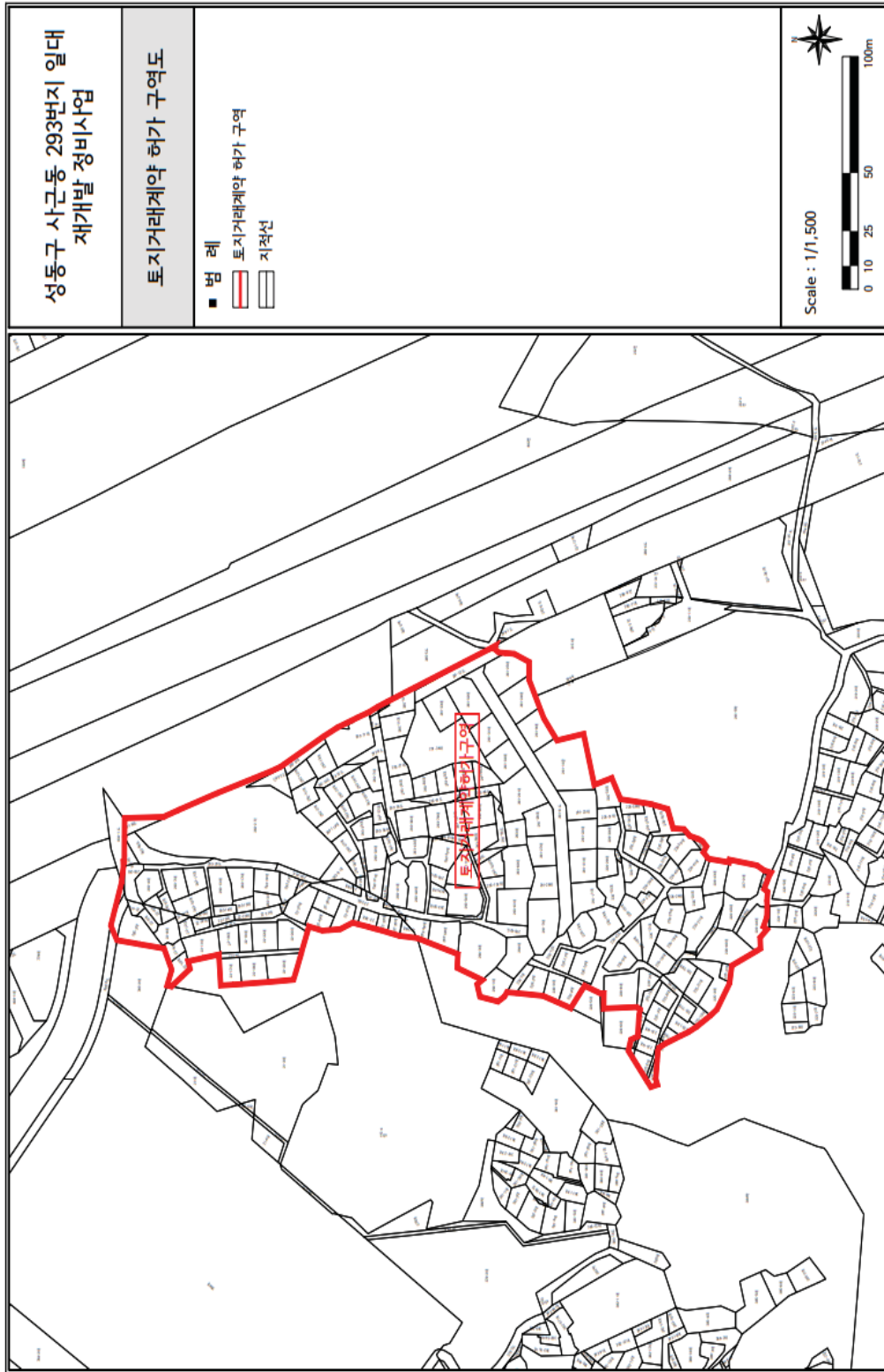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06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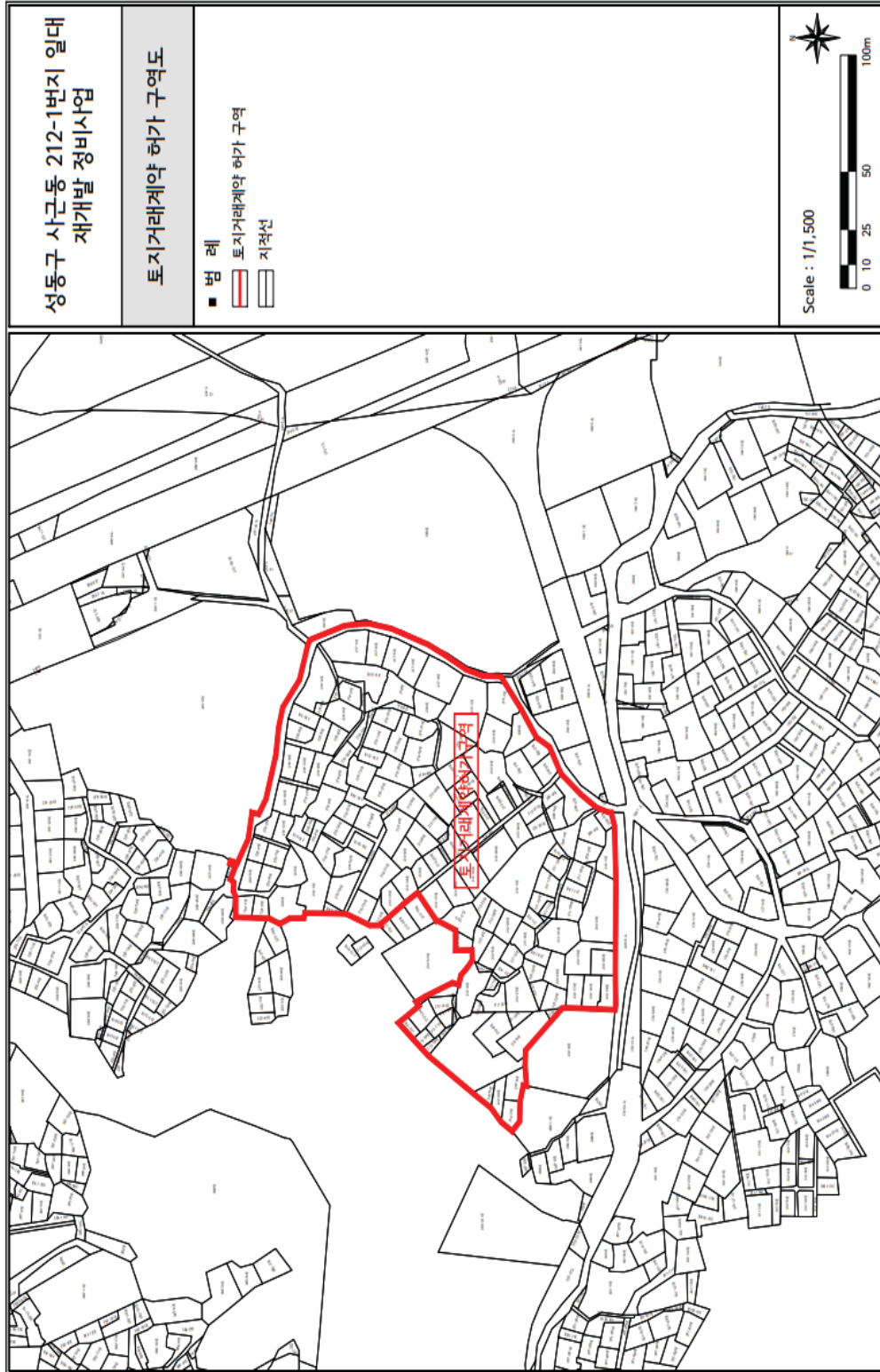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0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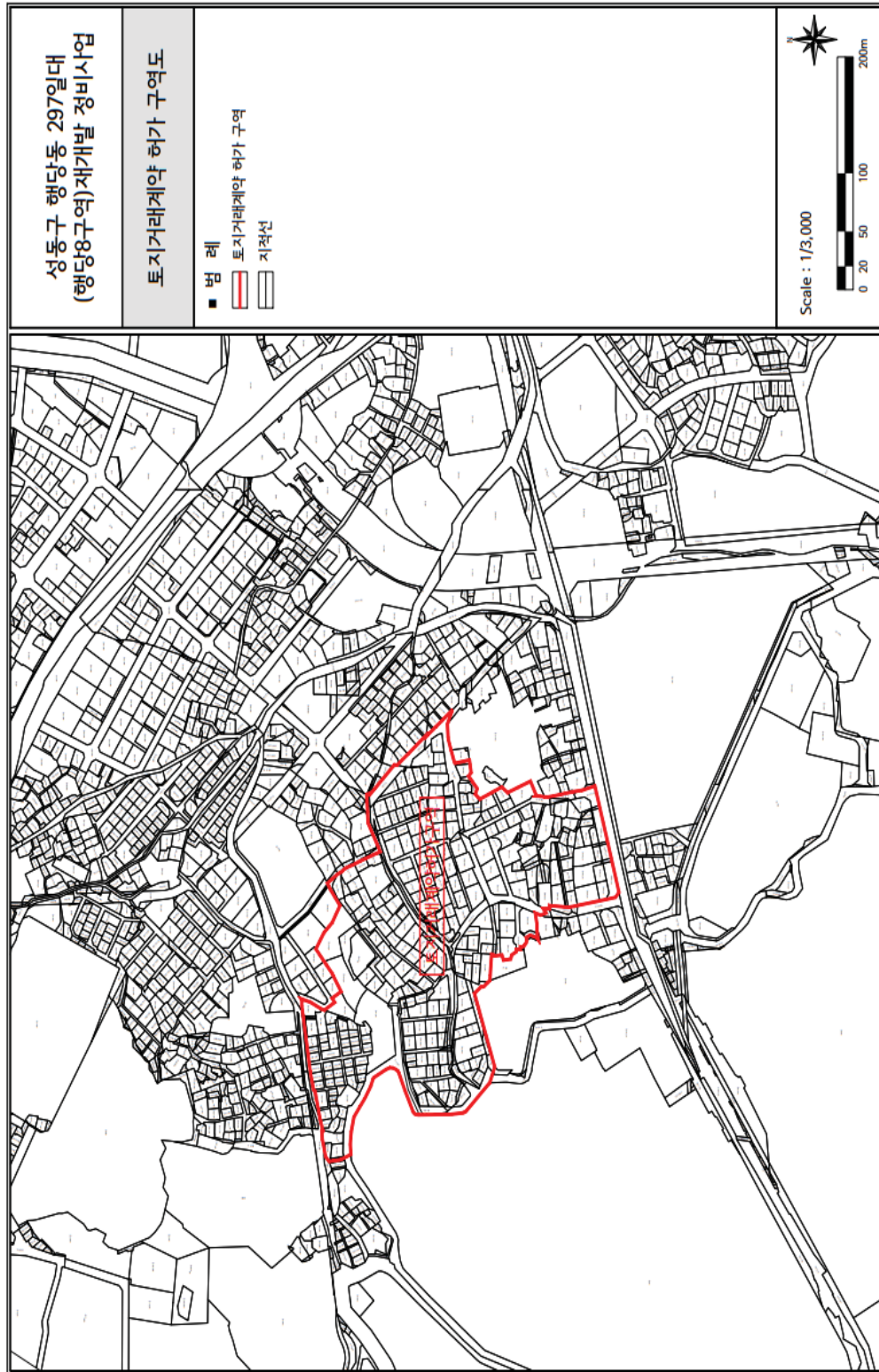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9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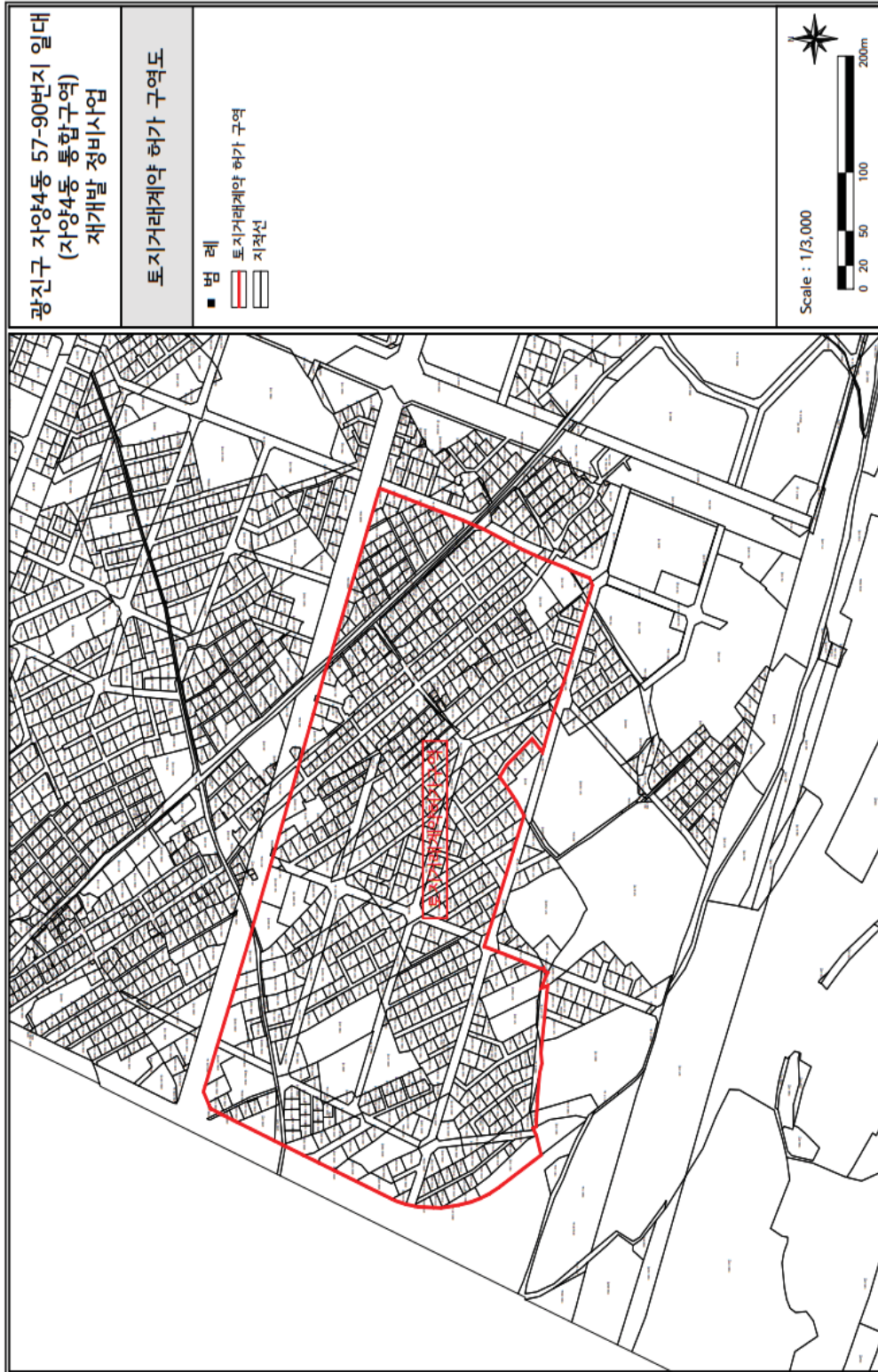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12-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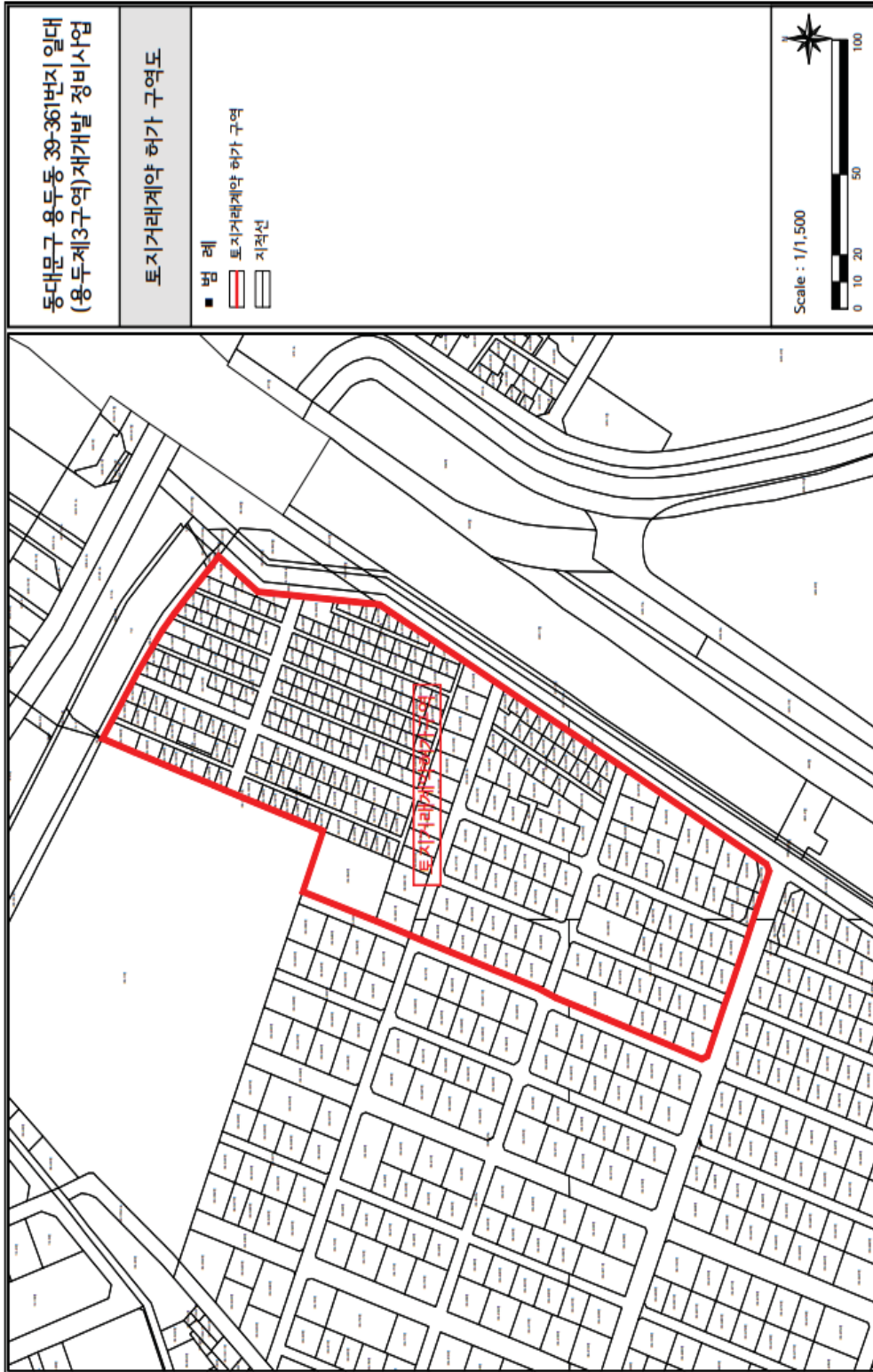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97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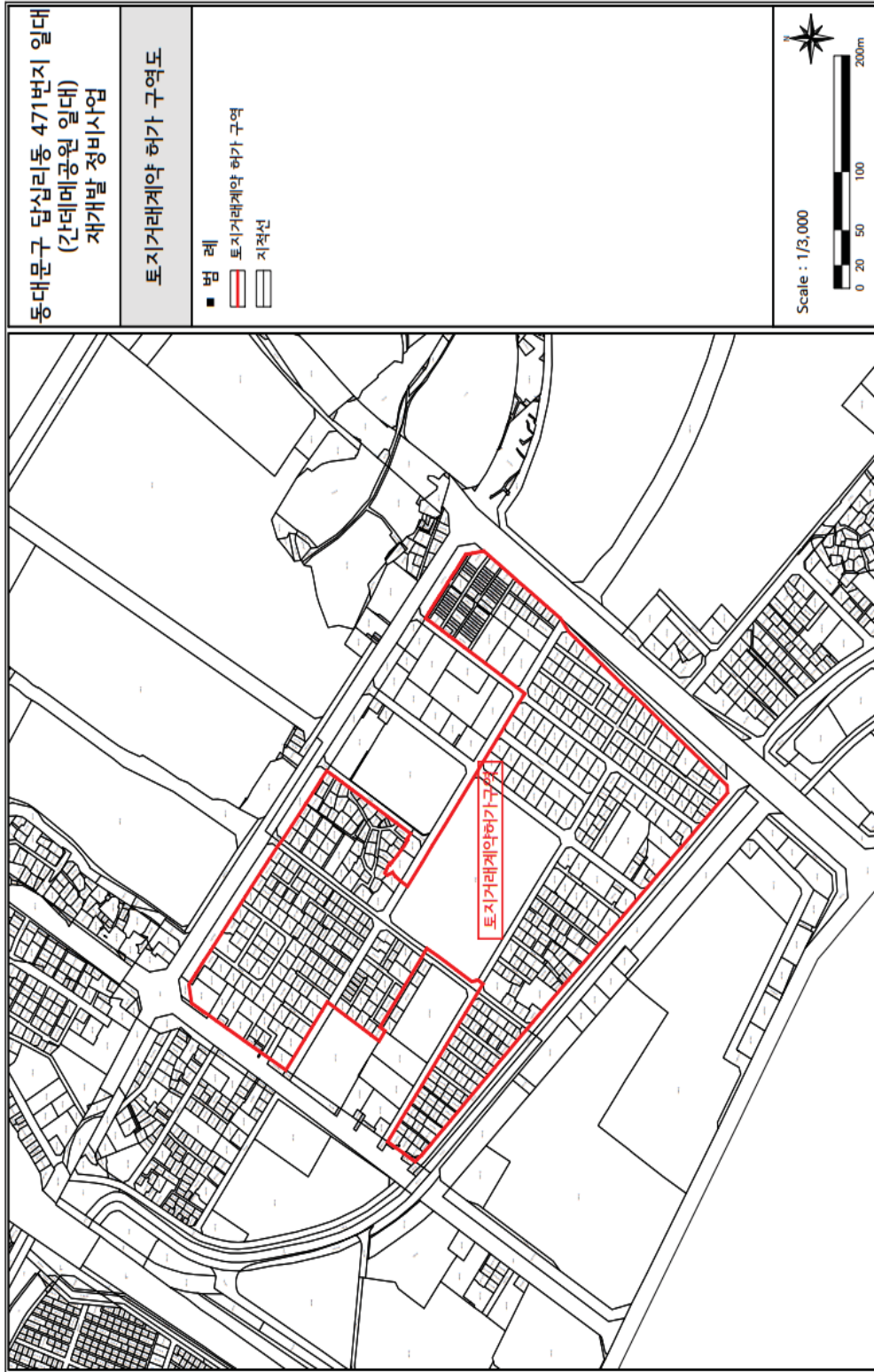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7 - 9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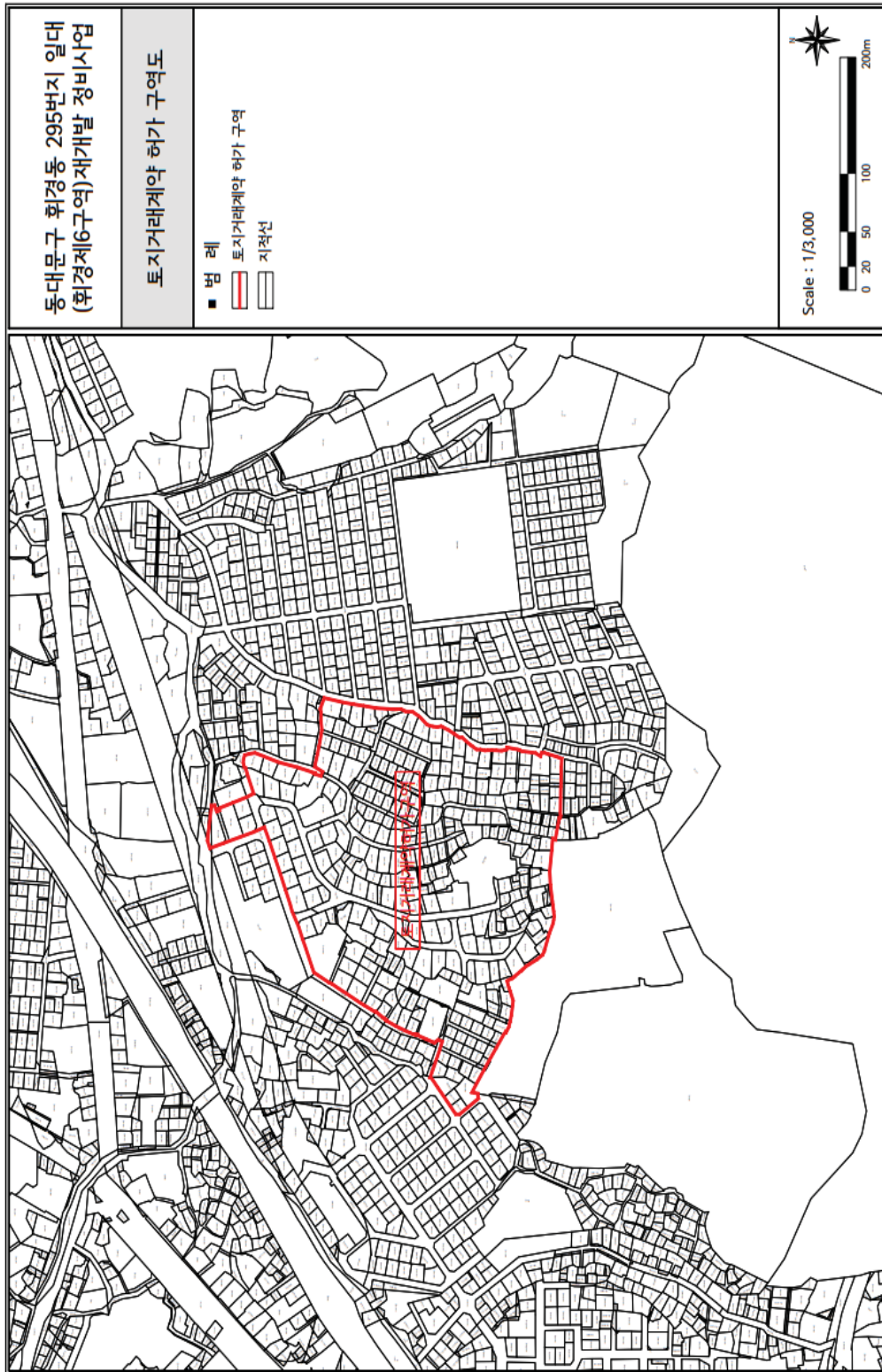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 - 36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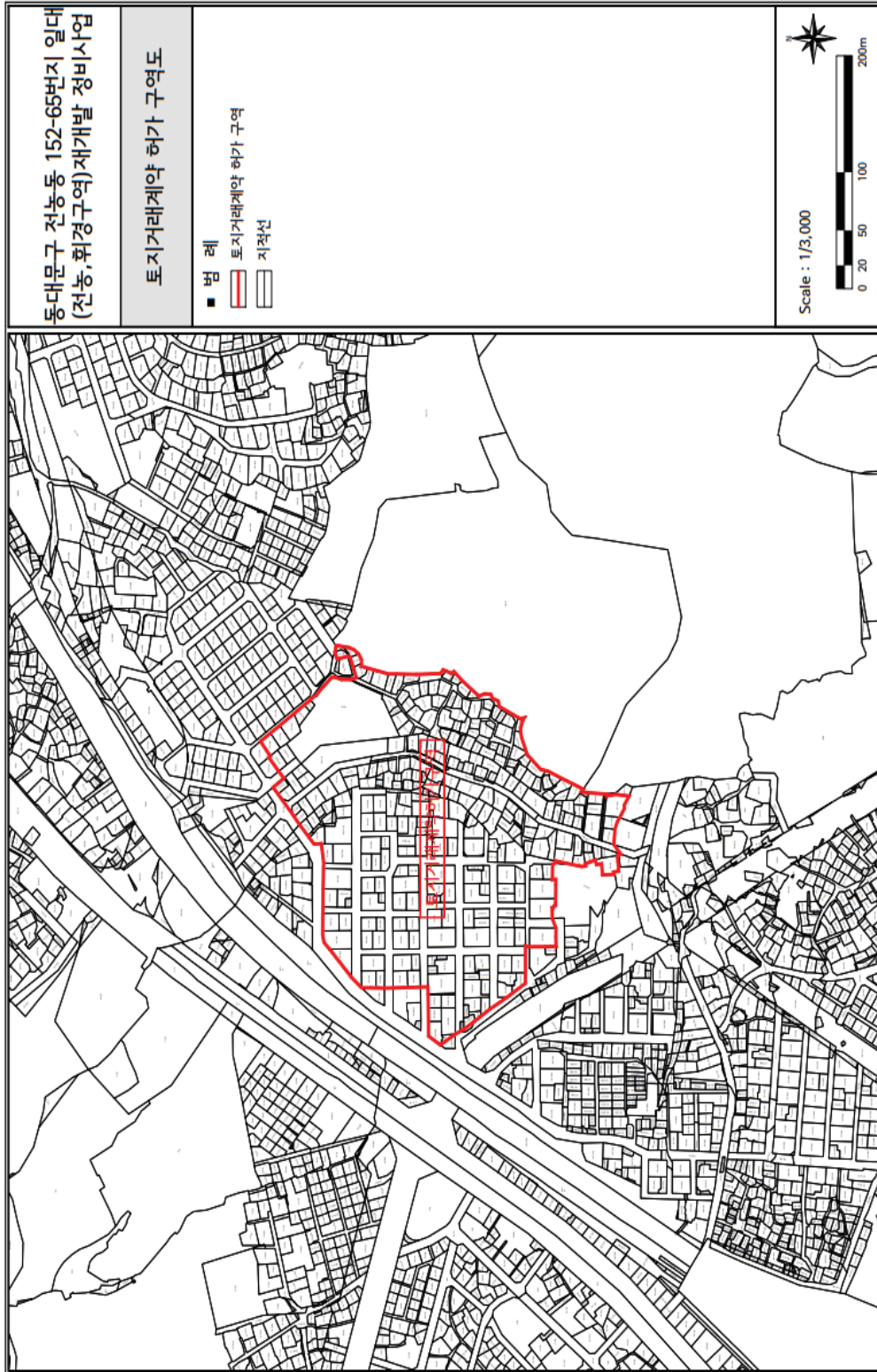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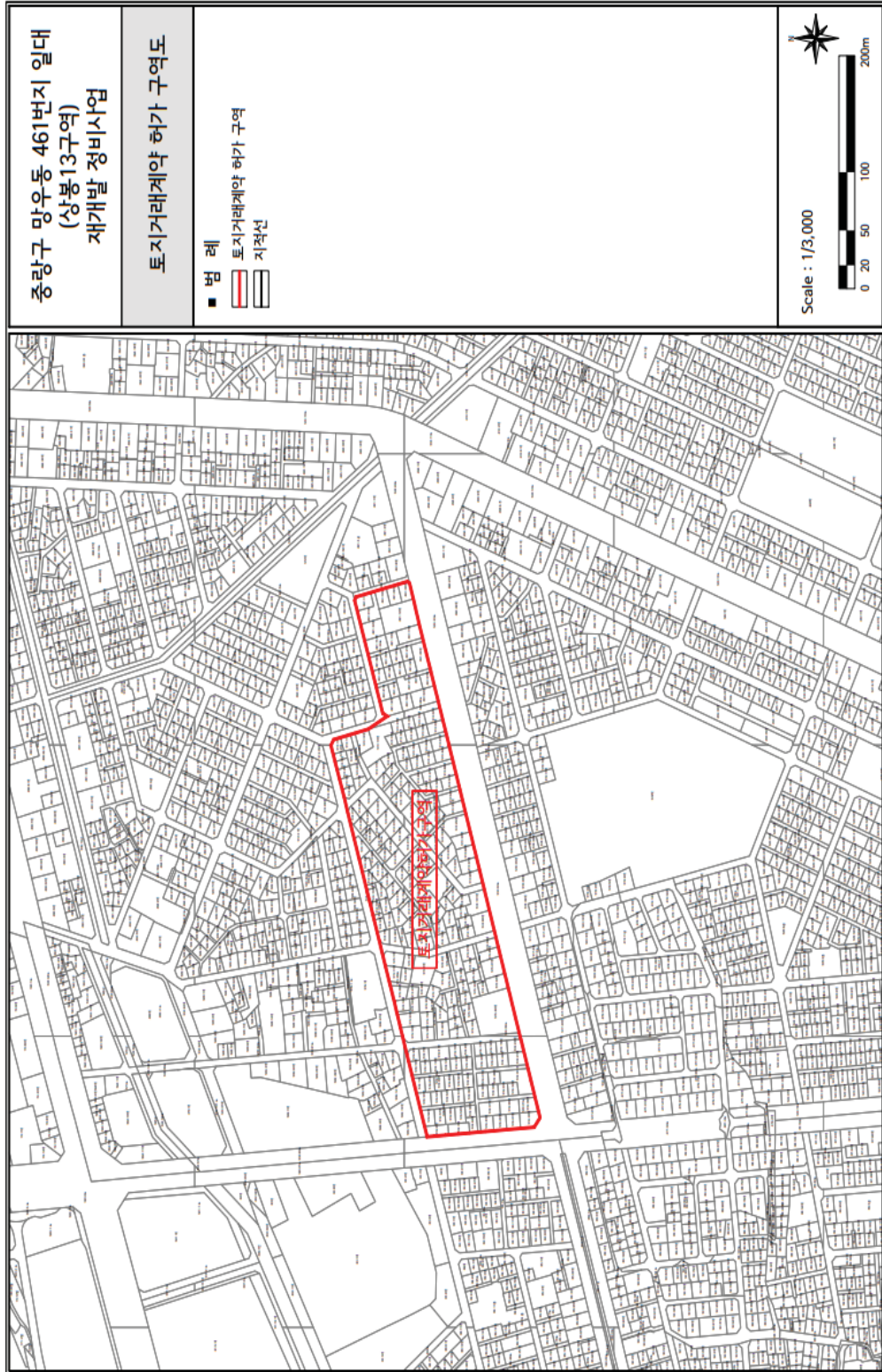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경동 29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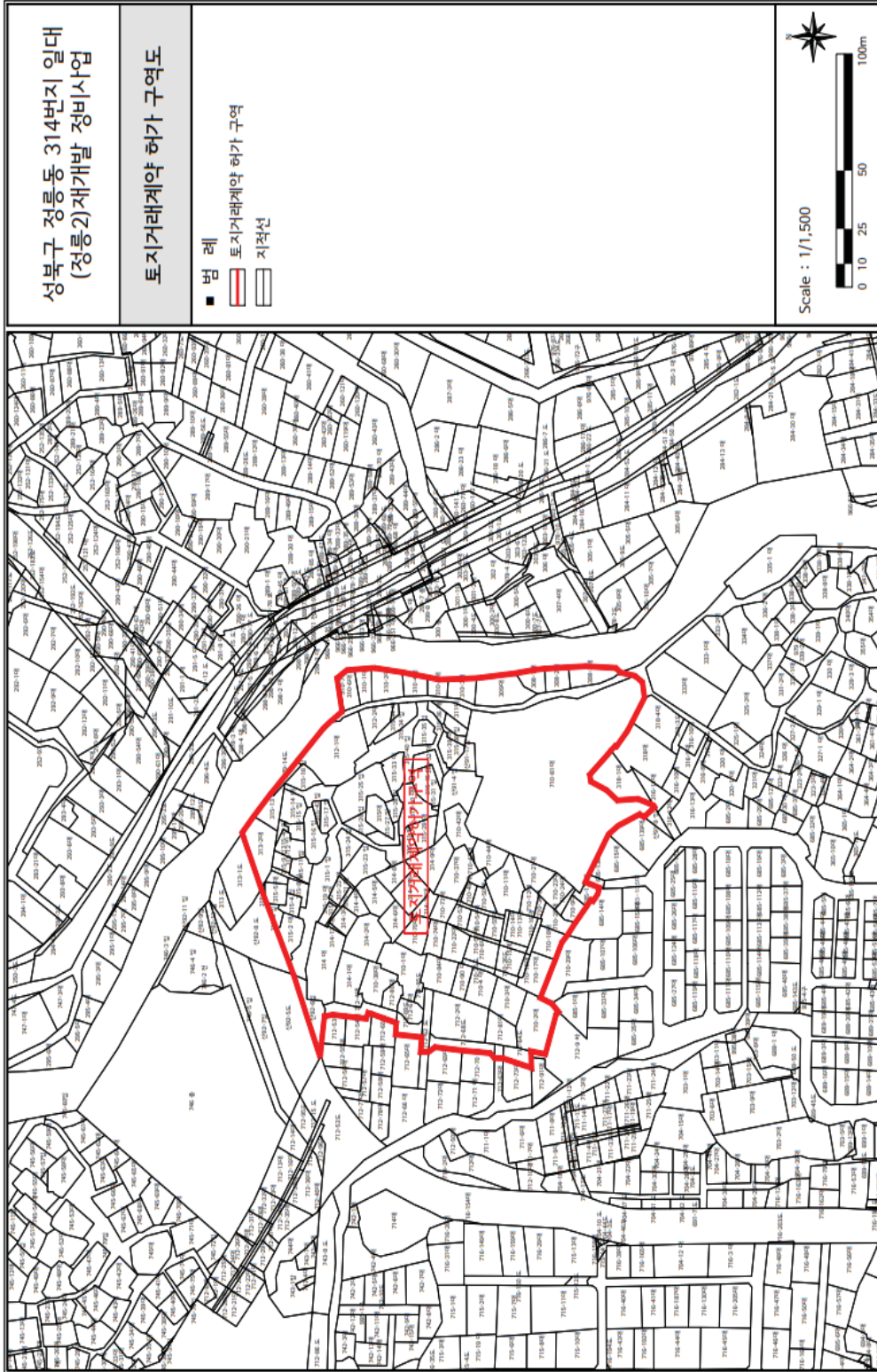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52 - 6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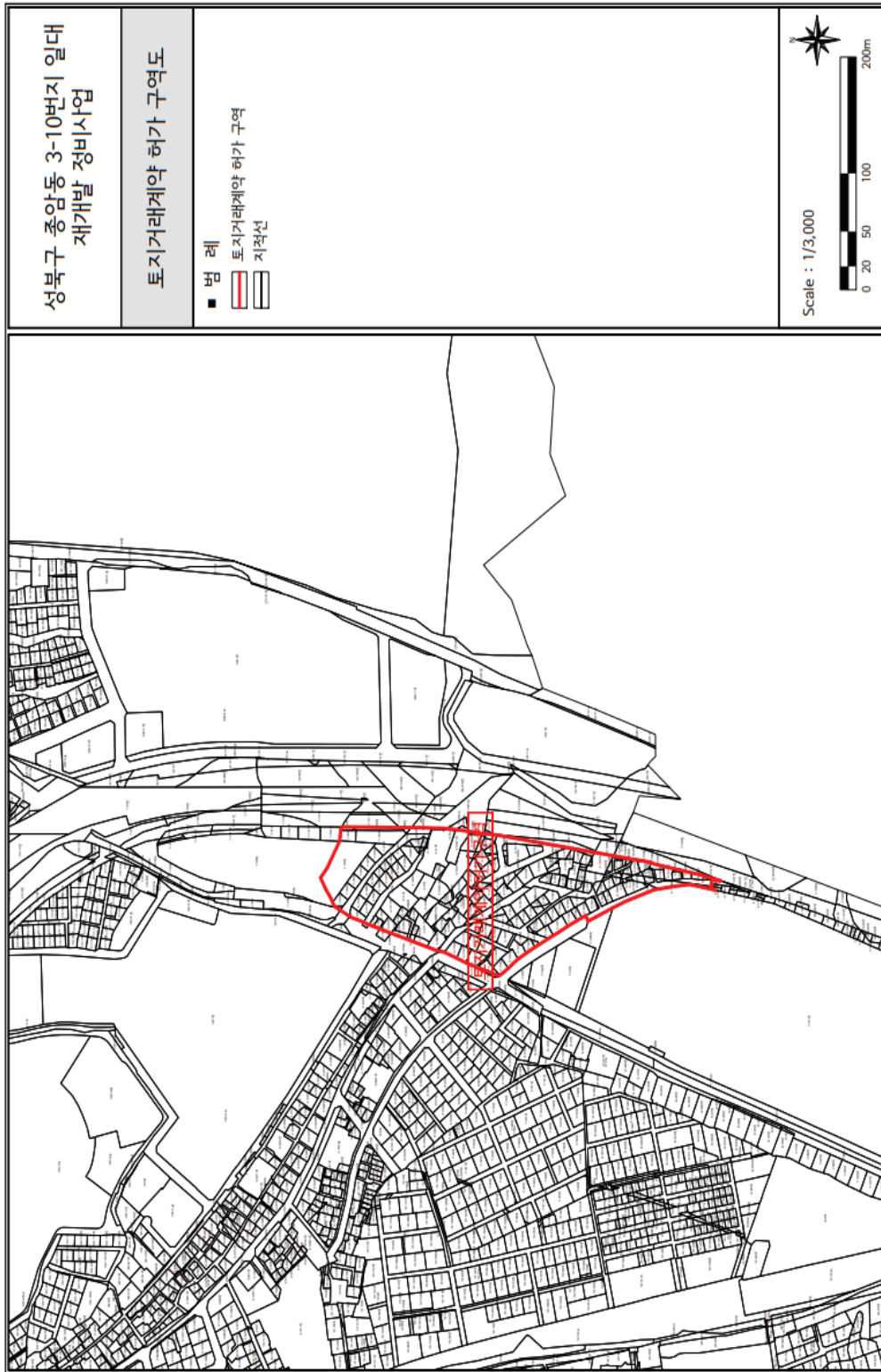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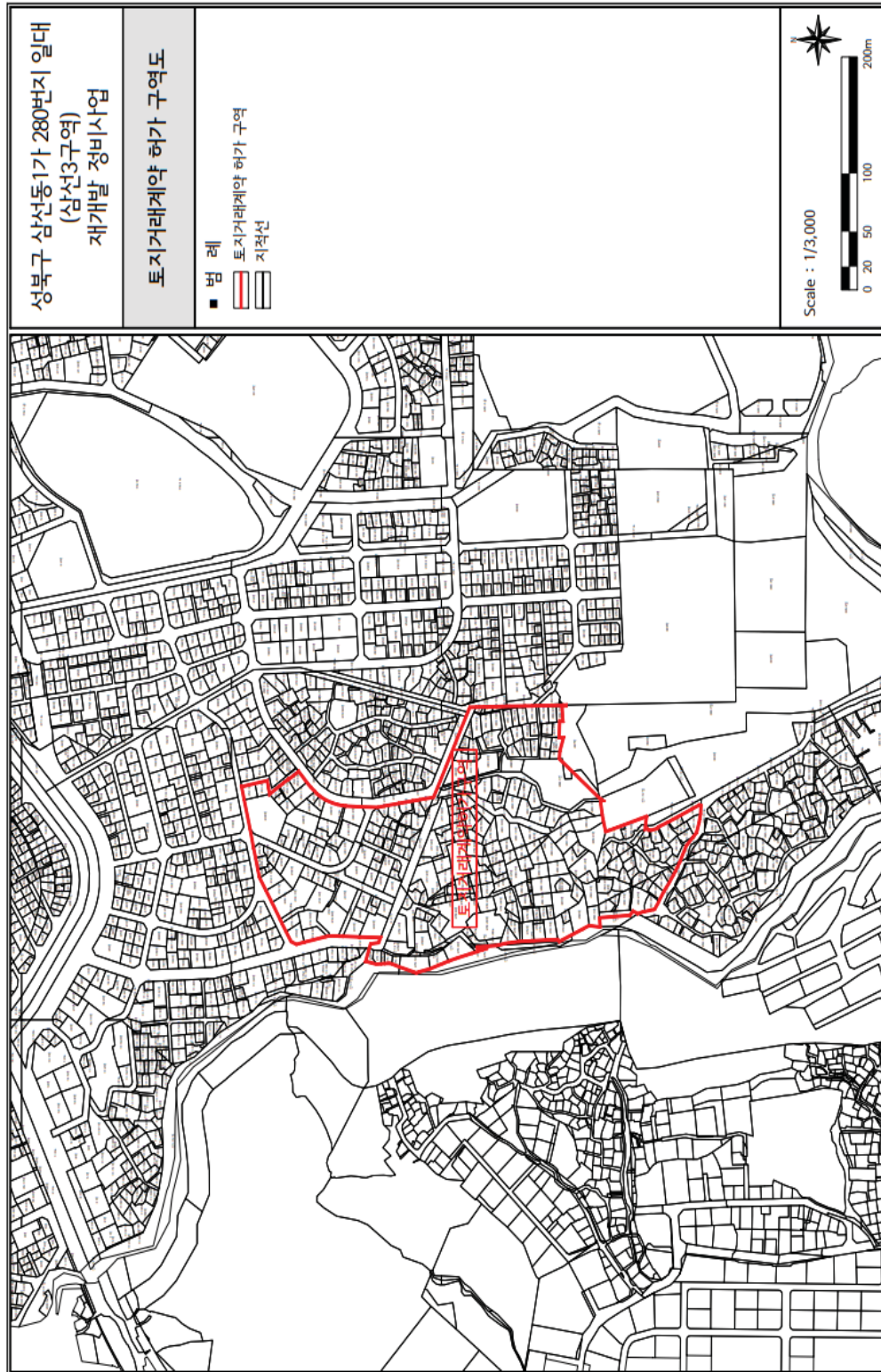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31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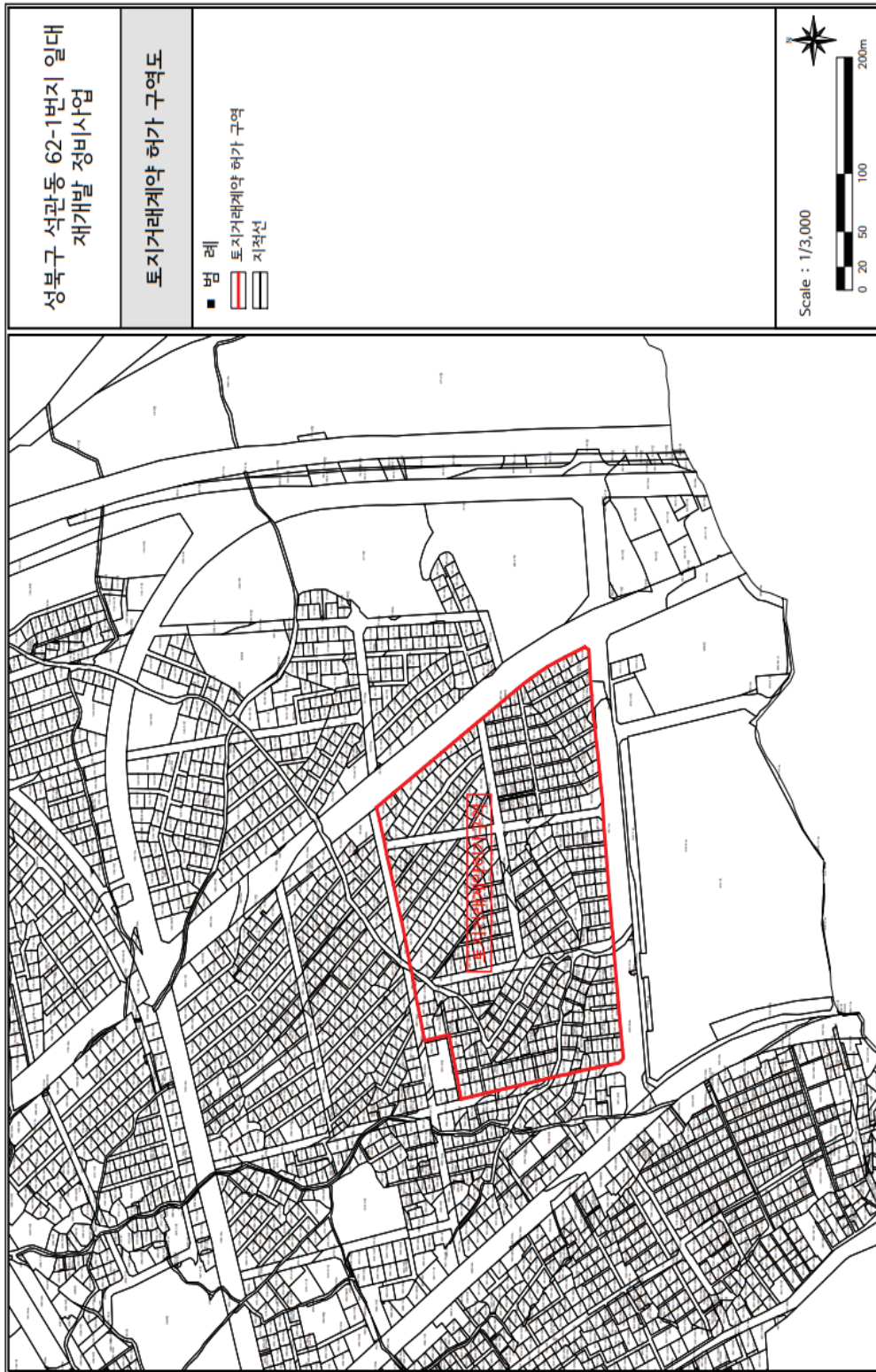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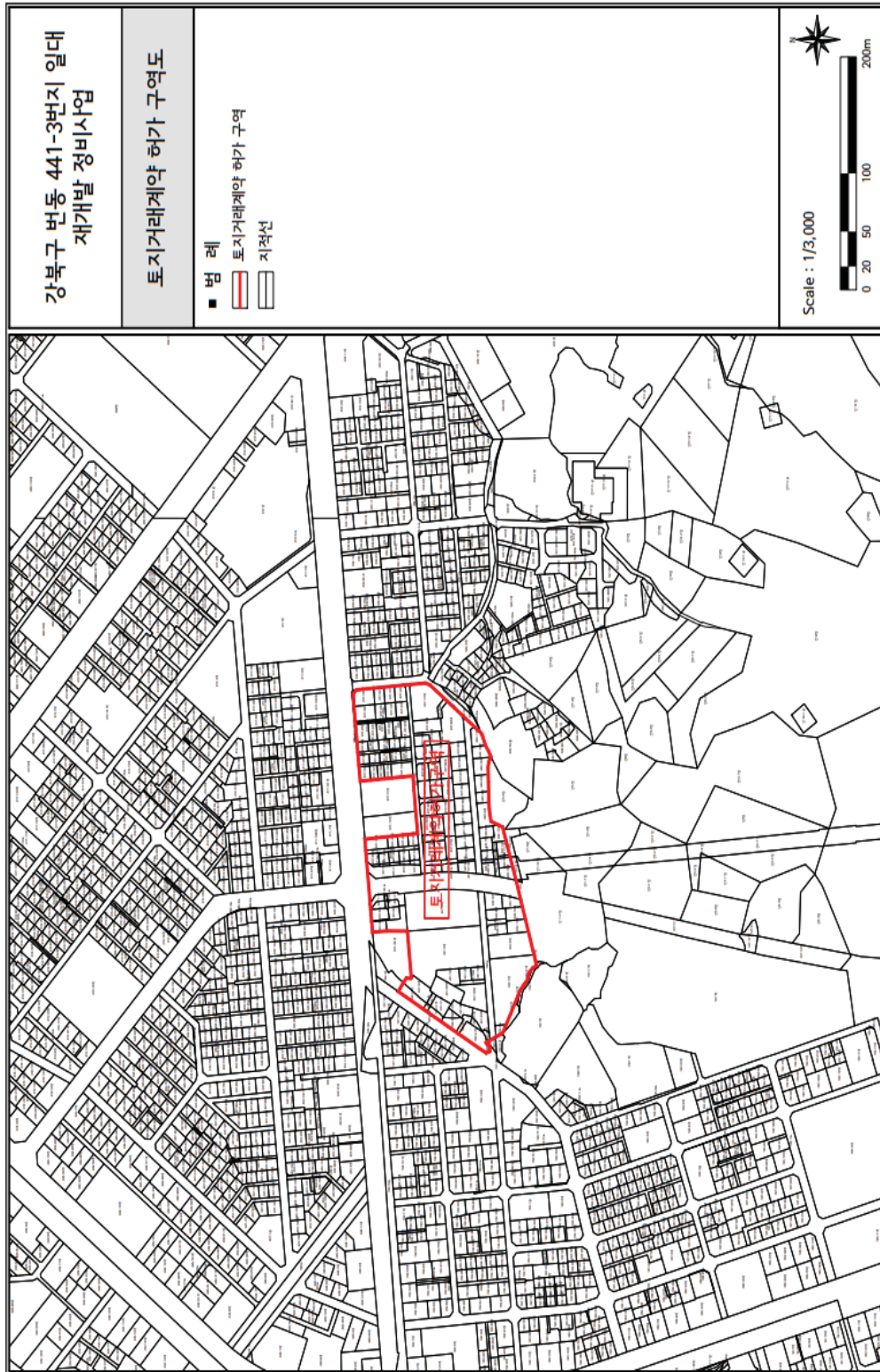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28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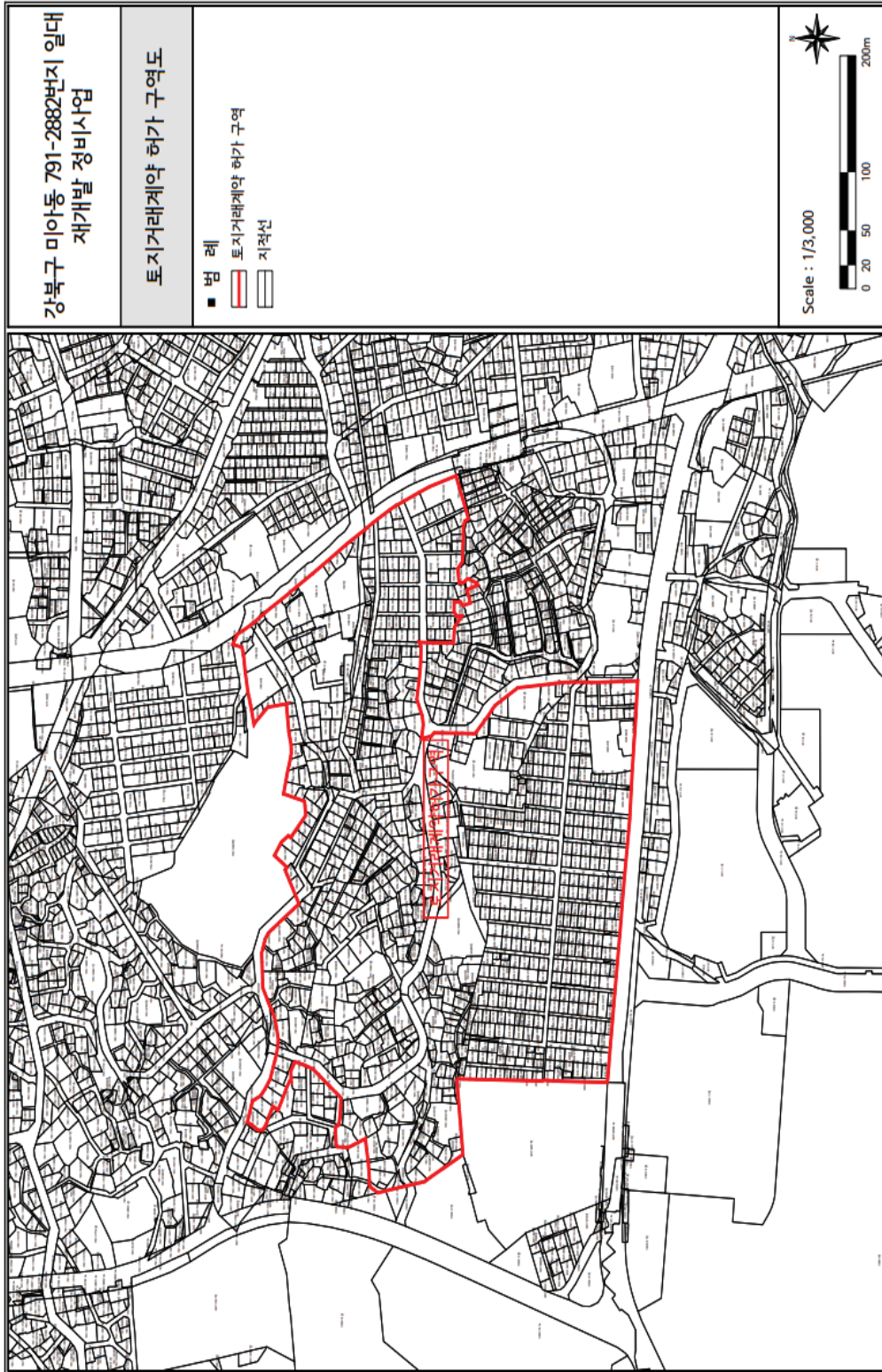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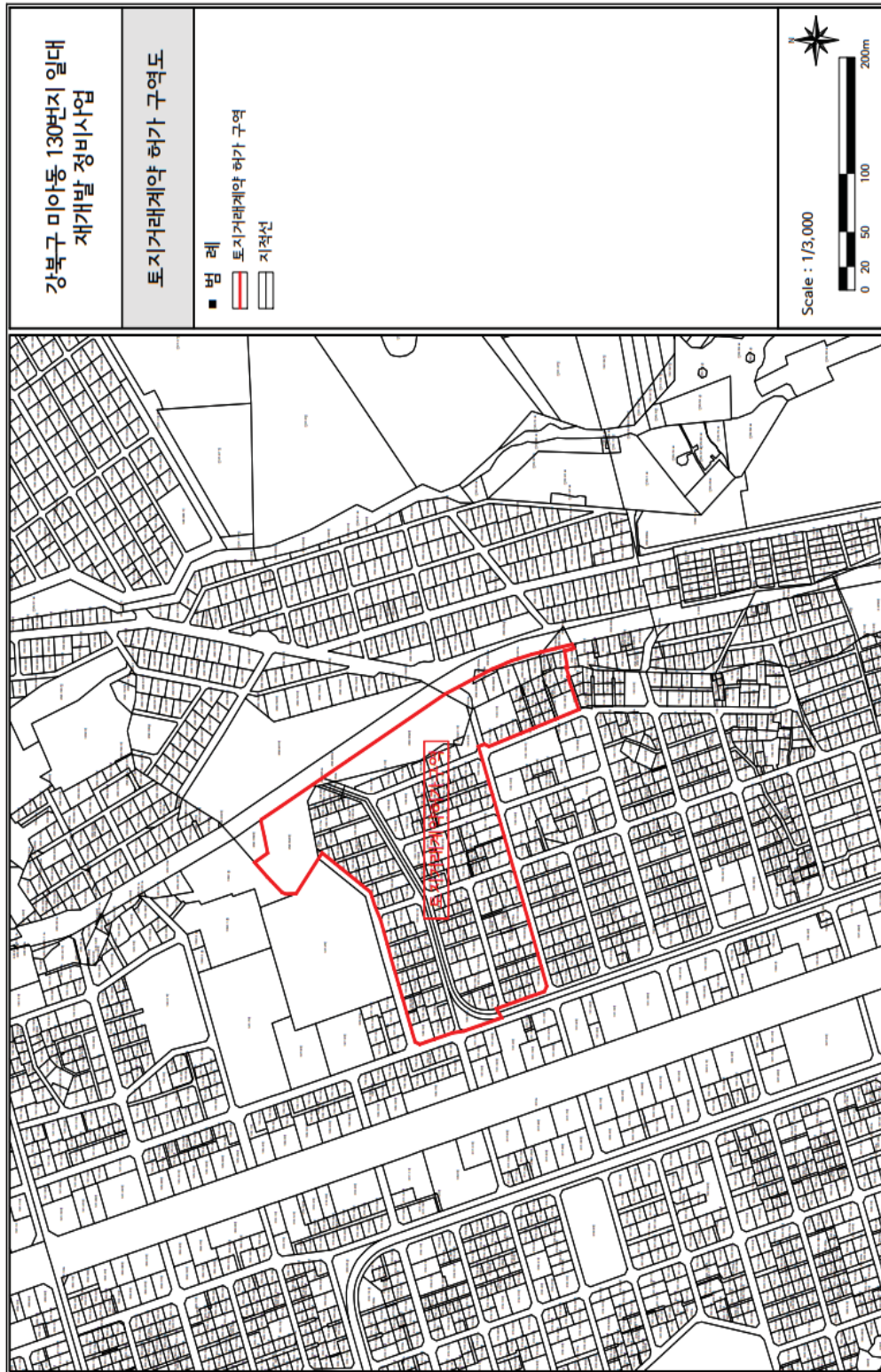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 - 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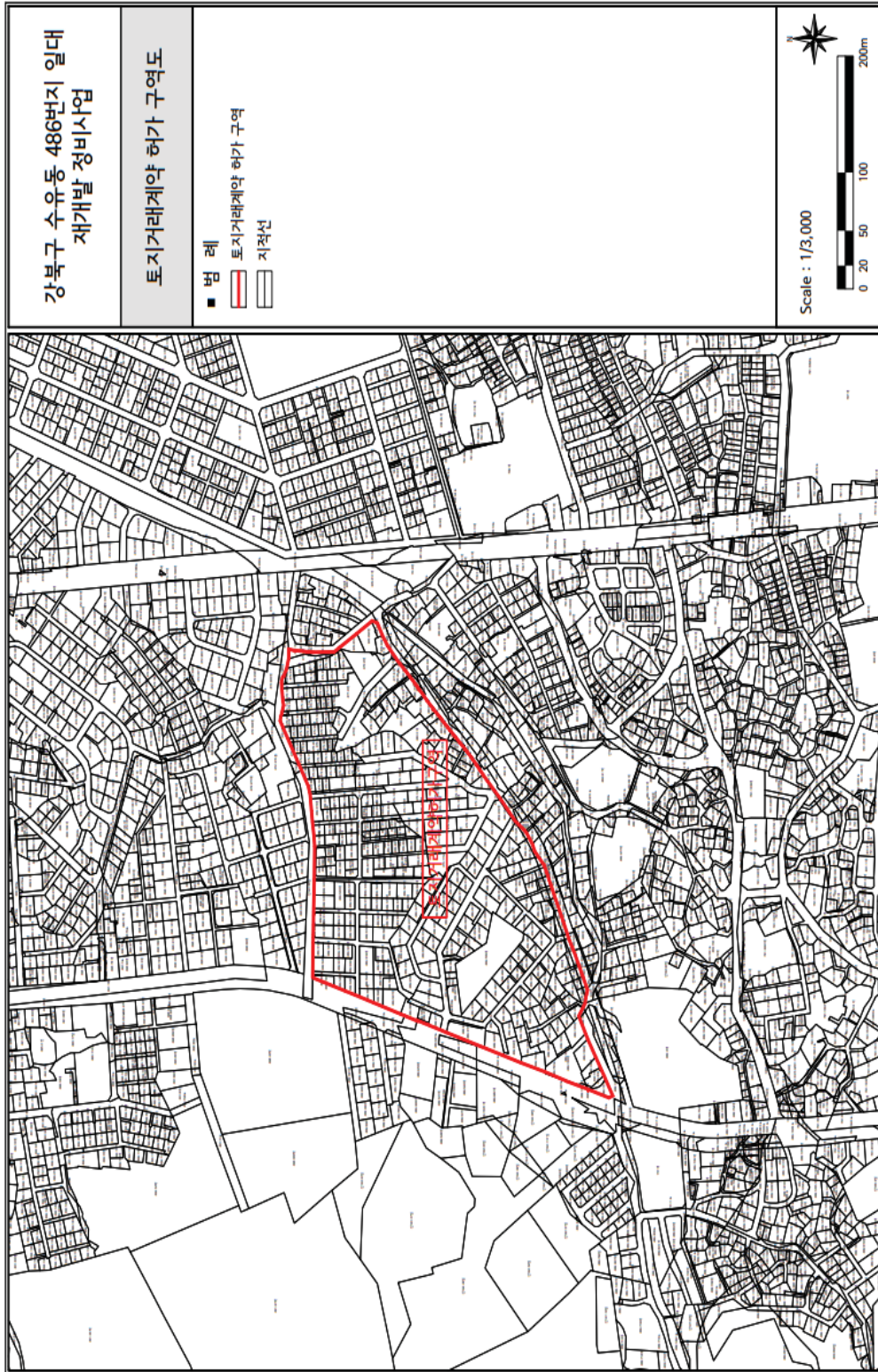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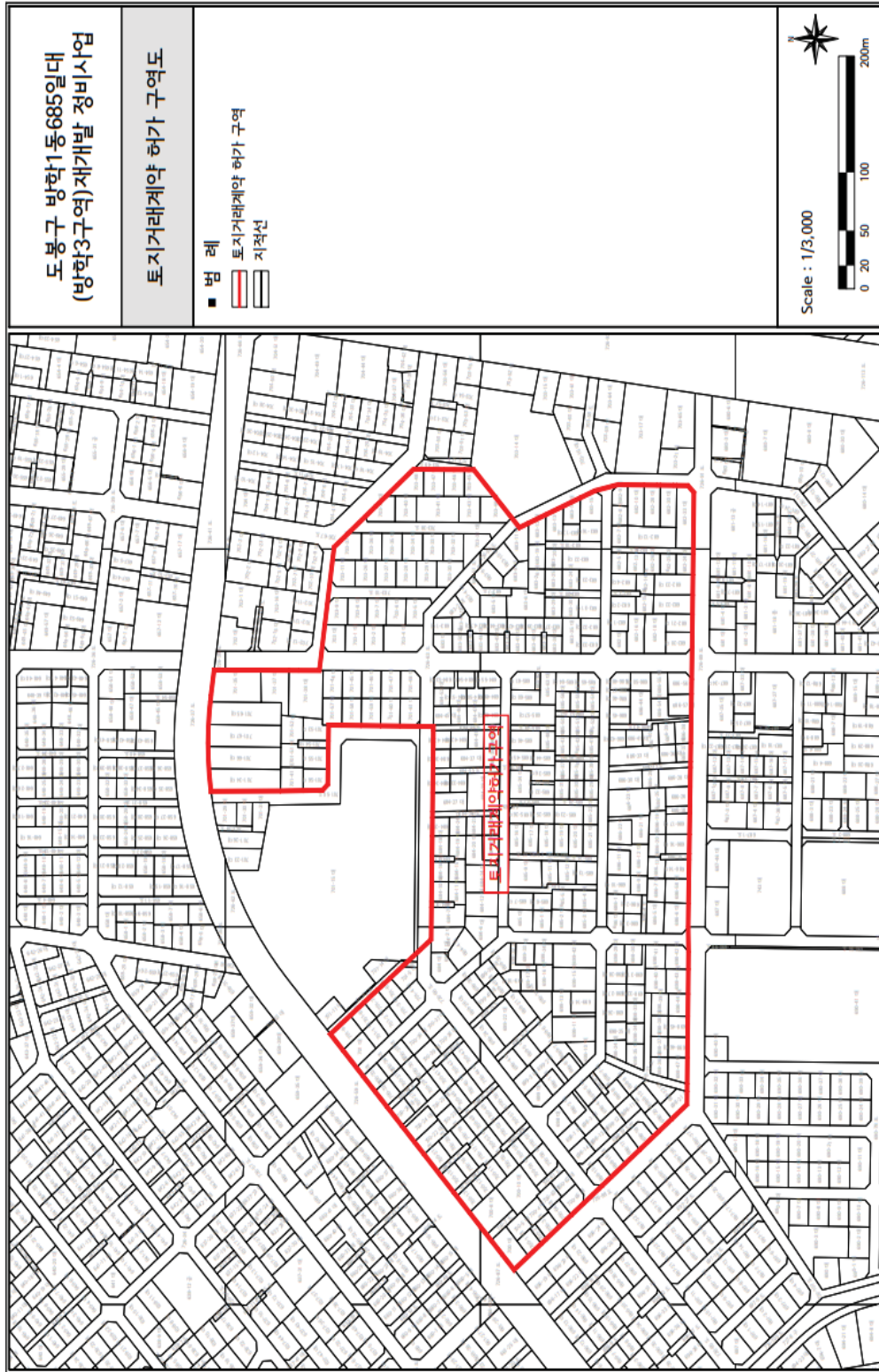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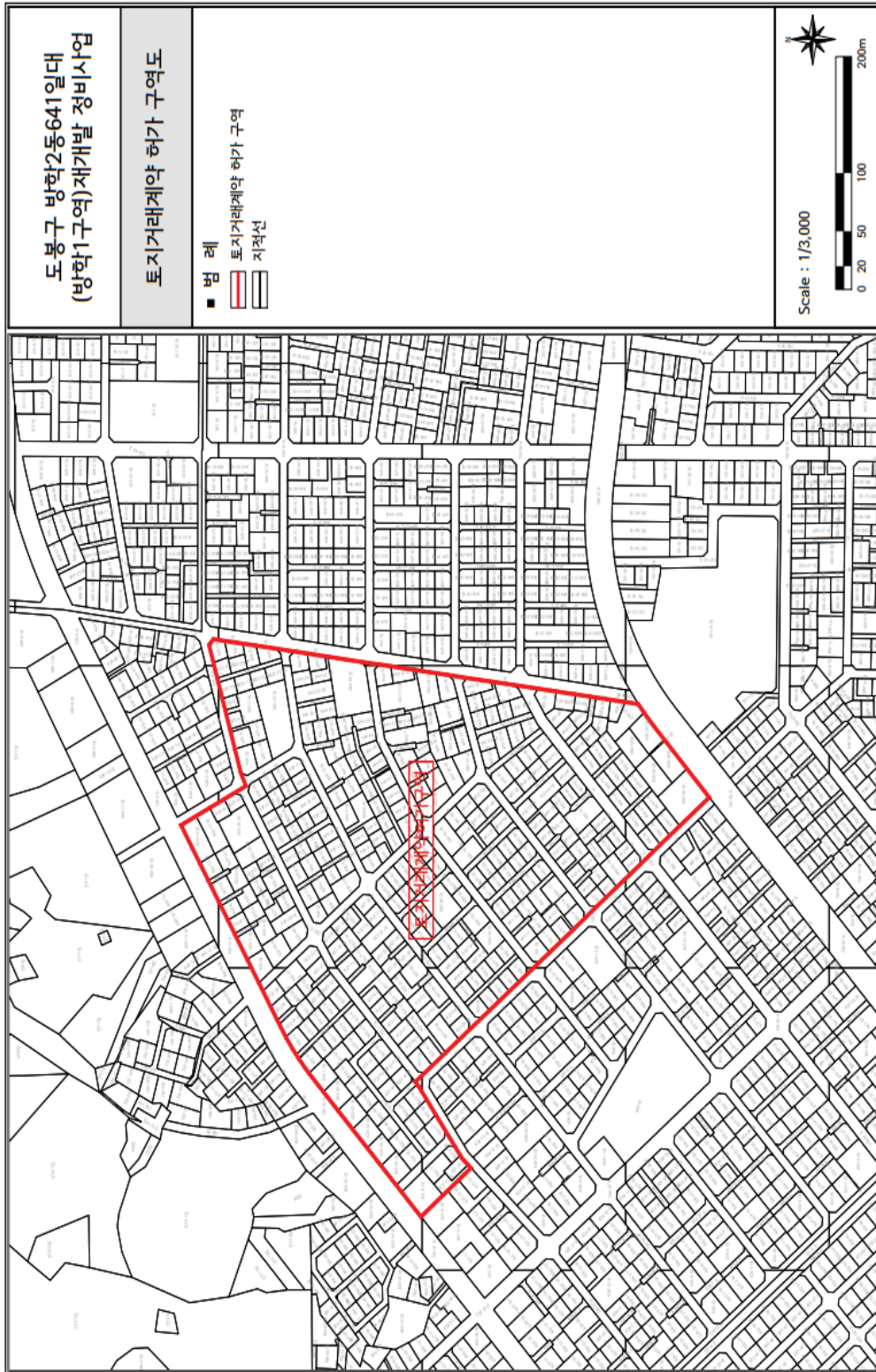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6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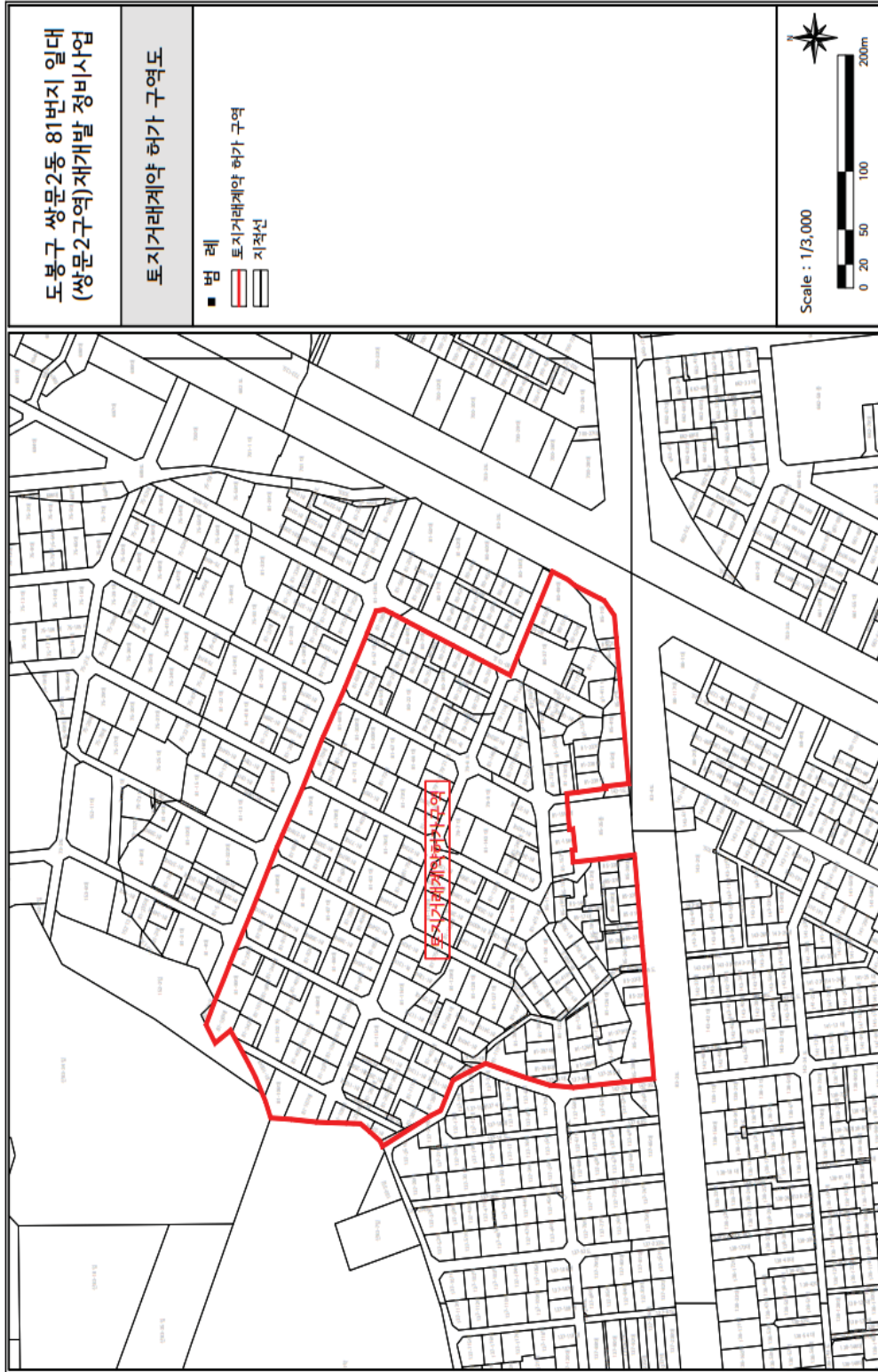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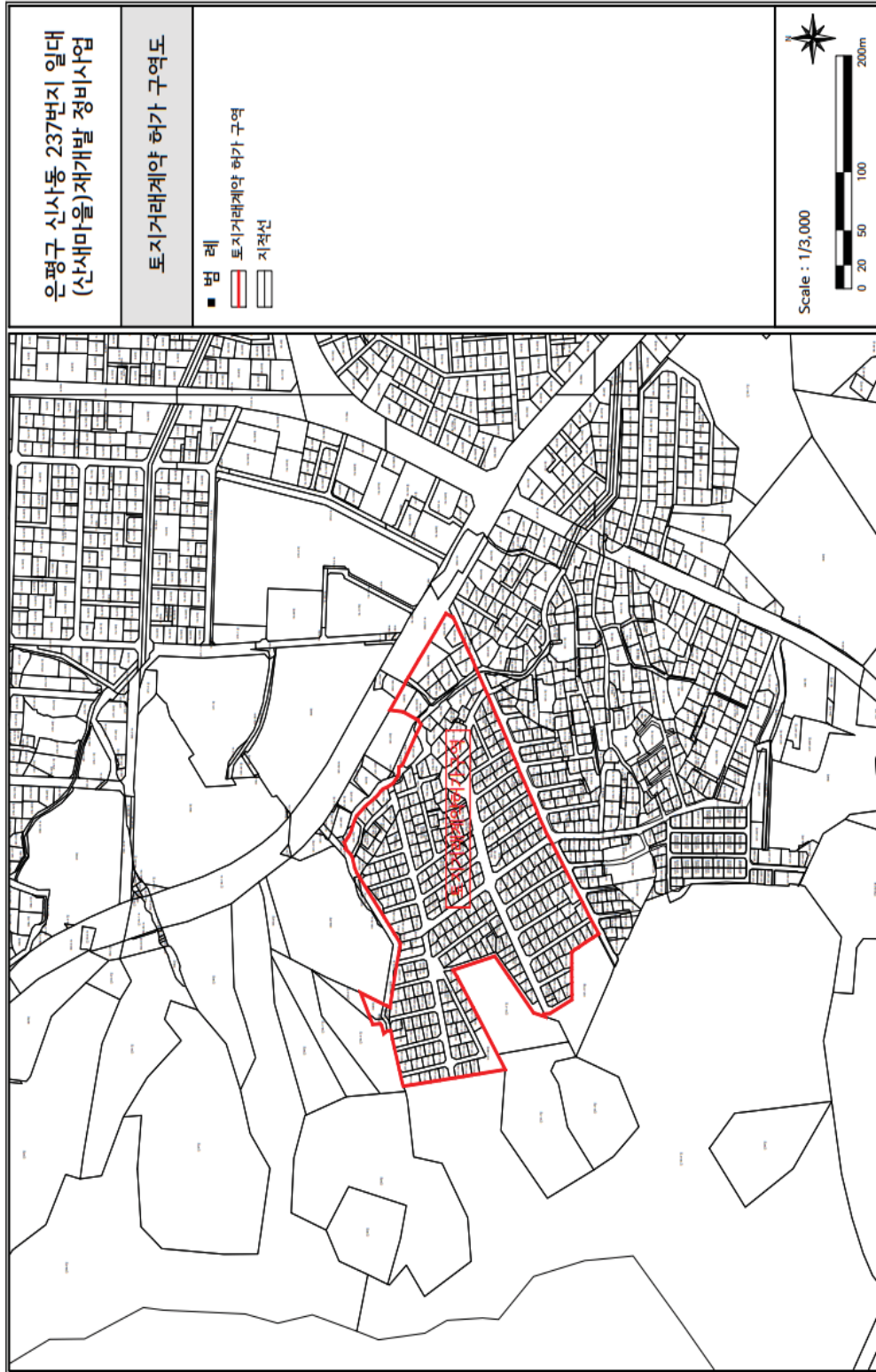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4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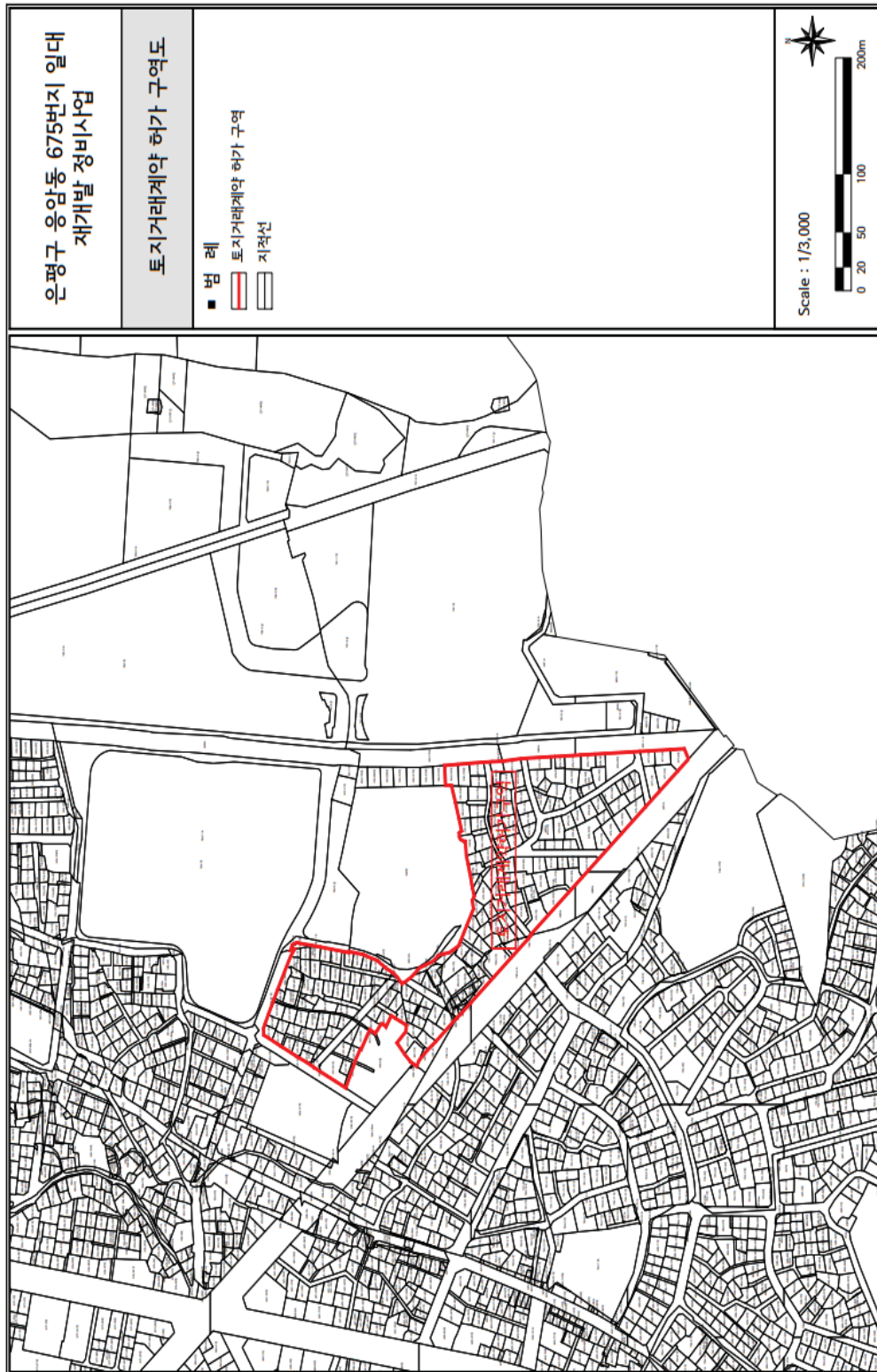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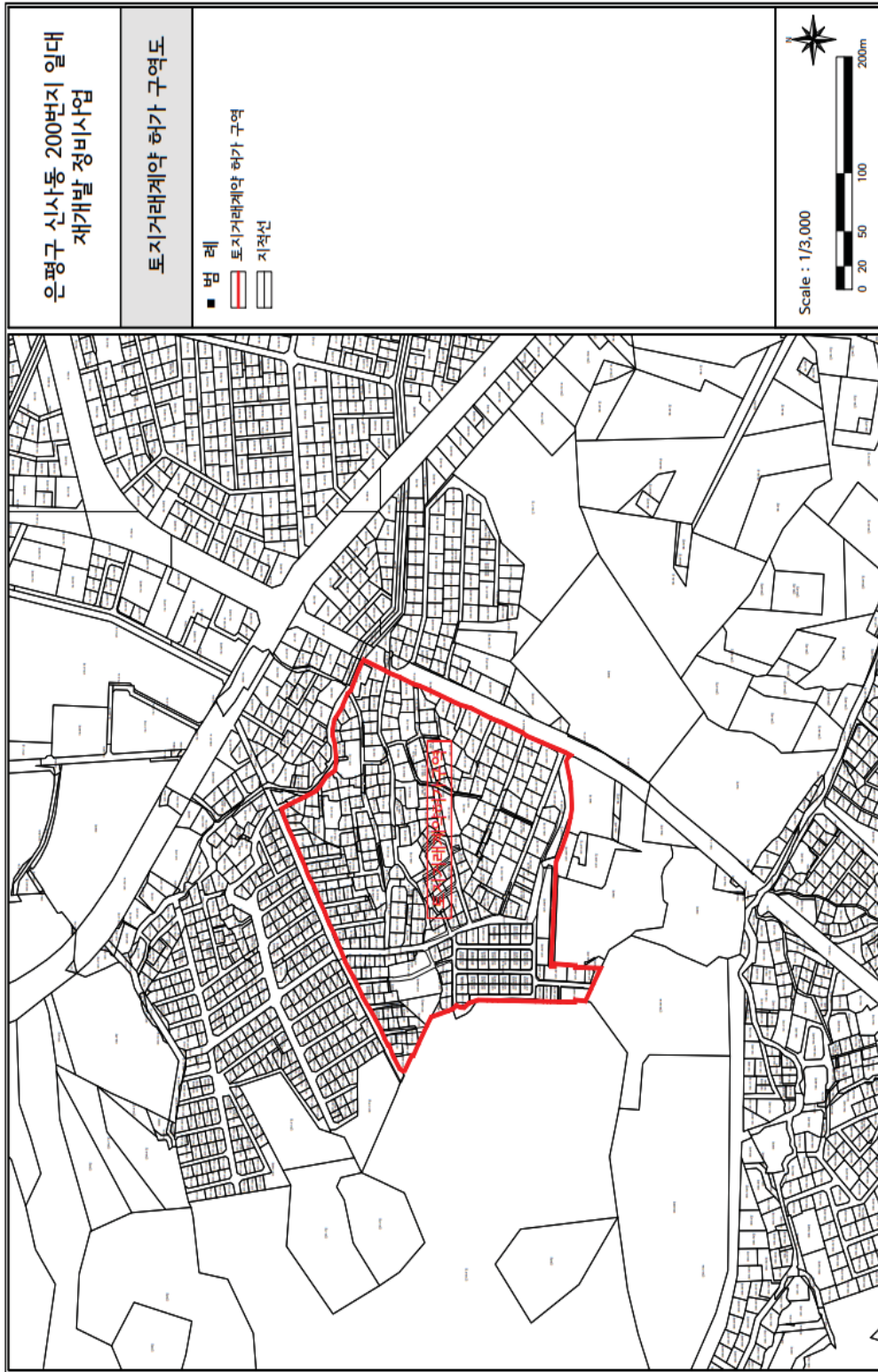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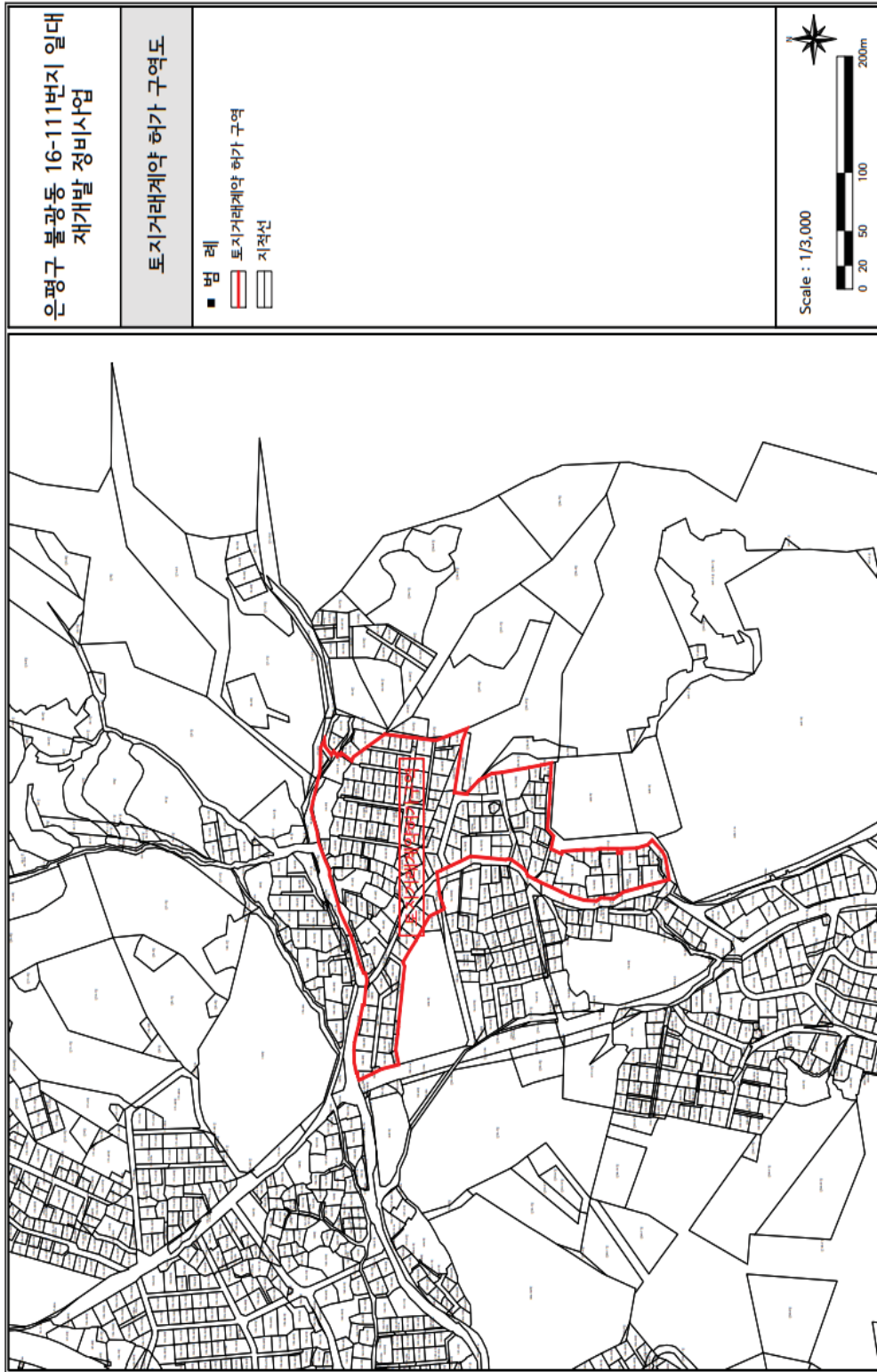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7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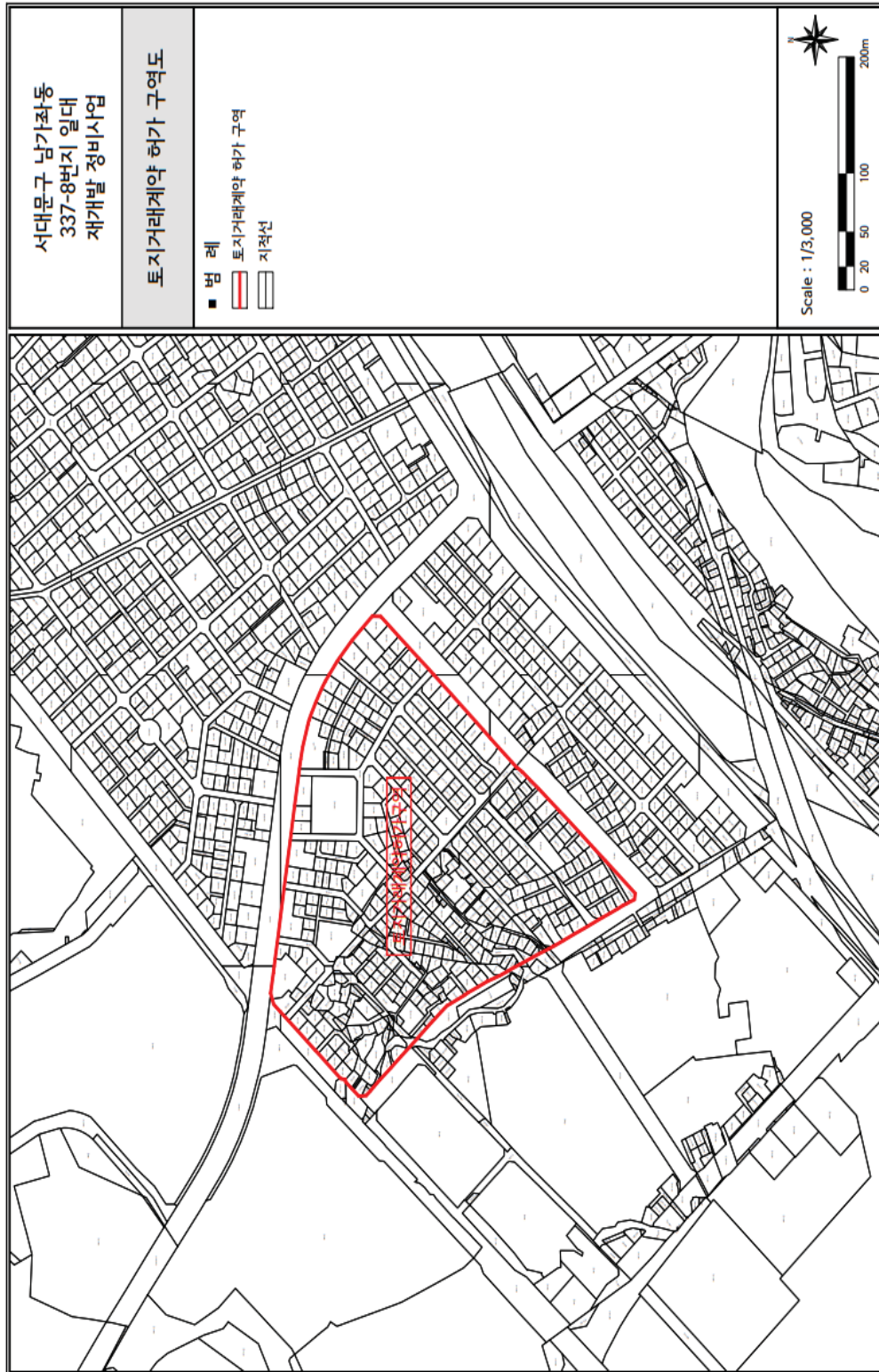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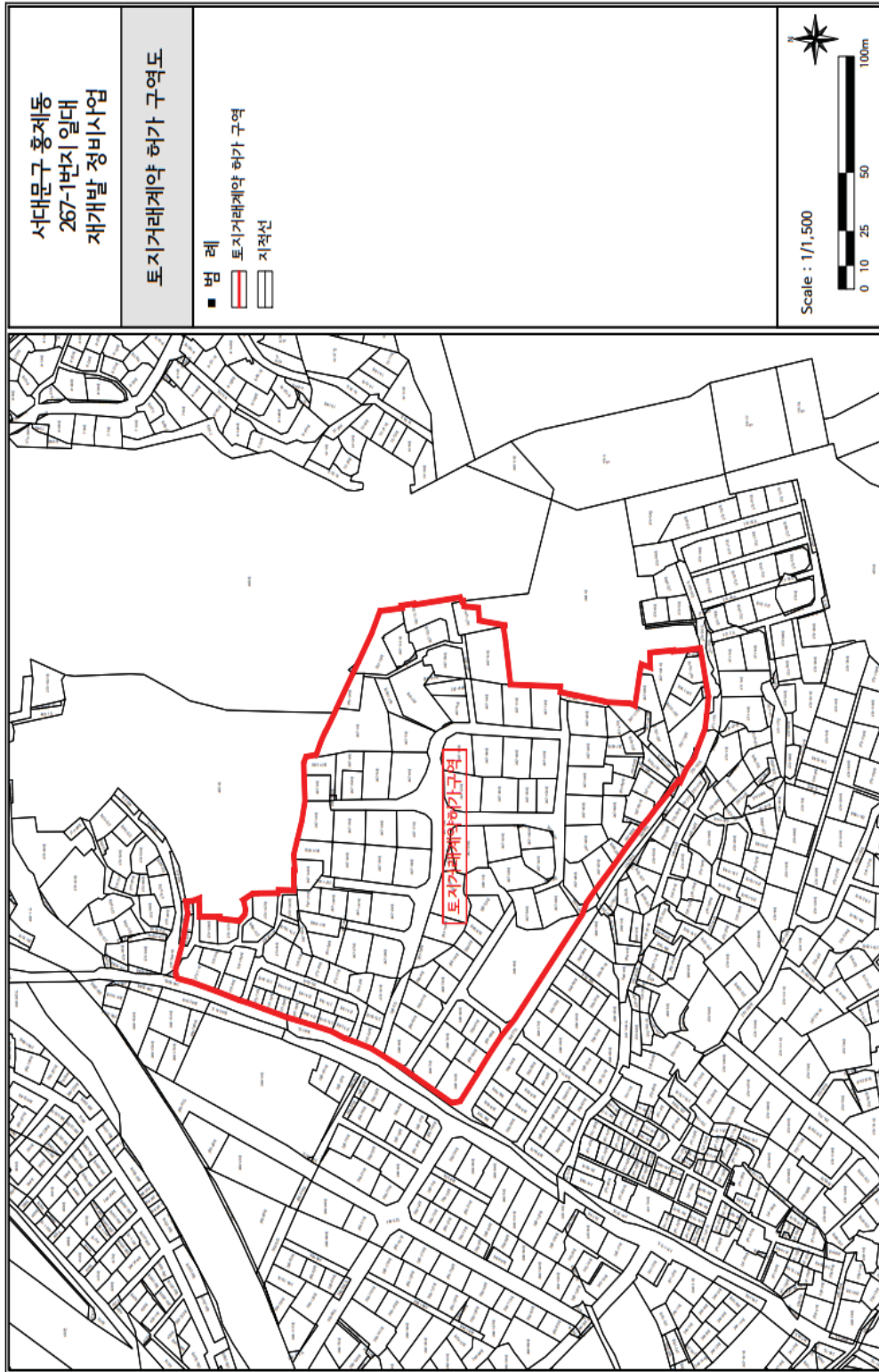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6-11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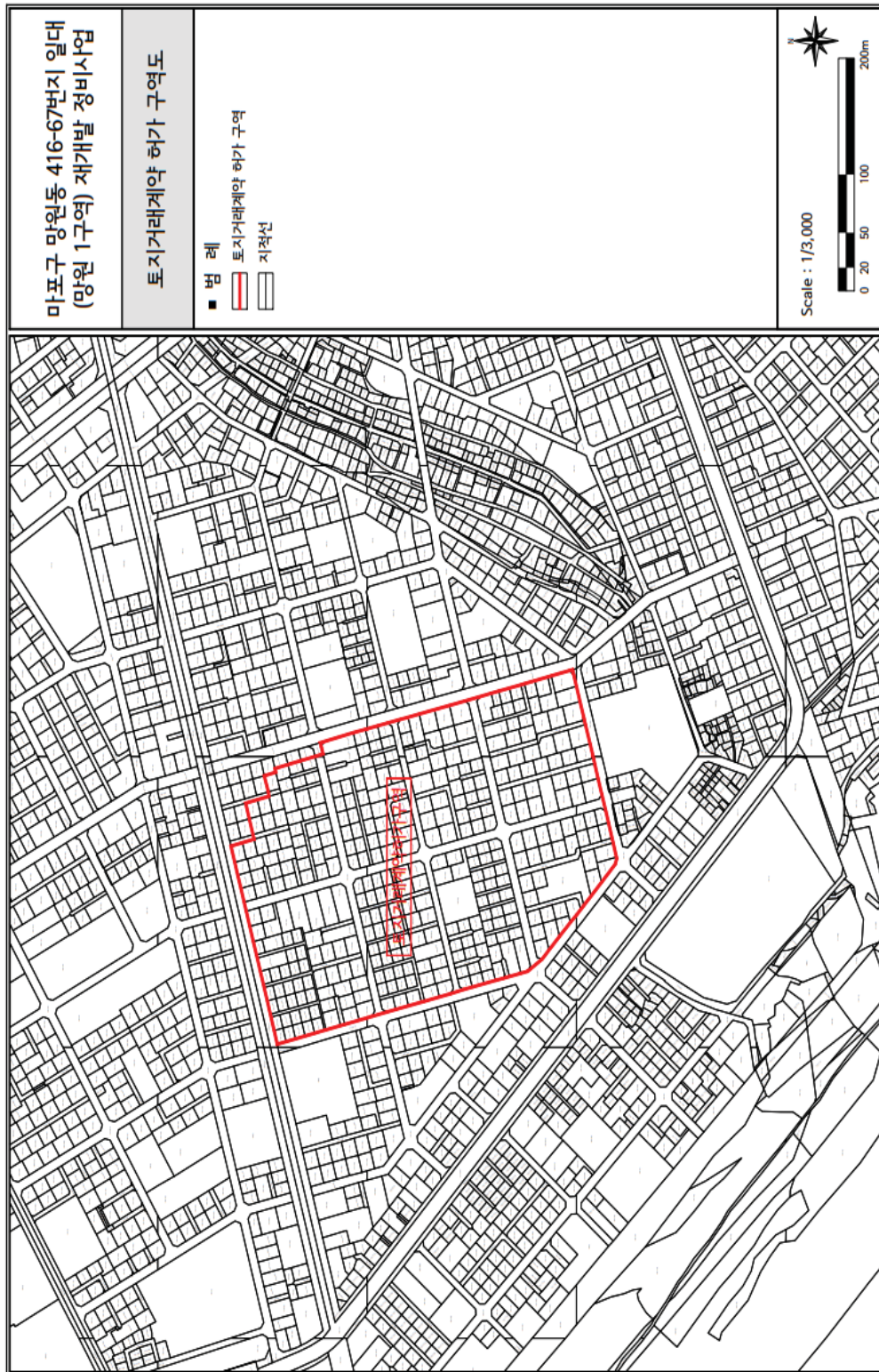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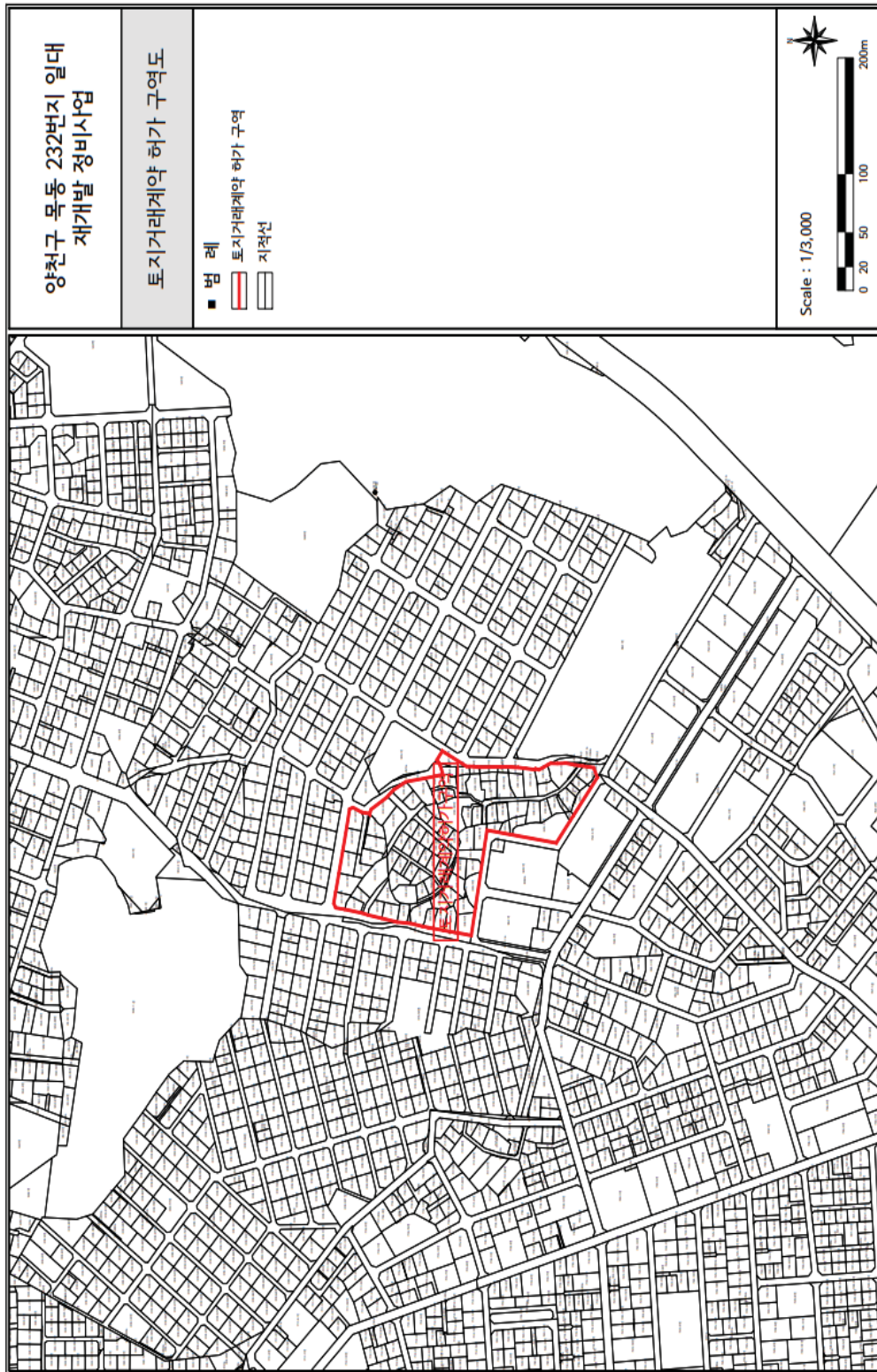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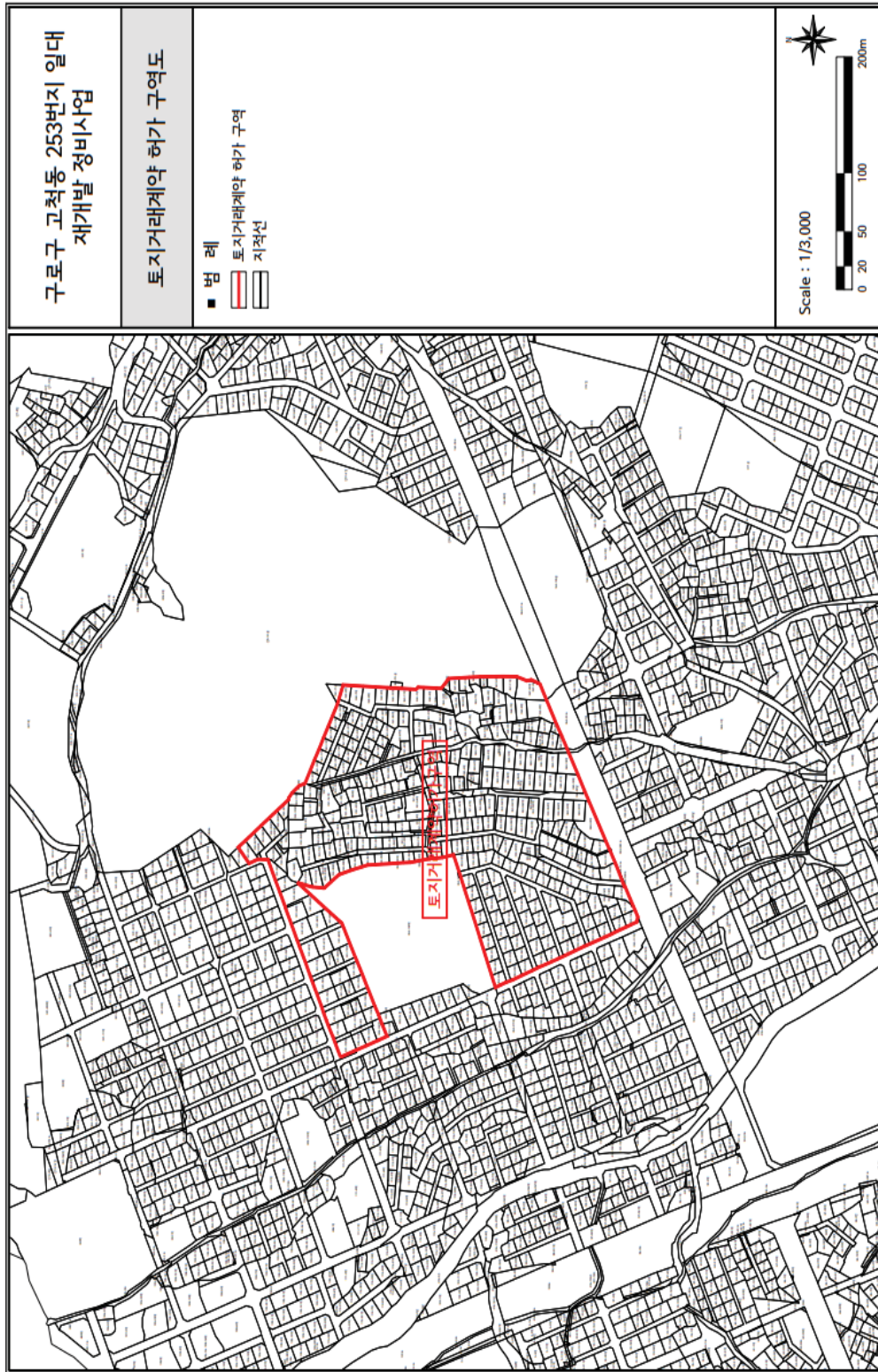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16 - 67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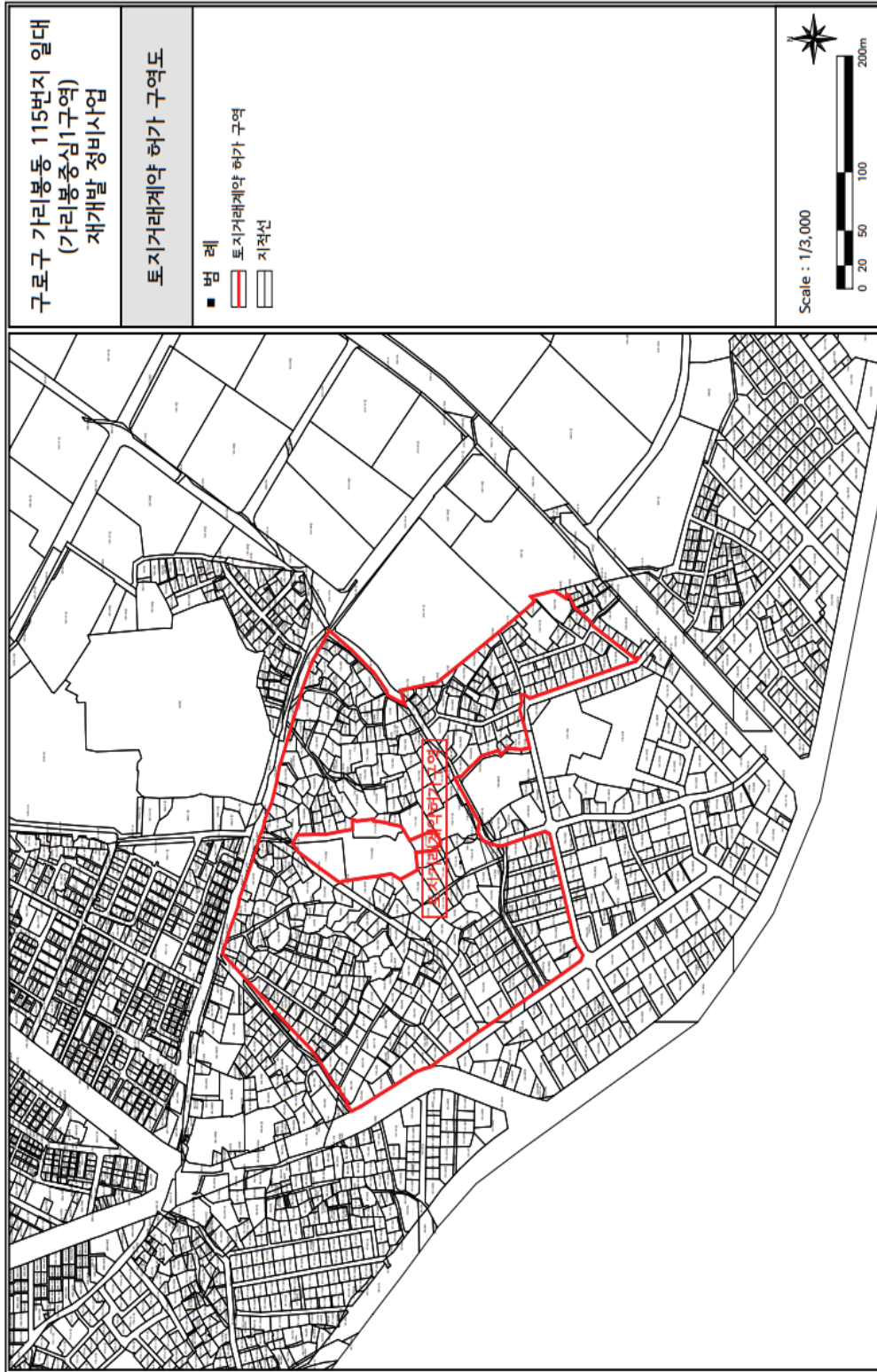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2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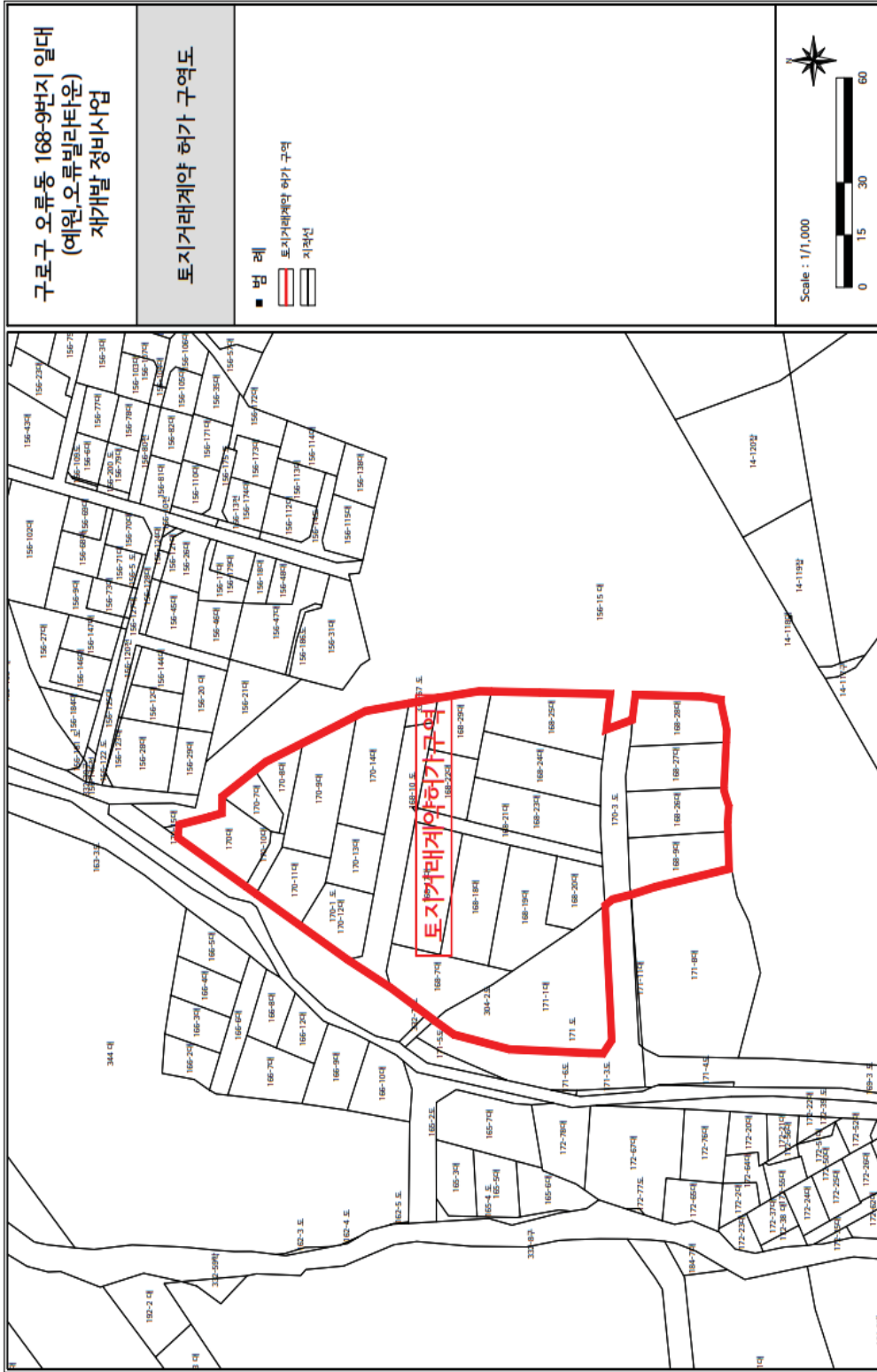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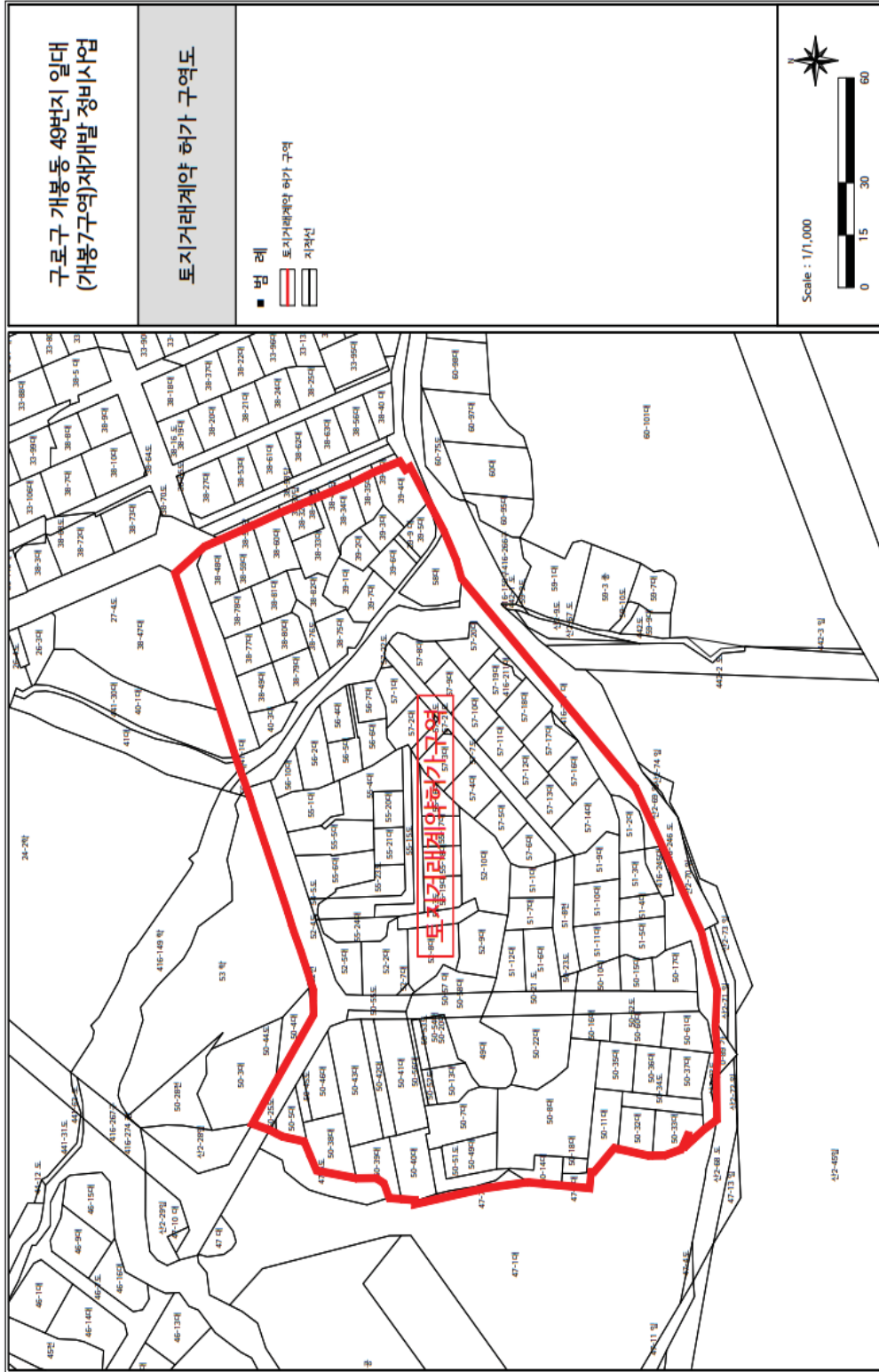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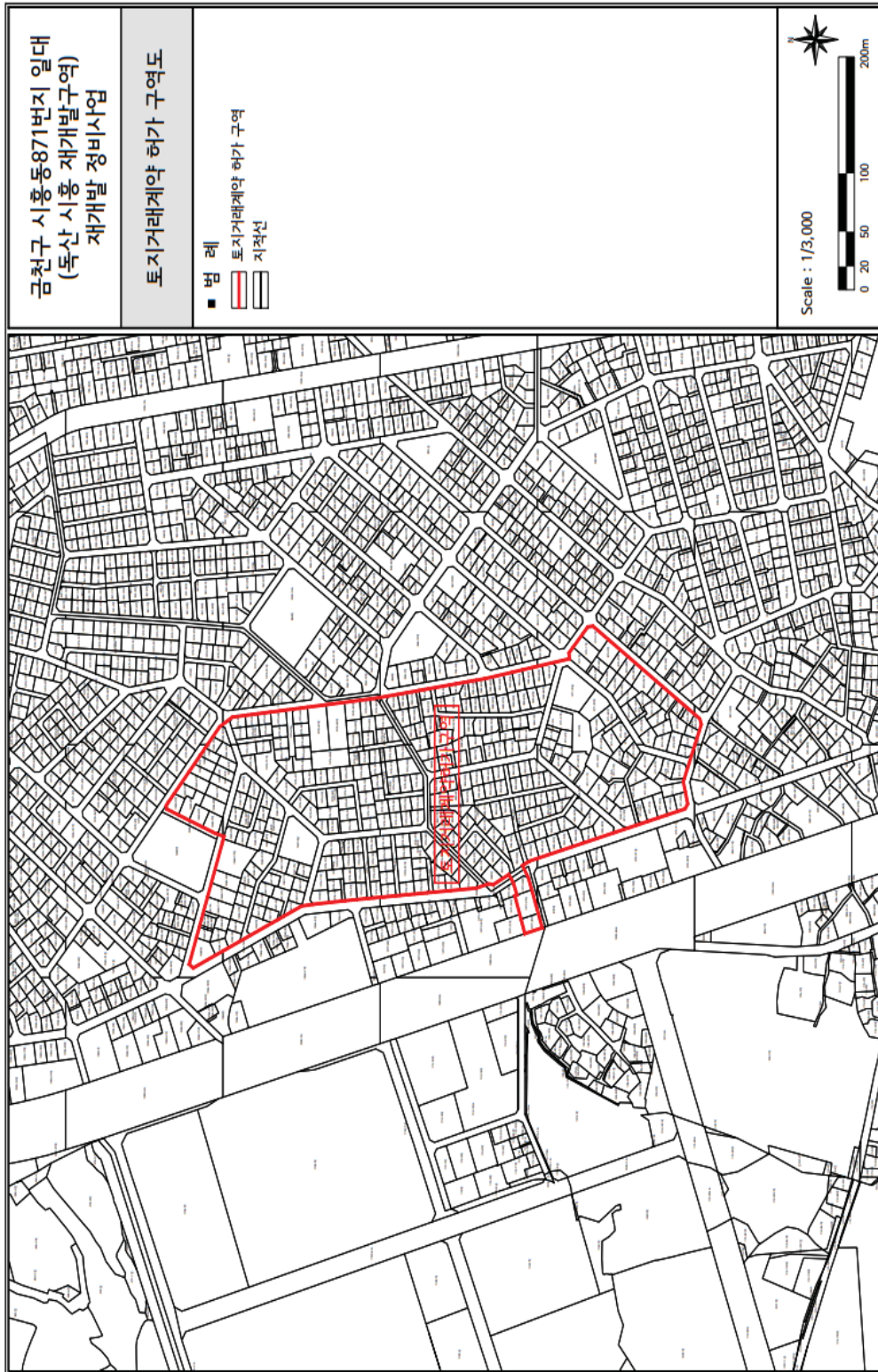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68 - 9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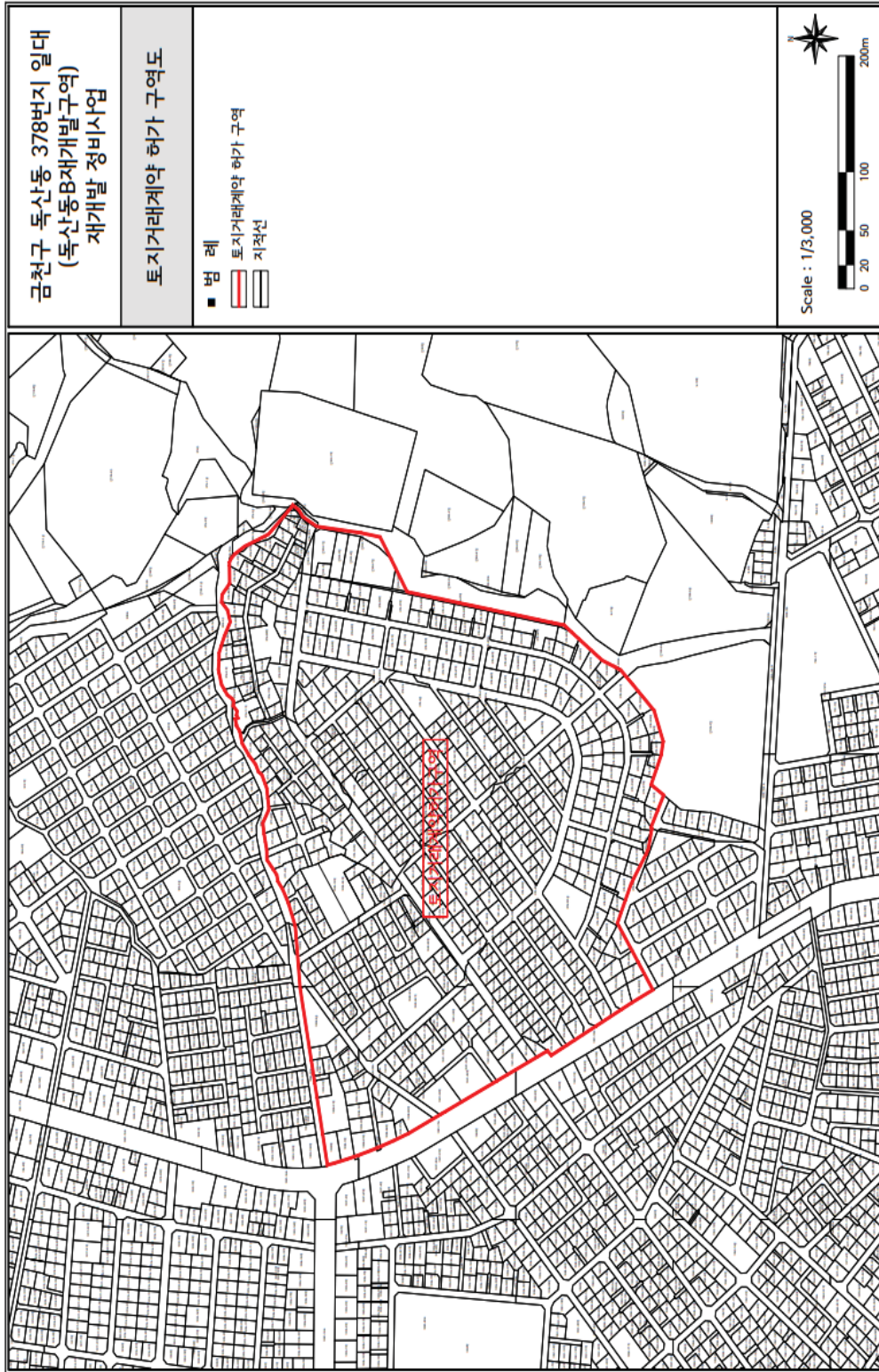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9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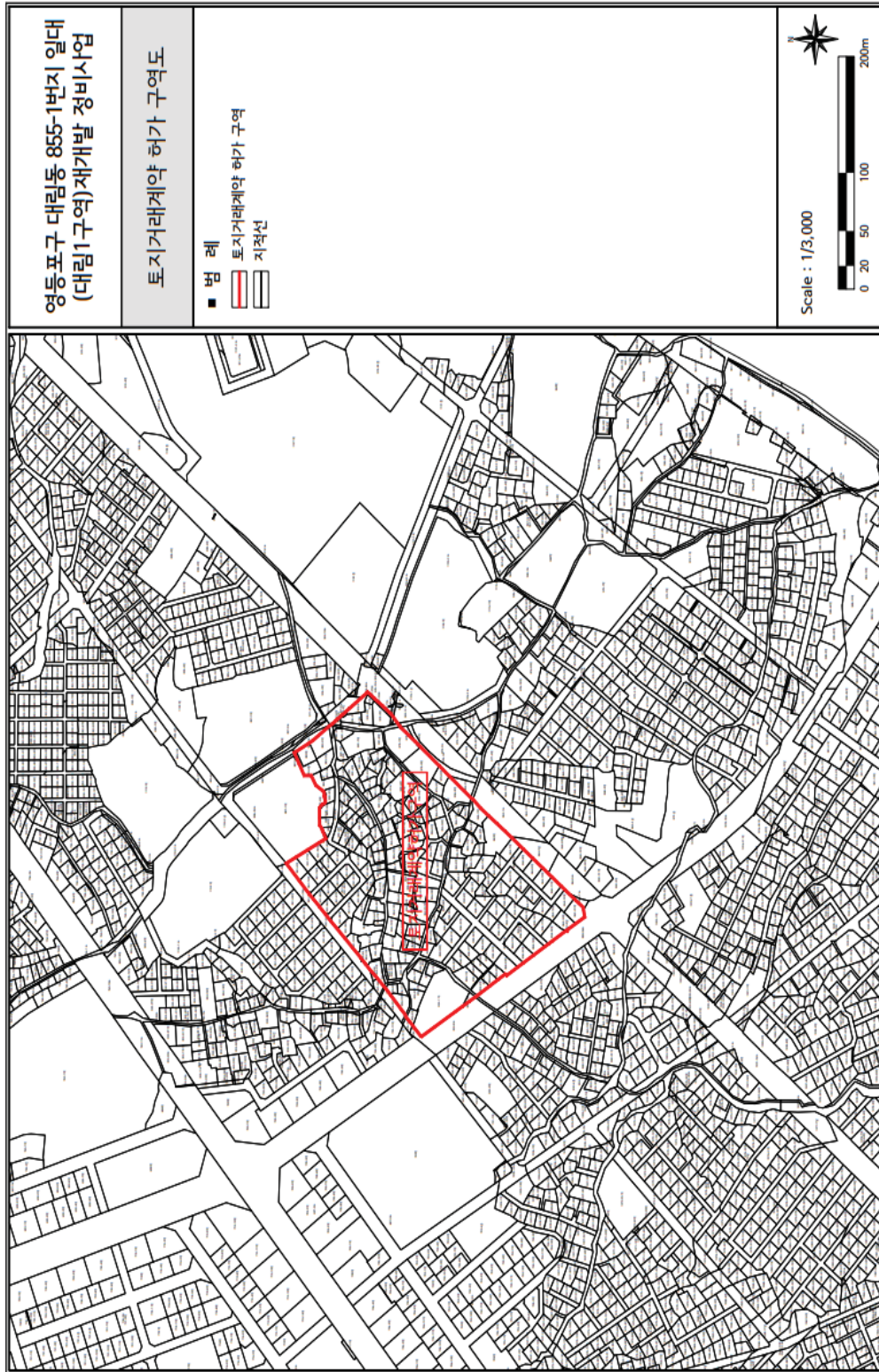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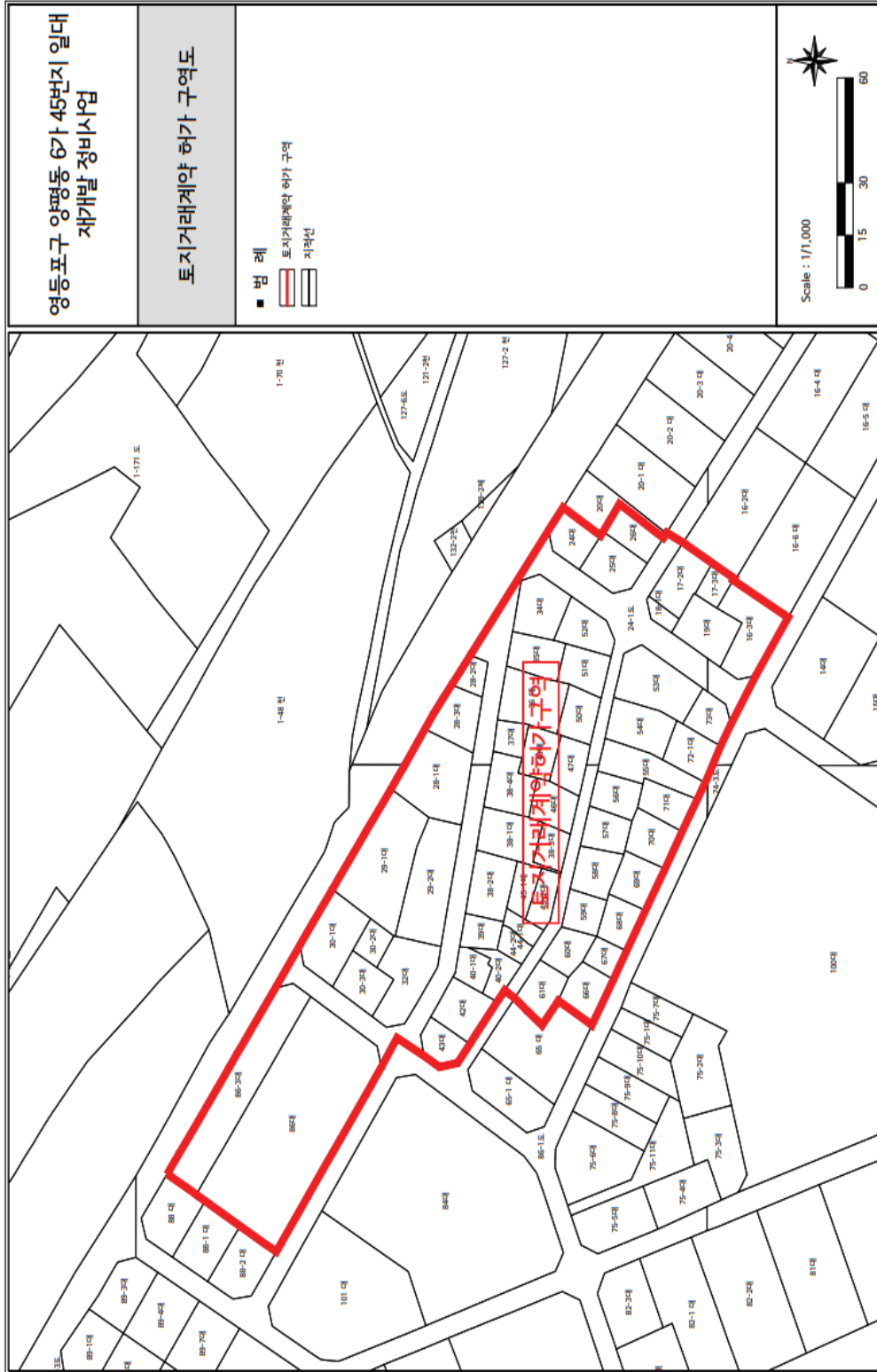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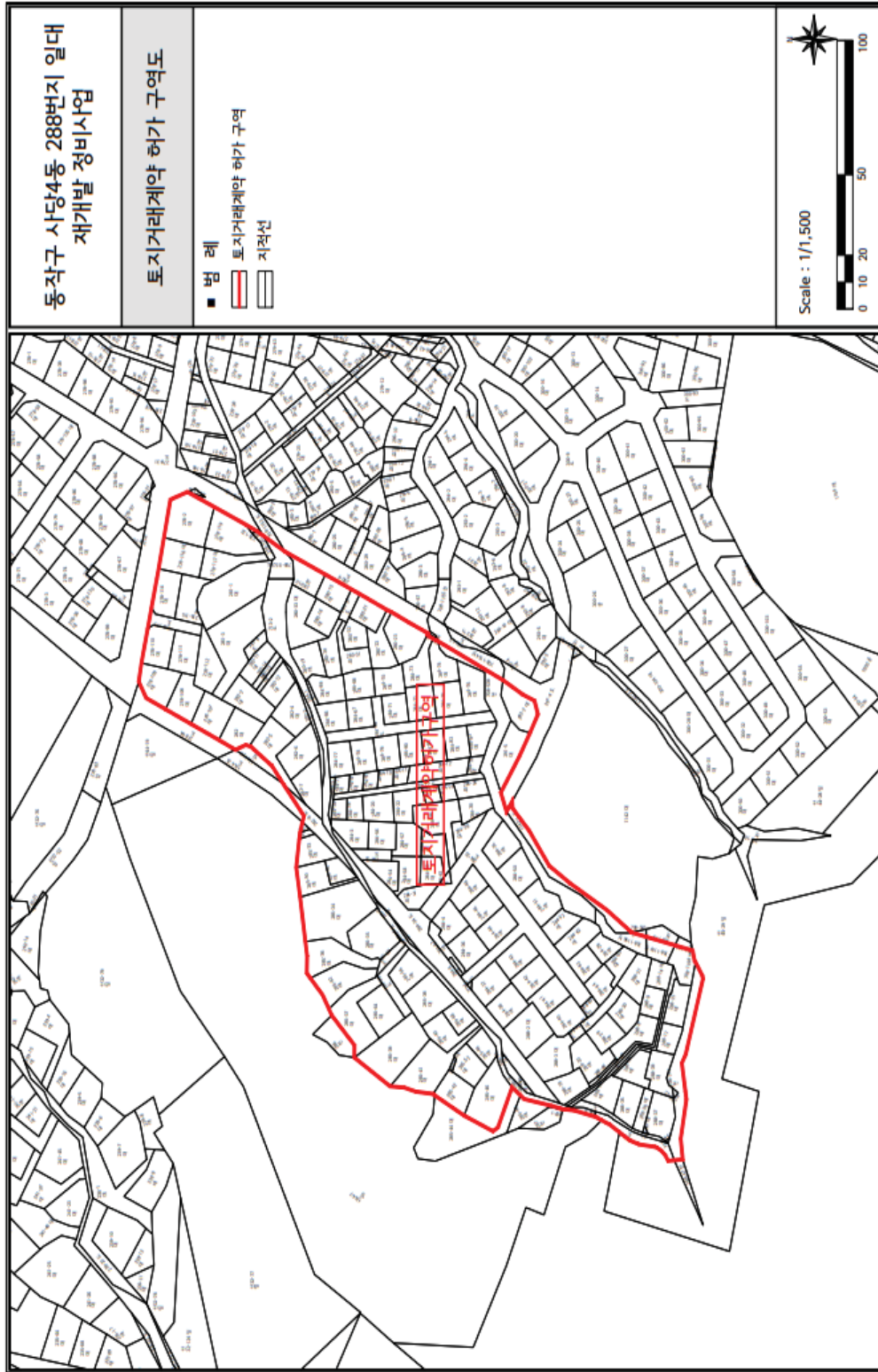
> 지형도면 >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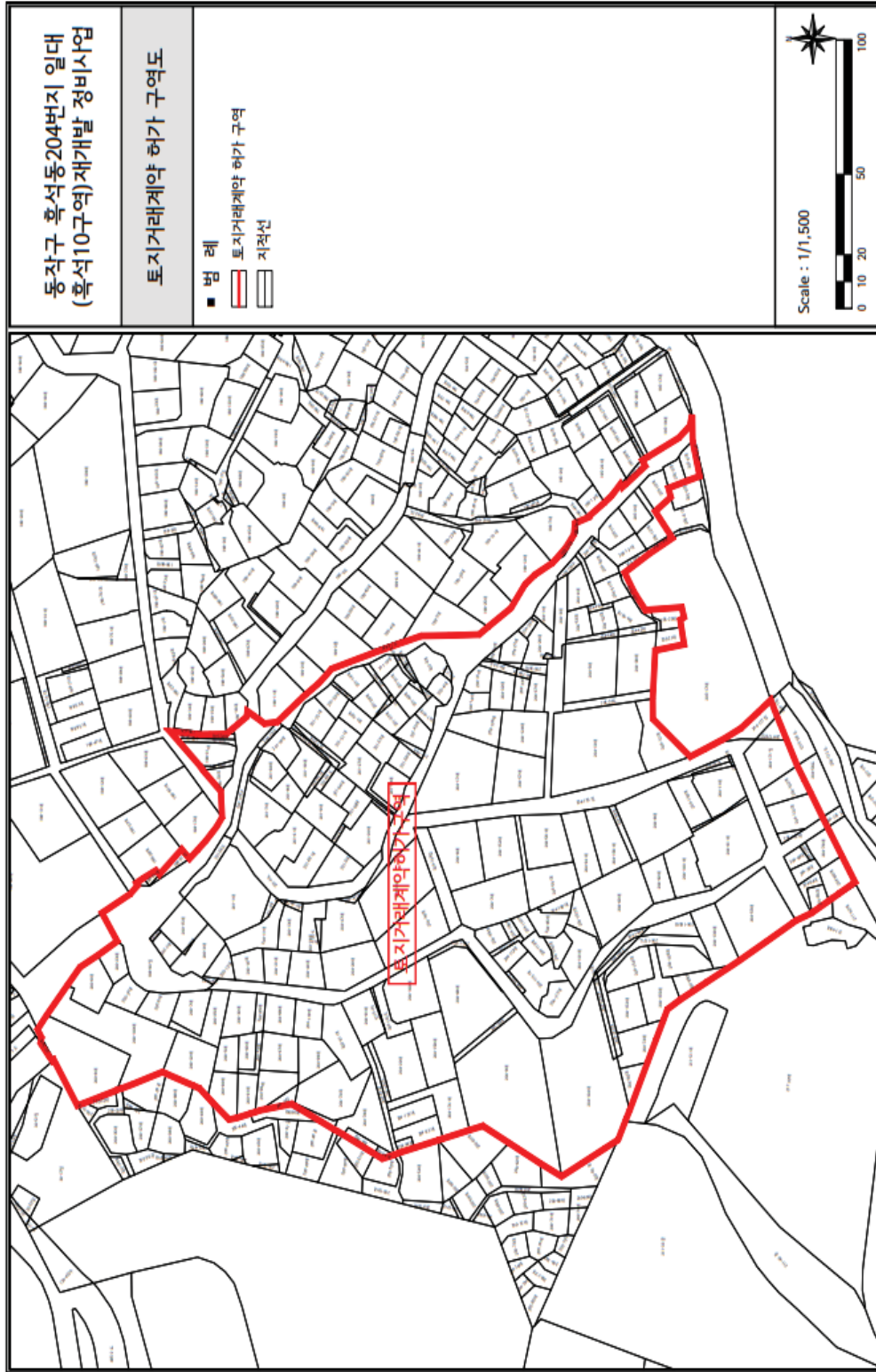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6가 45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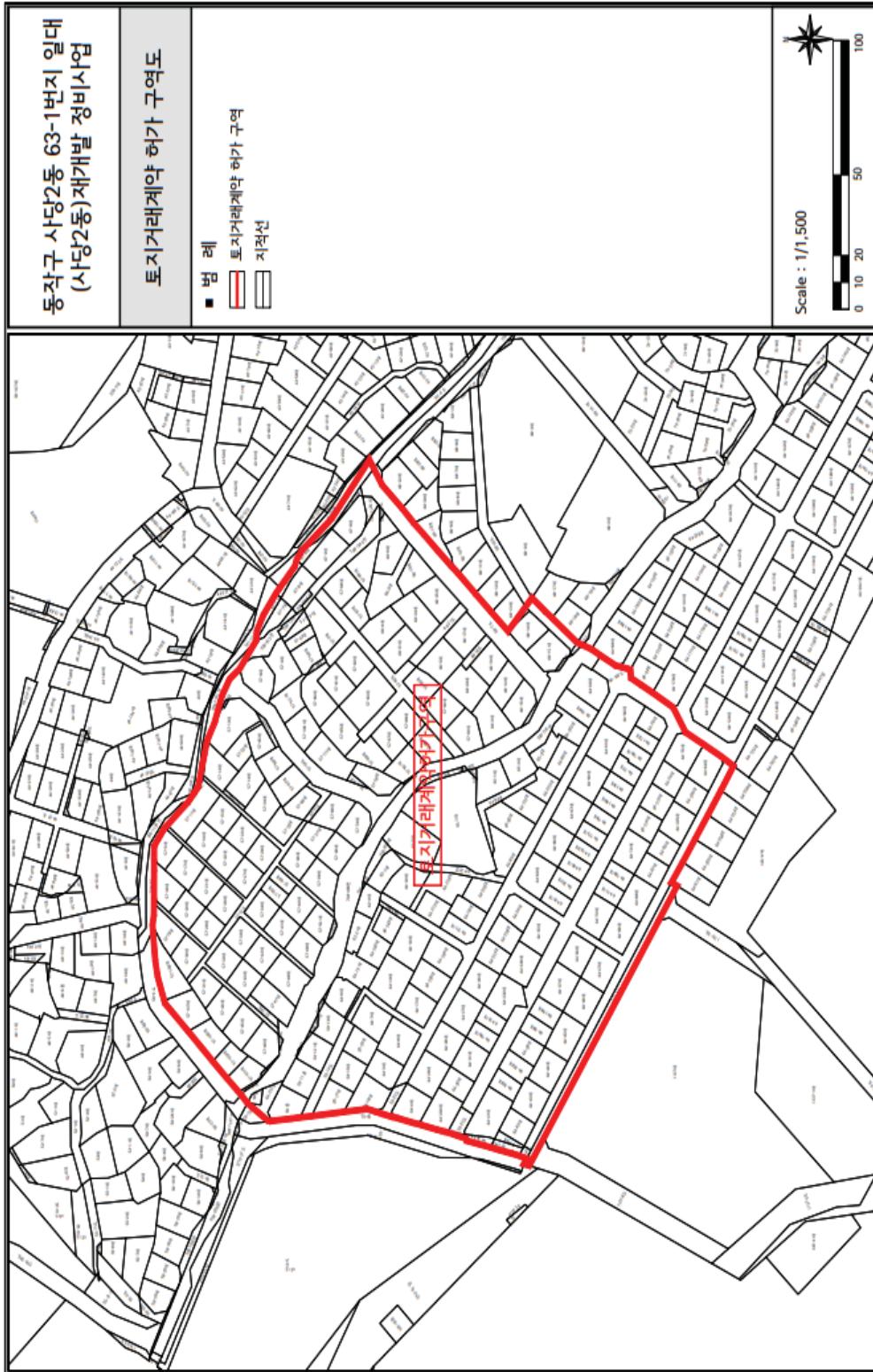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88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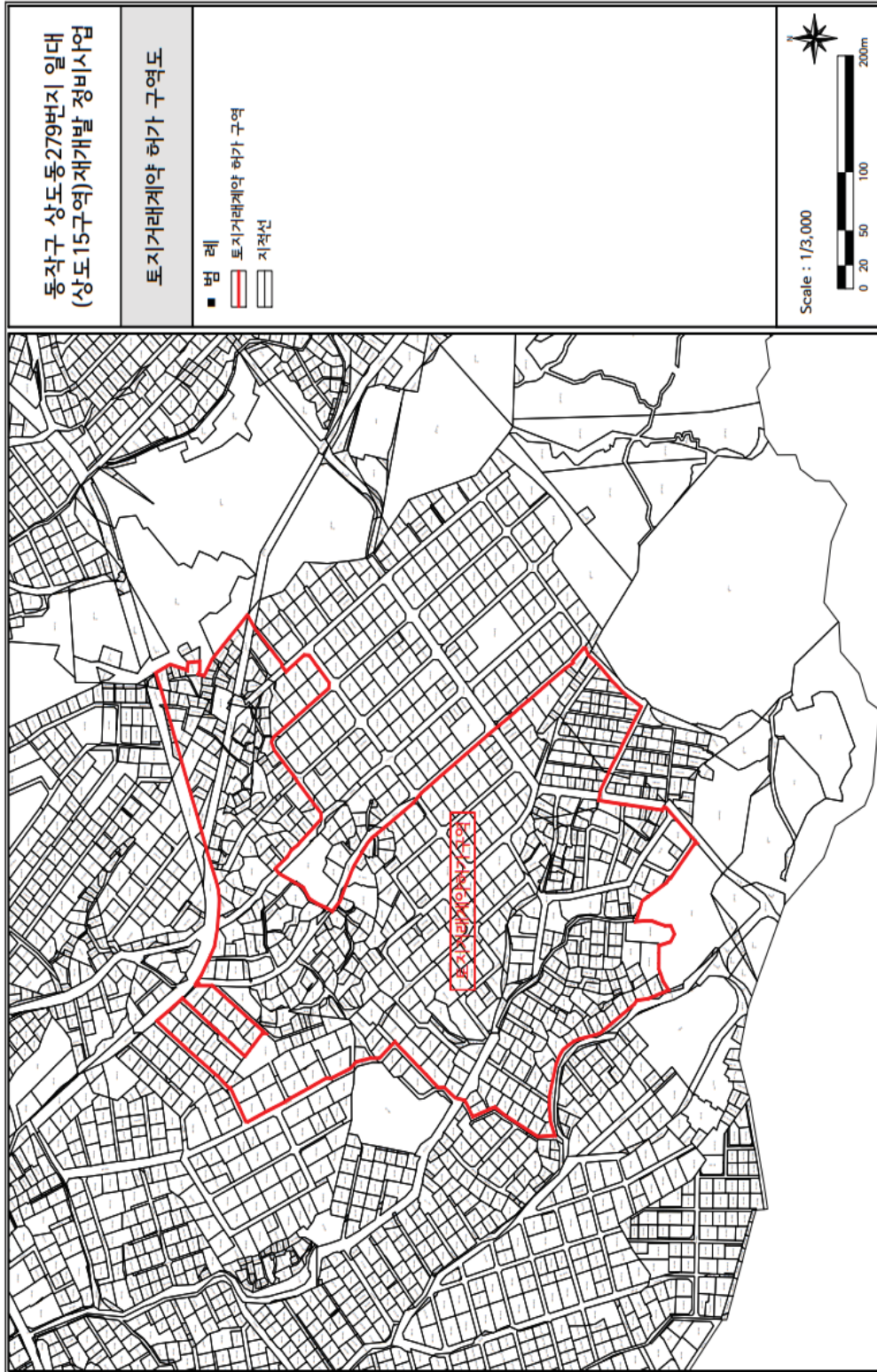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04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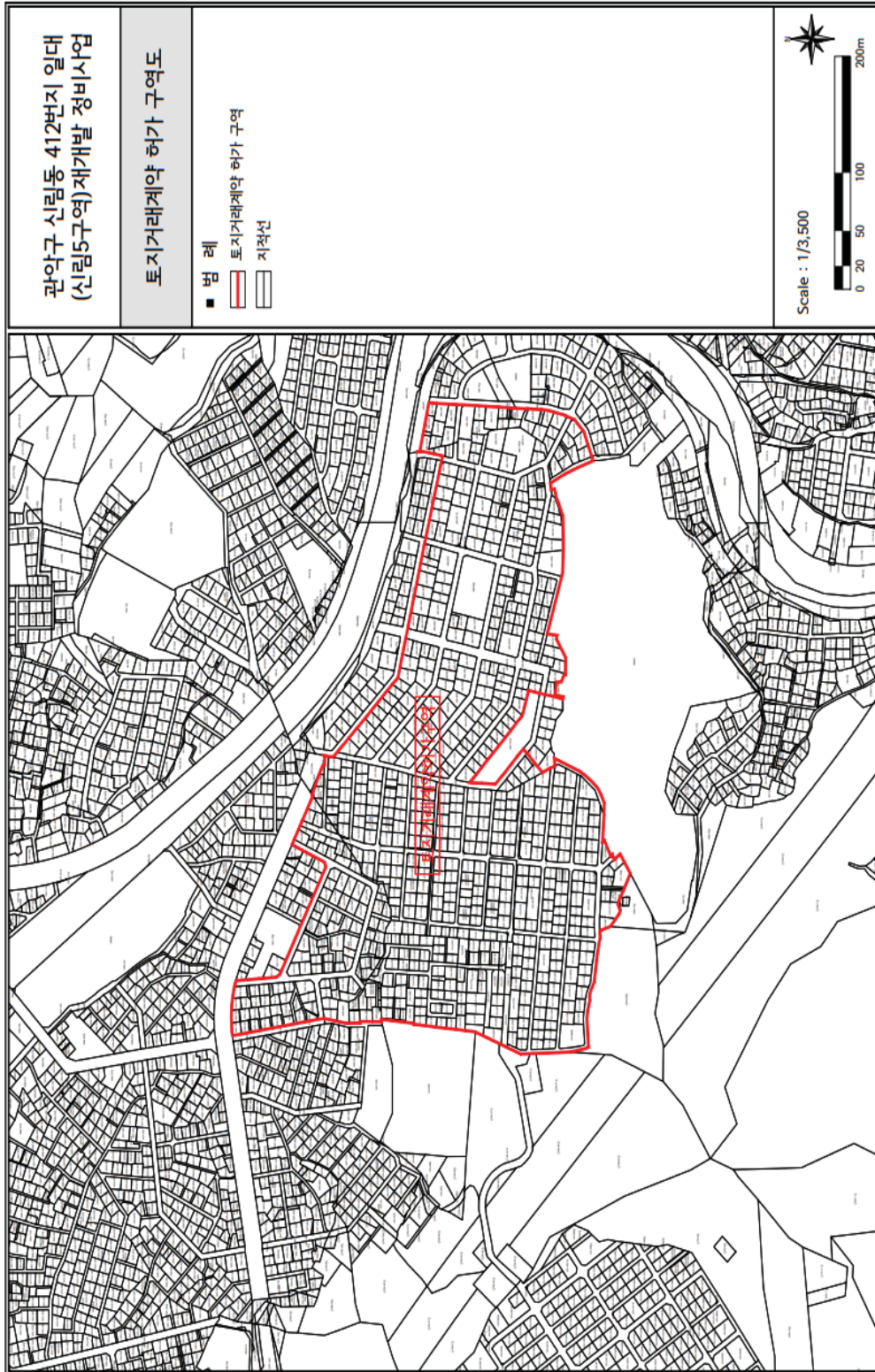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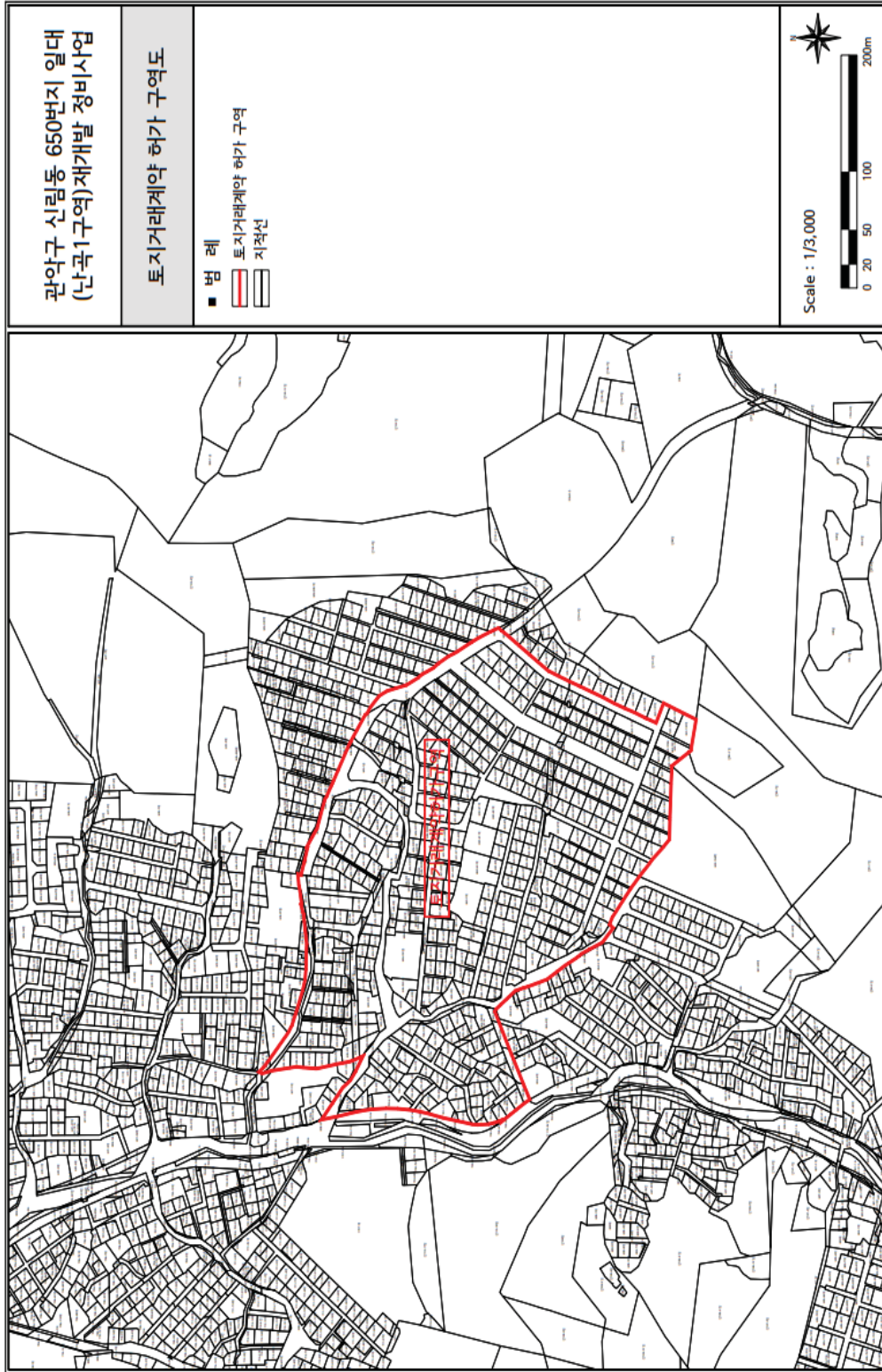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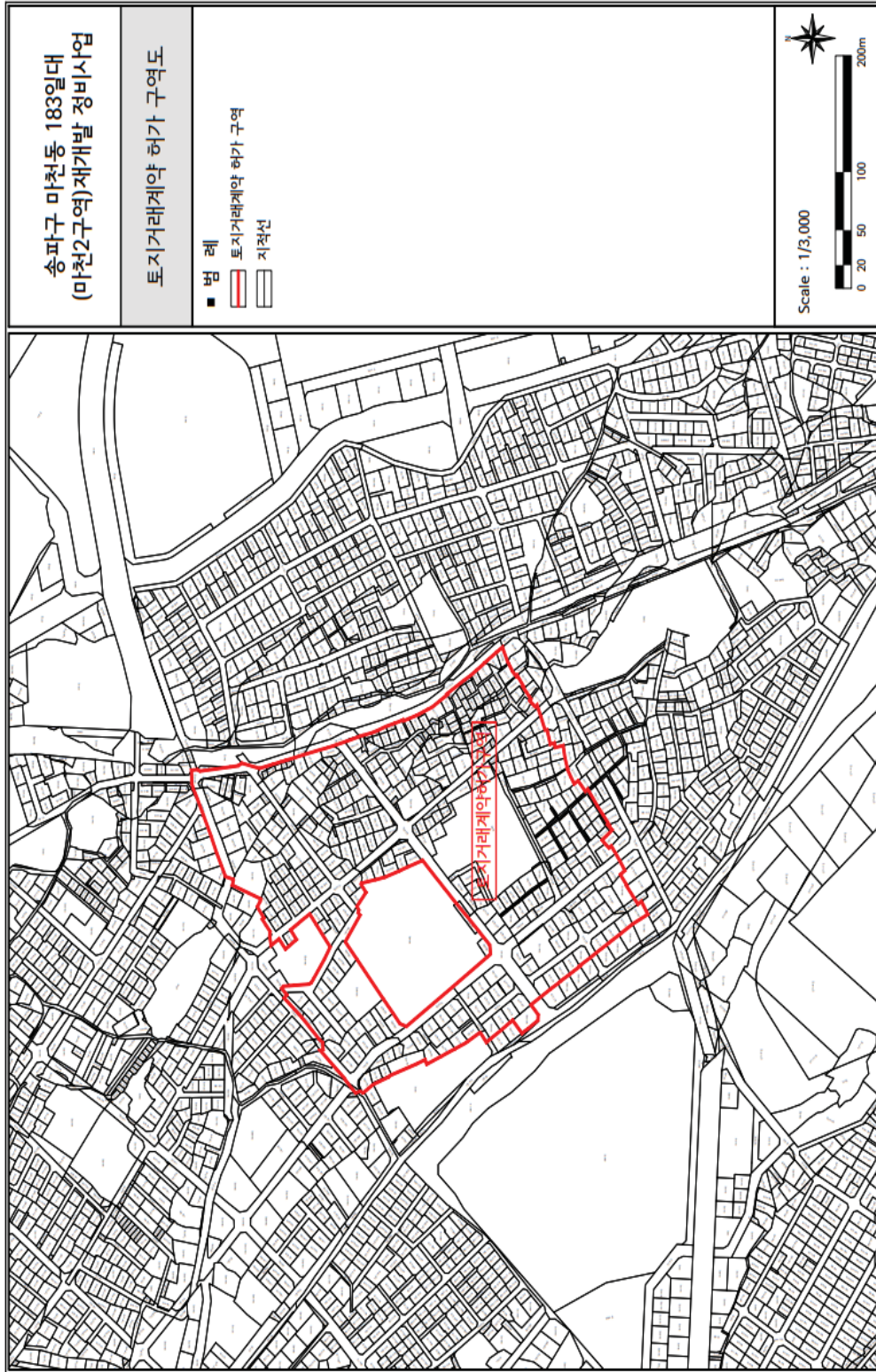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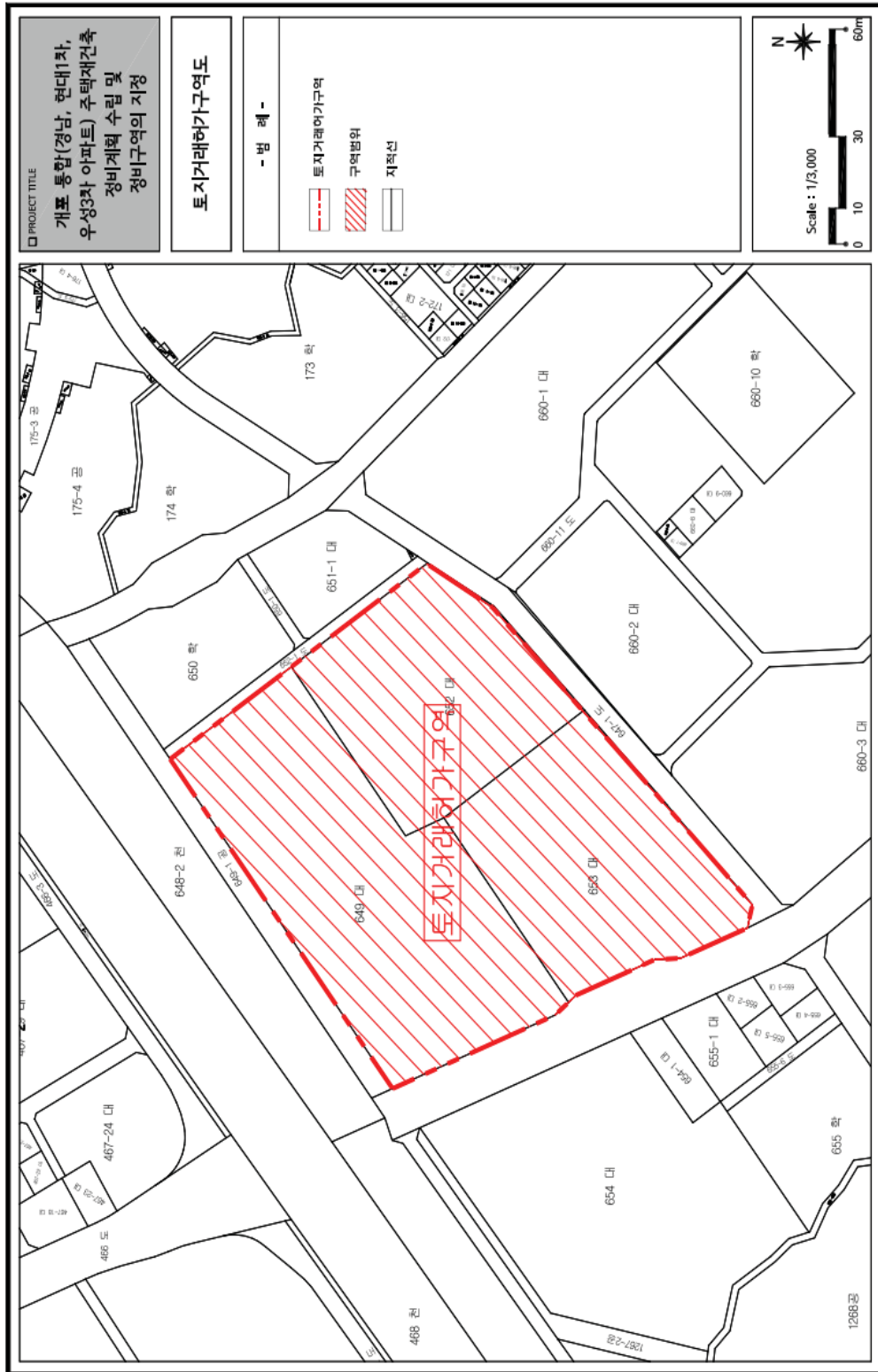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49, 652, 653번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